정책 21-27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환경 기초조사 연구

서해정 · 전지혜 · 김남숙 · 박종균 · 이지수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연 구 진

연 구 책 임 : 서해정(한국장애인개발원 전환지원팀장)

공동연구원 : 전지혜(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남숙(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종균(나사렛대학교 재활학과 외래교수)
이지수(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i.or.kr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 2
3) 연구방법 ····· 2

Ⅱ. 지역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의 흐름 및 현황관련 시설의 현황 ····· 3

1. 서울 ····· 3
   1) 법 및 정책 ····· 3
   2) 장애인 인구 및 지역사회 수요·공급자원 현황 ····· 26
   3)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선행연구 ····· 45
   4) 소결 ····· 51
2. 부산 ····· 53
   1) 법 및 정책 ····· 53
   2) 장애인 인구 및 지역사회 수요·공급자원 현황 ····· 68
   3) 해당 지역 선행연구 ····· 79
   4) 소결 ····· 87
3. 충청남도 ····· 88
   1) 법 및 정책 ····· 88
   2) 장애인 인구 및 지역사회 수요·공급자원 현황 ····· 109
   3) 해당 지역 선행연구 ····· 119
   4) 소결 ····· 122
4. 전북 ····· 124
   1) 법 및 정책 ····· 124
   2) 장애인 인구 및 지역사회 수요·공급자원 현황 ····· 142
   3) 해당 지역 선행연구 (탈시설, 자립생활관련 욕구조사 등) ····· 156
   4) 소결 ····· 157

Ⅲ. 해당 시설 운영 현황 ····· 158

1. 해맑음마음터 ····· 158
   1) 거주시설 개요 ····· 158
   2) 이용자 현황 ····· 166
   3) 종사자 현황 ····· 167
   4) 시설 전환 계획 ····· 167
   5) 3년간 실적 ····· 168
   6) 소결 ····· 170

Ⅳ. 결론 및 제언 ····· 172

참고문헌 ····· 174

표목차

〈표 Ⅱ-1〉 제 2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 8
〈표 Ⅱ-2〉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 탈시설 모델 ····· 12
〈표 Ⅱ-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체계 ····· 13
〈표 Ⅱ-4〉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요(2021년 12월 3일 기준) ····· 14
〈표 Ⅱ-5〉 서울시 임대주택 유형 및 지원방법 ····· 16
〈표 Ⅱ-6〉 서울시 각종 감면혜택 및 복지서비스 ····· 17
〈표 Ⅱ-7〉 서울시복지재단 광역 자원 현황(2020년 5월 기준) ····· 18
〈표 Ⅱ-8〉 장애인 지원주택 유형 ····· 21
〈표 Ⅱ-9〉 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내용 ····· 21
〈표 Ⅱ-10〉 서울시 연도별 장애인 등록현황 ····· 26
〈표 Ⅱ-11〉 서울시 유형별 장애인 수 및 비율(2021년 4월 기준) ····· 27
〈표 Ⅱ-12〉 서울시 연령별, 성별 장애인 수 및 비율(2021년 4월 기준) ····· 28
〈표 Ⅱ-13〉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 수 및 비율(2020년 12월 기준) ····· 28
〈표 Ⅱ-14〉 장애인복지시설 현황_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근거(2021년 7월 기준) ····· 30
〈표 Ⅱ-15〉 장애인복지시설 현황_기타 (2021년 7월 기준) ····· 30
〈표 Ⅱ-16〉 전국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2020년 12월 기준) ····· 32
〈표 Ⅱ-17〉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시설 수, 입소자 수 현황(2020년 12월 기준) ··· 33
〈표 Ⅱ-18〉 서울시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자치구별 현황(2020년 12월 기준) ····· 36
〈표 Ⅱ-19〉 전국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2020년 12월 기준) 39
〈표 Ⅱ-20〉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애인복지시설(기타)(2021년 7월 기준) ····· 43
〈표 Ⅱ-21〉 부산광역시 구군별 장애인 인구 현황 ····· 68
〈표 Ⅱ-22〉 부산광역시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 69
〈표 Ⅱ-23〉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 현황 ····· 70
〈표 Ⅱ-24〉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71
〈표 Ⅱ-2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현황 ····· 74
〈표 Ⅱ-26〉 부산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현황 ····· 75
〈표 Ⅱ-27〉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지원 기관 비교 ····· 77

〈표 Ⅱ-28〉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과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78
〈표 Ⅱ-29〉 ICT 지원 전후 비교 ····· 86
〈표 Ⅱ-30〉 충청남도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시설 수, 입소자 수, 종사자 수 현황 (2020년 12월 기준) ····· 112
〈표 Ⅱ-31〉 충청남도 시군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2020년 12월 기준) ····· 112
〈표 Ⅱ-32〉 아산시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시설 수, 입소자 수, 종사자 수 현황 (2020년 12월 기준) ····· 113
〈표 Ⅱ-33〉 아산시 장애인 거주시설 ····· 113
〈표 Ⅱ-34〉 충청남도 시군별 장애인 이용기관 현황(2020년 12월 기준) ····· 114
〈표 Ⅱ-35〉 충청남도 시군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현황(2020년 12월 기준) ····· 114
〈표 Ⅱ-36〉 충청남도 시군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2020년 12월 기준) ····· 115
〈표 Ⅱ-37〉 아산시 장애인 이용기관 현황(2020년 12월 기준) ····· 118
〈표 Ⅱ-38〉 아산시 장애인 이용기관 현황(2020년 12월 기준) ····· 118
〈표 Ⅱ-39〉 아산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2020년 12월 기준) ····· 119
〈표 Ⅱ-40〉 정책과제별 세부계획 (1) ····· 135
〈표 Ⅱ-41〉 4기 군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139
〈표 Ⅱ-42〉 시군별 장애인인구 현황 ····· 142
〈표 Ⅱ-43〉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시설 ····· 143
〈표 Ⅱ-44〉 전라북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지원여부별 ····· 144
〈표 Ⅱ-45〉 법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 145
〈표 Ⅱ-46〉 개인운영 거주시설 ····· 148
〈표 Ⅱ-47〉 공동생활가정 ····· 148
〈표 Ⅱ-48〉 단기거주시설 ····· 149
〈표 Ⅲ-1〉 법인 자산현황(토지) ····· 159
〈표 Ⅲ-2〉 법인 자산현황(건물) ····· 159
〈표 Ⅲ-3〉 거주인 자립 현황 (2018년-현재) ····· 168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그림목차

[그림 Ⅱ-1] 제 2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정책비전 및 목표 ····· 7
[그림 Ⅱ-2]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책비전 및 목표 ····· 9
[그림 Ⅱ-3]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 11
[그림 Ⅱ-4] 부산광역시 탈시설 자립 지원 5개년 계획 ····· 62
[그림 Ⅱ-5] 부산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안) ····· 83
[그림 Ⅱ-6]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정책목표 및 전략 ····· 131
[그림 Ⅱ-7] 전라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비전 ····· 134
[그림 Ⅱ-8] 제4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방향 ····· 138
[그림 Ⅲ-1] 거주시설 조직도 ····· 163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은 자신의 생활을 혼자 힘으로 해결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생활을 영위해 가는 데 있어서 타인의 원조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논의할 때 중요한 이슈는 탈시설 이후 장애인의 생활은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주택, 개인돌봄, 후견인, 권리옹호 등에서 지지적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지원생활 관련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2041년까지의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현 장애인복지법 상의 약 650여 개 장애인거주시설의 다양한 기능전환 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향후 24시간 일상생활을 지원받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만 받을 수 있는 주거유지서비스[1]를 신규로 개발할 예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유지서비스란 거주 전환 이후 완전 독립 이전까지 주거관리 · 지역사회 참여 등 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해 온 서울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장애인전환서비스, 자립생활주택 등을 통해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개인 단위로 접근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기존 거주시설의 운영 개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을 판단하여 기존 시설의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에 초점을 두고 시설 단위로 접근하여 기존 시설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김현승 외, 2019. 조한진 외 2021).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적 변화 등에 고려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환을 모색하고자 현재 복지부 시설 변환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시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탈시설 장애인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복지 자원 및 환경에 대한 분석하며,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당 시설 변환 방안과 탈시설 장애인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주거약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 발의(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1.4.20)

2) 연구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탈시설 또는 자립생활 관련 정책과 제도, 사업 등 예산 포함하고 있으며, 공간적 범위로는 지역적으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광역 지자체로 한정하며, 기초자치단체 관련 자료가 있을 시 분석 가능하였다. 현 4개 지자체는 전환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곳으로 도시(서울, 부산), 농촌(충남), 도농복합(전북)의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 연구 결과를 전국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시간적으로는 기본적으로 2021년 기준으로 하되 해당자료가 부재할 경우 가능한 가장 최신자료를 원칙으로 작성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와 조사연구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시설 현장 방문 등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문헌연구는 해당 지역의 탈시설-자립생활관련 정책, 제도 등 탈시설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시하였고, 둘째, 조사연구는 4개 지자체의 시·도 복지 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해당시설을 중심으로 한 복지환경조사이기 때문에 해당시설의 현황과 시설 자체적으로 작성한 시설 기능변환 계획을 참고하여 시설기능변환 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지역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의 흐름 및 현황관련 시설의 현황

1. 서울

1) 법 및 정책

(1) 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관련 자치법규 현황 및 조례 분석

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관련 서울시의 자치법규 및 조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4조~제19조),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15조),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2011.01.13. 제정)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환, 주거지원,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다. 자세한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5장 지역사회 전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본 조례에 따르면 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의 자립생활 인식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계획수립 및 주거, 정착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14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 지원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한다.

- 제6장 주거지원

제17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본 조항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주택개조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주거생활을 돕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전세자금 지원 및 임대료 보조 등 임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전문적으로 돕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장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제 18조, 19조는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저소득 장애인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축액에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50%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2011.01.13. 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 중 제4조 장애인의 권리에서 장애인의 권리로서 지역사회에서 차별과 인권침해 없이 생활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2011.01.13. 제정)

본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중 제15조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제공해야하는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제15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 지원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④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05.03. 제정)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원주택 공급 대상자로서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다.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 ①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선정기준과 절차, 우선순위 등 관련규정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
② 시장·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입주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 등 및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입주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이하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한다.
1.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2. 주택시설관리 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6.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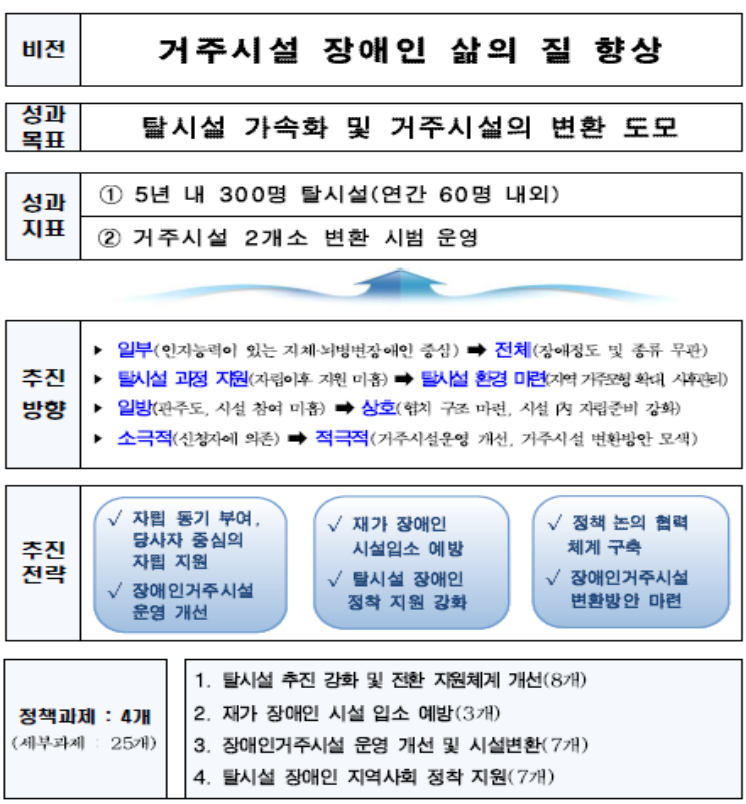
(2) 지자체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주요 계획 및 내용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주요 계획으로는 제2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2018~2022)과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 있다.

① 제 2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2018~2022)

서울시는 2017년 12월 4대 정책과제와 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된「제2차 서울시

장애인 주시설 탈시설화 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다. 제2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변환”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한 4대 정책과제 중 세 번째 정책과제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를 명시하고 향후 시설변환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동 계획에서 제시한 거주시설변환이란 “탈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구조를 변경하여 새로운 주거모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의 주요 목표는 탈시설화 정책의 가속화를 위해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로 변환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추진계획의 정책비전 및 목표, 세부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Ⅱ-3] 제 2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정책비전 및 목표

출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2017)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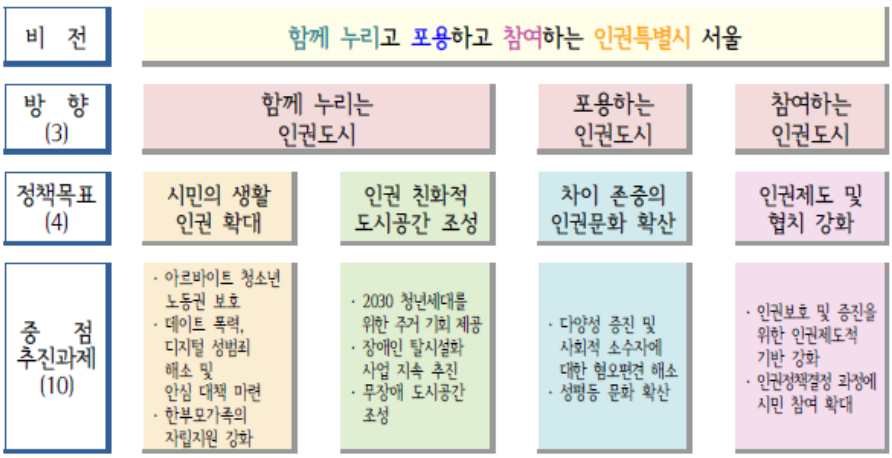
〈표 Ⅱ-1〉 제 2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정책과제	세부과제(핵심7, 신규14)	추진기관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지원체계 개선 (8개 사업)	①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신규)	서울시
	② 탈시설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신규, 핵심)	서울시
	③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복지재단
	④ 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핵심)	서울시·복지재단
	가.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나.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다.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신규)	
	⑤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복지재단
	⑥ 지역별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신규)	서울시·복지재단
2. 재가 장애인 시설입소 예방 (3개 사업)	①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신규, 핵심)	서울시
	②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서울시
	③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서울시
3.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 변환 (7개 사업)	① 거주시설의 자립지원 계획수립 의무화	거주시설
	가.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신규, 핵심)	
	나. 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신규)	
	②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신규)	서울시·거주시설
	③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신규, 핵심)	복지재단
	④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확대	서울시
	⑤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서울시
	⑥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신규, 핵심)	서울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7개 사업)	①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신규, 핵심)	서울시·발달 장애인지원센터
	②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신규)	서울시·자치구
	③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서울시
	④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서울시
	⑤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신규)	서울시
	⑥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서울시
	⑦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신규)	서울시·복지재단

출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2017)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p. 14

②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1차(2013~2017)에 이어서 수립된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를 근거로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1차 기본계획의 성과로서 시민 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인권적 관점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여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하는데, 그 중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강조되었다.



[그림 Ⅱ-5]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책비전 및 목표

출처: 서울특별시(2018)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p18

제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4개의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정책목표 중 '인권 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의 세부 사업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지속 추진'을 1차 기본계획에서 발전시켜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선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 사업내용
  - 정책 혼란 최소화 및 탈시설 협치를 도모하는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장애인에게 탈시설 이해를 높이고 탈시설 정보제공
  - 시설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를 통해 거주인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추진
  -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구조를 변환하는 등의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

- 선정이유
  - ‘자립체험공간 확보 및 탈시설 인식조성’이 중심이 되었던 1차 도입기(’13~’17)에서 한 발 나아가 2차 발전기(’18~’22)에서는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변환 중심’을 중점적으로 추진
  - 장애인 시설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인 ‘탈시설 정책’과 관련하여 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부터 함께 한 만큼, 2차에서도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③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

서울시는 2016년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후 제1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했으며, 2021년 두 번째 발달장애인 기본계획(2021~2025)를 마련했다.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지난 1기에 이어서 노년기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종사자 대상 도전적 행동 대응지원을 추가했다. 또한 제1기에서 힘썼던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운영 내실화와 전달체계 간 연계 및 조정을 강조한다.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을 비전으로 5대 정책과제인 ① 평생 설계 지원 강화, ②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 ③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 ④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 지원 확대, ⑤ 복지와 기술 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그 중 ②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의 핵심과제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지원생활 기반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핵심과제의 세부추진사업으로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독립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 지원주택 및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했는데, 2025년까지 지원주택을 623호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비전 체계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Ⅱ-6]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출처: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2021.11.04.) 서울시,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p.9

(3) 장애인 자립 및 탈시설 관련 정책 현황

2차 탈시설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 및 탈시설 지원 정책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과 시설변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된다.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으로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센터 운영,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장애인 자립정착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추가급여 등이 있다. 탈시설 정책 중 주요 정책에 대한 세부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은 제2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2018~2022)의 핵심과제로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들이 지원주택 등으로 이주하여 자립생활을 하고, 기존의 시설은 폐지 후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개인의 탈시설 지원이 아닌 시설단위의 탈시설로 전국최초 시도이며 2020년 1개소, 21년 1개소를 각각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수행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거주시설 변환사업 방향설정과 추진을 위해 시설별 특징을 고려한 탈시설 모델 4가지를 개발했다. 각 모델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Ⅱ-2〉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 탈시설 모델

모델	내용
A모형	•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당시설을 폐지한 후 시설 전체를 '주거서비스센터'로 변환하는 방식 • '주거서비스센터'는 통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30~50가구 규모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하나로 묶고, 이용인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주택관리 등을 지원함
B모형	기존법인이 시설의 일부는 '주거서비스센터'로 운영, 다른 공간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 등 복지시설 병행 운영
C모형	새 법인이 폐지 시설의 일부를 '주거서비스센터'로 운영, 기존 법인은 시설 일부를 재활병원 등의 용도로 전환해 서비스 제공
D모형	운영법인이 시설을 폐지하고 법인 해산 후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기부채납)

출처: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2020.09.15.), 서울시, 장애인 '집단거주'에서 '내집 살림'으로…전국 첫 시범기관 10월 선정(보도자료) p.2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은 준비단계, 전환단계, 완료단계로 진행된다. 준비단계에서는 시설에서 수립한 전환 계획서, 대내 · 외 환경분석 등을 기반으로 시설전환 방향을 설정한다. 두 번째 전환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컨설팅을 시행하며 시설의

기능전환 목적사업, 종사자 고용연계, 이용인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마지막 완료단계는 입소 장애인에게 지원주택 및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 거주시설 종사자 고용, 시설폐지 및 전환 등의 계획을 실행한다.

②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주택과 전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서울시에서 2010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서울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① 자립생활주택 입·퇴거 지원 및 거주시설 종사자·이용자 자립역량 강화, ②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원 및 품질관리(전담인력 역량강화, 모니터링, 심사등), ③ 지역사회 자립 관련 전문기관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안전·주거·금융 등)이다.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시-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장애인거주시설이 연결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주택을 매개로 원활하게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Ⅱ-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체계

구분	내용
서울시	사업총괄(운영계획 수립, 예산지원, 운영사업자 선정)
자치구	운영사업자 행정지원(운영사업비 교부·정산, 운영사업자 지도·점검, 관내 자원 연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자립생활주택 정보제공, 전담인력 역량강화·심사·모니터링 등 품질관리, 자원 개발 및 연계, 지역사회 인식개선 등)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입주인 자립 지원(주택관리, 입주인 개별지원, 전담인력 채용·관리, 지역자원 개발·연계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준비 지원(거주 관련 욕구 확인, 시설 퇴소, 자립준비 지원, 위기사례 공동 지원)

출처: 김현승 외(2019)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주거모형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p.79 표〈3-15〉 사용

③ 자립생활주택

- 개요

자립생활주택은 탈시설 장애인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지역 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공간으로서, 최대한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주하는 지원인력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생활가정과 구분되는 차이점을 갖는다. 입주 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의 지역사회 자립 희망 이용인이다. 공공임대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1주택에 2~3인이 거주하며,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 2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및 각종 관리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이후 주택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전담 코디네이터 1인이 2~3인의 입주자를 지원하고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인력 등 다양한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체험홈,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해오다 거주시설 체험홈과의 구분을 위해 2015년부터 자립생활주택 '가'형, '나'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6년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주택 '다'형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유형별 운영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 Ⅱ-4〉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요(2021년 12월 3일 기준)

구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다형
입주대상	등록 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입주기간	기본 2년	
지원형태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가능하며, 일정기간 경험과 훈련을 통해 사회적 자립역량을 지원하는 유형, 지원인력의 간헐적 지원형태 (본인 혹은 활동보조를 통하여 자기결정, 일상생활 관리가 가능)	일상생활 전반적으로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나, 일정기간 경험과 훈련을 통해 개인적 자립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유형, 지원인력의 집중적 지원형태 (인지적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지원필요)
지원내용	개별자립생활 체험 및 사회적응 지원	
개소수	29개	33개
주택유형	일반임대 (다세대주택 등) 및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인원	3명/주택당	2명/주택당
운영형태	운영사업자 위탁운영	
지원인력	전담인력(코디네이터) 1명	전담인력(코디네이터) 1명+ 보조인력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

- 운영체계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주택운영기관, 장애인거주시설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사업총괄의 역할로 보조금 배부, 자립생활주택(SH 매입임대주택 등) 확보, 시비 추가활동지원시간(퇴소 후 2년까지 월 120시간)을 제공한다. 자치구의 경우 운영사업자 행정지원의 역할을 담당하여 운영보조금을 교부·정산하고, 운영사업자 지도점검 및 관내 자원을 연계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원을 담당하는데, 주택정보(신규, 공실 등)을 제공하고, 주택운영 모니터링 및 사후지원, 주택 입주·퇴거 지원 및 입·퇴거 장애인 데이터 관리, 직무매뉴얼 개발, 전담인력 교육, 솔루션위원회 운영, 그리고 광역자원(문화, 의료, 직업, 금융, 안전 등)을 개발 및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택운영 기관은 입주인의 자립지원을 담당한다. 입주 장애인 모집 및 사전지원, 입주 장애인 개별지원(일상생활, 사회참여, 옹호, 주거 등), 지역자원 개발·연계, 퇴거지원 및 사후지원(3년), 주택전담인력(코디네이터) 채용·관리 및 주택관리를 수행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자립 준비 지원 역할을 담당하여 시설 이용자의 지역사회 거주관련 욕구를 파악하고 시설 퇴소와 자립준비를 지원하며, 위기사례에 대해 공동지원을 수행한다. 전반적인 입주와 퇴거지원 과정은 주택운영사업자가 주관한다. 또한 민·관협치를 위해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거주시설 이용자의 입주 사전지원, 입주를 위한 개별지원방안, 퇴거지원은 주거시설 관계자뿐만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관계 공무원, 지역복지기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 퇴거지원

퇴거의 유형은 지역사회 자립, 지원주택, 기타 자립유형이 있다. 자립생활주택 입소자는 입주 후 6개월부터 1년 사이에 입주자의 현 자산과 선호 퇴거유형 및 선호지역 등을 고려하여 퇴거 후 원하는 자립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이후 1년동안 퇴거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입주자에게 적합한 퇴거유형을 확정짓는다. 퇴거 예정 1년 전 부터 후견인 선정절차 및 퇴거에 필요한 자원을 미리 연계하고, 퇴거주택 마련 후에는 퇴거지원 계획서를 작성하고 퇴거지원 위원회를 개최한다. 입주자의 성향과 퇴거유형에 따라 계획이 달라지며, 퇴거유형에 따라 계획을 쉬립해야 한다. 퇴거 예정 2달 전에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이사지원과 자원연계를 수행한다. 전

입신고 및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을 지원한다. 퇴거 후 사후지원은 입주자와 협의하여 상담, 방문 등 실시한다. 퇴거유형은 입주자의 욕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립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퇴거계획을 세워야 한다. 퇴거관련 참고할 수 있는 주거 및 각종 복지 서비스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Ⅱ-5〉 서울시 임대주택 유형 및 지원방법

주택종류	기관	기간	지원 방식	신청자격
영구임대주택	SH, LH	50년	주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예정]
국민임대주택	SH, LH	30년	주택 지원	• 입주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 •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예정]
행복주택	SH, LH	6년 (젊은층) ~ 20년 (고령자)	주택 지원	• 대학생, 신혼부부, 만 65세 고령자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예정]
매입임대주택	LH	기본 2년 최대 20년	주택 지원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확인필(1순위~3순위)
전세임대주택	LH	최장 20년	보증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청년, 소년소녀가정 등 보증금 지원한도액(수도권 9천만원)
도시생활형	SH	30년	주택 지원	•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재개발 임대주택	SH	10년	주택 지원	• 재개발사업철거세입자 및 근로자평균 50% 이하
장기안심주택	SH	최대 10년	보증금 지원	• 전용 60㎡ 이하(2인 이상 : 85㎡ 이하)
기존주택 전세임대	SH	최대 20년	전세금 지원	• 전용 85㎡ 이하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서울시	기본2년 최장6년	전세금 지원	• 세대주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소득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2인이하 가구(1억 5,000만원 이내)

출처: 서울시복지재단(2021)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매뉴얼 - 입주자 자립지원 p.48 표

〈표 Ⅱ-6〉 서울시 각종 감면혜택 및 복지서비스

감면종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일상생활 관련	주거급여	중위소득 45%이하	1인 가구 266,000원[기준임차료]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통신요금	생계·의료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통신사업자방문, 전화, 인터넷 (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주거·교육, 차상위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에너지 바우처	장애인	여름(7~9월): 전기 요금 차감 / 겨울(10월~익년4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차감 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생계·의료		
	양곡할인	생계·의료	정부양곡 구입 시 10kg 2,000원을 개인부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주거·교육, 차상위	정부양곡 구입 시 10kg 10,100원을 개인부담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의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 (LED)로 교체, 조명 교체 공사를 포함한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단열·창호교체 등 저소득층의 난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 개보수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안전 관련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내용: 대상자 가구 직접방문 후 서비스 지원 지원시간: 22시~익일 5시, 2~3회 방문	해당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취약가구 등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 가스감지센서를 통해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장비설치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장비 시스템을 통한 전송정보 대응조치	해당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낮 활동 지원 관련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성인 발달 및 중증 중복 뇌성마비 장애인	운영시간: 월, 화, 목, 금10:00-16:00(주4일) 내용: 개인별 서비스 제공 및 교육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문의

감면종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만18세~만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시간: 기본(월88시간), 단축형(월44시간), 확장형(월 120시간) 3가지 유형으로 지원 지원방법: 지원인력 1인이 2~4명의 이용자에게 그룹으로 서비스 지원	

* 서비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서울시정보소통광장 opengov.seoul.go.kr 참고")
출처: 서울시복지재단(2021)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매뉴얼 - 입주자 자립지원 p.48-49 표

〈표 Ⅱ-7〉 서울시복지재단 광역 자원 현황(2020년 5월 기준)

자원내역		지원기간	지원 대상	지원내용 및 방법
영역	연계기관명			
주거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연중	전체 입주자	•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임대주택, 전세자금 등 다양한 정보연계 •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연계(방문, 내방, 유선 등)
안전	서울 소방재난본부	4월/10월	전체 주택	• 찾아가는 맞춤형 화재안전 방문서비스(시민안전파수꾼 연계사업, 4월) • 안전취약계층 소방재난안전교육 점검(10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연중	희망 입주자	• 화재·가스누출 감지센터 등 장비설치 •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대처 시스템 구축 • 자치구 내 수행기관에 신청 후 설치
보건의료	서울시립 은평병원	연중	필요시	• 정신건강 분야 진단 및 처방
	솔루션 슈퍼비전	연중	희망 코디네이터	• 정신건강분야 전문의 슈퍼비전 연계 • 정신과 전문의(3개소) 인적자원 확보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3월~12월	50명 (신청제)	• 입주자 종합진단 (의료/사회/심리분야 등) • 입주자 지원방향 정보제공
재정법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중	희망 입주자 및 코디네이터	• 재무관리(지출, 재무계획 등), 소비·채무조정, 복지서비스 등 상담 및 관리 • 필요시 복지재단 신청→지역센터 연계→내방·유선 등 상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연중	희망 입주자 및 코디네이터	• 복지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 법률구제 지원 • 필요시 복지재단 신청→연계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	연중	희망 입주자 및 코디네이터	• 개인별 재정계획 수립 및 관리 • 신탁재산 관리 및 배분금 집행 관리감독 • 필요시 복지재단 신청→연계

자원내역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지원내용 및 방법
영역	연계기관명			
	결정지원센터			
직업	커리어 플러스센터	연중	희망 입주자 및 코디네이터	• 발달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인턴쉽 연계 • 적성에 기반한 업체개발 및 연계 • 복지재단 또는 센터 신청 후 상담
	서울시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연중	희망 입주자 및 코디네이터	• 직업능력평가 및 취업알선, 사후지원 • 전문과정 직업교육 • 복지재단 또는 센터 신청 후 상담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연중	희망 입주자	• 만18세 이상 장애인 • 맞춤식 훈련과 취업경험의 기회 제공
지역 통합	SNS 협력사업 (Supervision Network Supporter)	4월~ 11월	희망 코디네이터	•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시범사업 수행 장애인복지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 입주자의 도전적 행동대응 및 개별지원계획 수퍼비전 제공
	장애인 지역통합사업	연중	희망 입주자	• 서울스몰스파그, 옹심이 • 참여 희망시 복지재단 문의→인근지역 수행기관 연계
기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 시설협회	비정기	희망자 또는 전체주택	• 희망세움프로젝트, 주거환경개선사업, 의약품 지원 등 수시 후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자	연중	희망 입주자	• 만18세~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 주간활동기관에서 2~4명의 그룹단위 프로그램 진행
	송파 장애인 운전연습장	연중	희망 입주자	• 서울시 등록 장애인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광역자원 지원기간·지원대상·내용 및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출처: 서울시복지재단(2021)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매뉴얼 - 입주자 자립지원 p.52 표

- 운영현황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현황은 2020년 '나'형 주택이 모두 반납되어 2021년 12월 3일 기준 '가'형 29개소, '다'형 33개소 총 6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20년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이용현황에 따르면(2020년 11월 기준), 2020년 한해 총 입소자는 125명이며, 그중 지적장애인이 100명으로 뇌병변 16명, 지체 6명, 자폐성 2명, 언어 1명

에 비해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자립생활주택 퇴소자는 185명이며 그중 148명(80%)이 자립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예산은 4,257,880천원으로 2020년에 비해 329,125천원 증액되었으며, 2022년까지 자립생활주택을 91호까지 확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④ 지원주택

- 개요 (장애인거주시설 변환사업 보도자료 추가)

장애인 지원주택은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에서 지원주택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기준 127개 주택이 장애인에게 공급되었다.

지원주택 입주자의 자격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중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이다. 장애인 입주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1항에 해당되는 자이거나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지만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해당한다. 지원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없으며, 생활비는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 입주자 선정은 SH의 지원주택 입주자 신청공고에 접수한 신청자들을 SH와 각 사업부서(어르신지과, 자활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가 적격성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 뒤 SH가 적절한 지원주택을 탐색하고, 입주자 선정결과를 통보하면 지원주택 입주하고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원주택 유형 및 서비스 내용

지원주택은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①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급형 지원주택', ②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이용하는 '비공급형 지

원주택', ③ 지역사회 정착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중간단계 주거형태인 '자립생활주택' 까지 3종의 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주택 3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Ⅱ-8〉 장애인 지원주택 유형

구 분	장애인 지원주택 (SH 공급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통합서비스 (SH 비공급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념	공공임대주택 + 주거서비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주거서비스만 제공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 +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
이용대상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발달장애인 우선)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 (탈시설장애인인 경우 타장애 가능)	탈시설 욕구가 있는 서울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입주인원 (주택 당)	1인 원칙 (2~3인 공동거주 가능)	1인 (2~3인 공동거주 가능)	2인 (가·나형은 3인 가능)
공급목표	68호('19)→128호('20)→248호('22)	26호('19)→40호('20)→120호('22)	74호('19)→81호('20)→91호('22)

출처: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2020.04.09.)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종 '22년까지 총 459호로 확대(보도자료) p.2

장애인 지원주택은 내부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제공된다. 또한 주거코치, 주거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이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서비스는 주택관리를 포함한 주거영영, 가사관리 등 일상생활 영역, 사회참여 영역, 법률 지원과 같은 옹호영역까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영역들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주거서비스 영역과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Ⅱ-9〉 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내용

서비스 영역	내 용
주거 영역	• 주택 점검·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전장비 설치 등 • 이사 지원: 주택 라운딩, 개인물품 구입, 전입신고 등
일상생활 영역	• 가사 관리: 위생, 식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업무 • 건강·안전 관리: 투약 관리, 병원 진료 동행, 비상연락 유지 등

서비스 영역	내 용
	• 금전 관리: 금전 관리 교육, 은행 업무 동행 등
사회참여 영역	• 주간활동 지원: 주택 인접 복지관 주간활동 연계 • 취업활동 지원: 동료상담가, 중증장애인일자리 등 연계 • 지역사회 활동 지원: 지역사회 내 자조모임 등 참여 지원
옹호 영역	• 법률 지원: 인권침해 피해 발생할 경우 법률 지원 연계 • 공공후견인 연계: 의사결정능력 부족 시 공공후견인제도 이용 • 신탁 연계: 자산 관리 필요 시 신탁제도 이용

출처: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2020.10.07.)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위한 지원주택 74호 공급…신축아파트 최초 포함(보도자료)

또한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제공원칙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지원시 단약이나 단주 조건을 요구하지 않음
-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입주자의 동의와 자기결정권을 존중
- 입주자의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함
- 입주자들의 사생활과 독립생활 보장
- 서비스 제공 내용은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입주자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조정하면서 유연성 확보
-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 주민이나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회통합 지원
- 입주자의 독립생활역량 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과잉이나 서비스 의존을 최소화
- 입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예, 불, 낙상, 입주자/이웃간 다툼)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에 대하여 단주접근방식보다 폐해감소(Harm Reduction) 접근방법 활용
- 발달장애인 입주자의 경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접근방법 활용, 주택 내 다른 입주자와 관계에서 착취/재화 관련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에 대하여 고려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2019.05)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 p.8-9

- 지원주택 공급

지원주택 공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시 주택정책과와 관련 분과(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SH)가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원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기관을 선정한다. 지원주택 물량과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자별 주택물량을 배정하여 매입, 보수, 건축, 리모델링 등을 한 뒤 대상자들에게 공급한다.

- 운영체계

주거생활지원센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슈퍼바이저, 주거코디네이터, 주거코치 등 전문인력이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인력은 개인별 주거생활지원계획을 작성하고 주거서비스 이행 및 평가를 수행한다. 슈퍼바이저는 기관당 1~2명 배치하며 입주자 사례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주거코디네이터는 사례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직접서비스, 행정업무를 일부 수행하며 입주자와 1:6 이하로 유지한다. 주거코치 및 대체인력(활동지원사 등)은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추가 배치한다.

- 입주 및 퇴거절차

지원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계약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기관이 직접 계약하는데 입주자는 기본 규칙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기본 규칙은 입주자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주택계약 원칙 수준이어야 한다.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은 주택공급기관을 대신하여 입주자에게 원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이해했음을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 규칙에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 추가로 제시할 수 있지만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 사항도 존재한다. 기본 규칙과 기본 규칙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본규칙〉
- 임대료의 안정적 납부
- 입주자가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거주 공간 관리에 동의
- 입주자의 특성에 따라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주기적으로 만나야 함(주기적이

란 1주일에 1회로 설정하되, 지원서비스제공기관과 입주자가 주기를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계약당사자 외에 장기간(1달 이상) 거주하는 동거인이 생길 경우, 주택공급기관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
- 가족관계(동거인 포함) 변동 등 개인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재수립 또는 조정할 수 있음을 입주자에게 알림
- 1주일 이상 주택을 비울 경우, 코디네이터에게 알림
- 병원방문 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나 복용약물, 치료방법, 추후방문 등 병원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 코디네이터와 이야기함
- 함께 사는 다른 사람(동거인 포함)의 방(집)을 함부로 들어가지 않음
- 다른 입주자(동거인 포함)나 이웃에게 방해가 되는 소음 또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는 자타해 위험을 유발하지 않아야 함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사항〉
- 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참여
- 단주나 단약
- 약물검사 참여 및 결과 제출에 대한 약속
- 정신질환을 가진 입주자에게 약복용 조건(단, 전염성이 있는 질병의 경우 제외)
- 종교행사나 행동에 대한 참여
- 중대 범죄에 대한 기소 경력 정보 제공
- 신용 정보 제공
- 방문자 금지나 손님의 야간방문 금지
- 정기적인 방 검사 동의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2019.05)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 p.7-8

지원주택 입주자는 퇴거사유 및 주거코디네이터의 판단 하에 지원주택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시 퇴실을 요청받을 수 있다. 주거코디네이터는 퇴거가 결정된 입주자에게 퇴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퇴거 후 거주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원주택 퇴거사유는 다음과 같다.

〈퇴거 사유〉
- (계약사항이었던)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주기적으로 만나지 않는 경우
-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주택 이용에 대한 기본규칙을 어기는 경우
- 이 외에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지원주택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주자의 상황이 변화하여 지원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 24시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2019.05)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 p.8

⑤ 장애인 자립정착금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정착금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 준비 중이거나 퇴소 완료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20% 이내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인 당 1천3백만 원이며(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소일이 20.01.01 이후인 퇴소자) 신청 방법은 시설 퇴소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시설 관할 자치구나 거주지 자치구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 후 개인통장으로 지급된다.

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추가급여

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해왔던 탈시설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인정점수가 낮은 발달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중 인정점수가 200점 이상인 사람이다. 대상자는 중앙정부에서 제공받는 활동지원 급여 이외에 서울시 시비 추가로 2년 간 월 50시간~120시간(2020년 기준)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2) 장애인 인구 및 지역사회 수요 · 공급자원 현황

(1) 지역사회 수요 현황

① 서울시 장애인 인구 현황

- 연도별 장애인 인구 추이

서울시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전체 인구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장애인 인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장애인 수 비율이 꾸준히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4월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는 393,408명으로 전체 서울시 인구의 4.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10〉 서울시 연도별 장애인 등록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4
서울시 전체인구	9,857,426	9,765,623	9,729,107	9,668,465	9,588,711
장애인 수	391,753	392,920	394,843	394,190	393,408
	3.97%	4.02%	4.06%	4.08%	4.10%

출처 : 서울복지포털 웹사이트(wis.seoul.go.kr),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2021년 4월 기준)

- 장애 유형별 장애인 인구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를 살펴보면, 2021년 4월 기준 전체 장애인 393,408명 중 43.50%(171,152명)이 지체장애인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뒤로 청각 14.76%(58,080명), 시각 10.55%(41,513명), 뇌병변 10.35%(40,718명)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안면 장애인(374명, 0.10%), 심장 장애인(1,038명, 0.26%)은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유형별 장애인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Ⅱ-11〉 서울시 유형별 장애인 수 및 비율(2021년 4월 기준)

구 분	장애인 수	
합계	393,408	100%
지체	171,152	43.50%
뇌병변	40,718	10.35%
시각	41,513	10.55%
청각	58,080	14.76%
언어	3,431	0.87%
지적	27,123	6.89%
자폐성	6,557	1.67%
정신	16,526	4.20%
신장	18,016	4.58%
심장	1,038	0.26%
호흡기	2,106	0.54%
간	2,627	0.67%
안면	374	0.10%
장루.요루	2,896	0.74%
뇌전증	1,251	0.32%

출처 : 서울복지포털 웹사이트(wis.seoul.go.kr)

- 연령 및 성별 장애인 인구

서울시 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2021년 4월 기준 70대 장애인이 92,463명으로 전체 23.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인 장애인 인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장애인 인구도 고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50세 이상 중고령 장애인이 전체 78.93%를 차지하여 향후 장애인 인구의 심각한 고령화 경향이 예상된다.

성별 장애인 인구의 경우 021년 4월 기준 남성 장애인이 228,001명, 57.96%, 여성 장애인이 165,407명, 42.04%로 남성 장애인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 장애인의 비율이 여성 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났고, 80대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만 여성 장애인의 비율이 60.59%로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평균수명이 여성보다 짧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연령별, 성별 장애인구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Ⅱ-12〉 서울시 연령별, 성별 장애인 수 및 비율(2021년 4월 기준)

	계		남성		여성	
합계	393,408	100%	228,001	57.96%	165,407	42.04%
0~9	4,751	1.21%	3,171	66.74%	1,580	33.26%
10~19	8,617	2.19%	5,642	65.48%	2,975	34.52%
20~29	16,120	4.10%	10,390	64.45%	5,730	35.55%
30~39	19,231	4.89%	12,736	66.23%	6,495	33.77%
40~49	34,190	8.69%	23,317	68.20%	10,873	31.80%
50~59	62,384	15.86%	42,180	67.61%	20,204	32.39%
60~69	92,038	23.40%	57,044	61.98%	34,994	38.02%
70~79	92,463	23.50%	48,452	52.40%	44,011	47.60%
80 이상	63,614	16.17%	25,069	39.41%	38,545	60.59%

출처 : 서울복지포털 웹사이트(wis.seoul.go.kr)

-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 인구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 인구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 기준 강서구 28,727명, 7.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노원구 27,312명, 6.93%, 은평구 21,773명, 5.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구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구(5,700명)로 전체 1.45%를 차지했으며 종로구가 6,015명(1.45%)으로 중구 다음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치구별 장애인 수 및 비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Ⅱ-13〉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 수 및 비율(2020년 12월 기준)

자치구	장애인 수	
합계	394,190	100.00%
종로구	6,015	1.53%
중구	5,700	1.45%
용산구	7,960	2.02%
성동구	11,412	2.90%
광진구	12,353	3.13%
동대문구	15,701	3.98%

자치구	장애인 수	
중랑구	20,394	5.17%
성북구	17,490	4.44%
강북구	17,441	4.42%
도봉구	15,436	3.92%
노원구	27,312	6.93%
은평구	21,773	5.52%
서대문구	12,551	3.18%
마포구	12,951	3.29%
양천구	17,558	4.45%
강서구	28,727	7.29%
구로구	18,280	4.64%
금천구	11,390	2.89%
영등포구	14,539	3.69%
동작구	14,607	3.71%
관악구	20,265	5.14%
서초구	10,542	2.67%
강남구	15,200	3.86%
송파구	20,286	5.15%
강동구	18,307	4.64%

출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2)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관련 공급자원 현황

2021년 7월 기준, 서울시의 전체적인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267개소(미지원시설 12개소 포함)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지체장애 2개소, 시각장애 3개소, 청각장애 1개소, 지적장애 14개소(미지원시설 3개소)가 있으며, 중증장애 23개소(미지원시설 1개소), 영유아 2개소, 단기거주시설 42개소(미지원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180개소(미지원시설 7개소)가 운영 중이다.

지역사회재활시설(216개소, 미지원시설 5개소)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51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1개소(미지원시설 5개소), 장애인체육시설 7개소, 생활이동지

원센터 1개소, 수어통역센터 26개소가 운영 중이다.

직업재활시설(137개소, 미지원시설 6개소)의 경우 보호작업장 115개소(미지원시설 4개소), 근로사업장 13개소(미지원시설 1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9개소(미지원시설 1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 외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6개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개소, 피해장애인쉼터 2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표 Ⅱ-14〉 장애인복지시설 현황_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근거(2021년 7월 기준)

유형	거주시설 267(12)								지역사회재활시설 216(5)					직업재활시설 137(6)			의료재활	생산품판매	피해쉼터
	장애유형별 20(3)				중증	영유아	단기	그룹홈	복지관	주간보호	체육	생활이동	수화통역	보호	근로	적응훈련			
	지체	시각	청각	지적															
계	2	3	1	14 (3)	23 (1)	2	42 (1)	180 (7)	51	131 (5)	7	1	26	115 (4)	13 (1)	9 (1)	6	1	2

* ( )는 미지원시설현황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그 밖에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53개소,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64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8개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2개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보조기기센터 4개소,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1개소,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1개소, 장애인지원주택 127개소가 운영중이다. 구체적인 시설별 특징 및 소재지는 이하에 정리하였다.

〈표 Ⅱ-15〉 장애인복지시설 현황_기타 (2021년 7월 기준)

계	장애인 자립 생활(IL) 센터	장애인 자립 생활 주택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발달 장애인 평생교 육센터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	장애인 보조 기기 센터	장애인 의사 소통 권리증진 센터	뇌병변 장애인 비전 센터	장애인 지원 주택
291	53	64	18	22	1	4	1	1	127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①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의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 및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장애유형별(지체, 청각, 시각, 지적)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실비이용시 등록장애인은 모두 이용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가진 등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의 경우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로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 강동구에 1개소, 관악구에 1개소 총 2개소가 있으며, 청각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3개소(강북구 1개소, 노원구 1개소, 서초구 1개소)가 운영 중이다. 청각장애인거주시설은 동작구에 1개소가 있으며,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은 15개소(강동구 2개소, 강서구 2개소, 관악구 1개소, 구로구 1개소, 노원구 2개소, 도봉구 1개소, 서초구 1개소, 송파구 2개소, 양천구 1개소, 은평구 2개소가 운영중이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시설로 2020년 12월 기준 서울시에 24개소가 있다. 자치구별 현황으로는 강남구 1개소, 강동구 2개소, 강북구 4개소, 강서구 2개소, 관악구 1개소, 노원구 3개소, 마포구 1개소, 성북구 1개소, 송파구 3개소, 양천구 2개소, 영등포구 2개소, 용산구 2개소, 은평구 1개소, 종로구 2개소가 운영중이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에게 일정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거주시설로 2020년 12월 기준 서울시에 43개소가 위치해 있다. 강남구 2개소, 강동구 4개소, 강북구 4개소, 강서구 6개소, 광진구 1개소, 구로구 2개소, 금천구 2개소, 노원구 2개소, 도봉구 1개소, 동대문구 1개소, 동작구 1개소, 마포구 3개소, 서대문구 2개소, 서초구 2개소, 성북구 1개소, 송파구 3개소, 양천구 1개소, 은평구 2개소, 종로구 2개소, 중랑구 1개소가 있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2020년 12월 기준 서울시에 총 175개소가 운영중이다. 강남구 20개소, 강동구 11개소, 강북구 11개소, 강서구 20개소, 관악구 6개소, 구로구 10개소, 금천구 6개소, 노원구 15개소, 도봉구 10개소, 마포구 4개소, 서대문구 5개소, 서초구 7개소, 성동구 4개소, 송파구 14개소, 양천구 8개소, 영등포구 4개소, 용산구 3개소, 은평구 12개소, 종로구 1개소, 중구 2개소, 중랑구 2개소가 운영중이다.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의 자치구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Ⅱ-16〉 전국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2020년 12월 기준)

지역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단기 거주시설	공동 생활가정
	지체	시각	청각	지적			
전국	28	16	7	317	251	157	754
서울	2	3	1	15	24	43	175
강남구	·	·	·	·	1	2	20
강동구	1	·	·	2	2	4	11
강북구	·	1	·	·	4	4	11
강서구	·	·	·	2	2	6	20
관악구	1	·	·	1	1	·	6
광진구	·	·	·	·	·	1	·
구로구	·	·	·	1	·	2	10
금천구	·	·	·	·	·	2	6
노원구	·	1	·	2	3	2	15
도봉구	·	·	·	1	·	1	10
동대문	·	·	·	·	·	1	·
동작구	·	·	1	·	·	1	·
마포구	·	·	·	·	1	3	4
서대문	·	·	·	·	·	2	5
서초구	·	1	·	1	·	2	7

지역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단기 거주시설	공동 생활가정
	지체	시각	청각	지적			
성동구	·	·	·	·	·	·	4
성북구	·	·	·	·	1	1	·
송파구	·	·	·	2	3	3	14
양천구	·	·	·	1	2	1	8
영등포	·	·	·	·	2	·	4
용산구	·	·	·	·	2	·	3
은평구	·	·	·	2	1	2	12
종로구	·	·	·	·	2	2	1
중 구	·	·	·	·	·	·	2
중랑구	·	·	·	·	·	1	2

출처: 보건복지부(2021.7)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자료에서 발췌하여 구성함

2020년 12월 기준 전국 및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개소 수와 입소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15개소(4.73%)로 전국 317개소 대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시각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전국 16개소 중 서울시에 3개소(18.75%)가 위치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국 754개소 중 23.21%인 175개소가 서울시에 위치해 있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원주택 공급 등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수행시 전국대비 시설 수와 입소자 수가 높은 거주시설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국대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의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Ⅱ-17〉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시설 수, 입소자 수 현황(2020년 12월 기준)

유형		지역	시설 수	입소자	
				정원	현원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	지체	전국	28	1,367	1,121
		서울시	2(7.14%)	91(6.66%)	91(8.12%)
	시각	전국	16	798	579
		서울시	3(18.75%)	131(16.42%)	93(16.06%)

유형		지역	시설 수	입소자	
				정원	현원
	청각	전국	7	373	205
		서울시	1(14.29%)	62(16.62%)	28(13.66%)
	지적	전국	317	12,713	11,349
		서울시	15(4.73%)	808(6.36%)	661(5.8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전국	251	12,069	10,866
		서울시	24(9.56%)	1,524(12.63%)	1,342(12.35%)
단기거주시설		전국	257	2,002	1,733
		서울시	43(16.73%)	468(23.38%)	447(25.79%)
공동생활가정		전국	754	3,235	2,872
		서울시	175(23.21%)	731(22.60%)	66123.02%)

출처: 보건복지부(2021.7)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자료에서 발췌하여 구성함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 치료 ·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가 있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및 가족(복지관 주소지 관내 장애인, 중증장애인 우선이용)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재활자립, 복지증진,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개선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주로 상담 · 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직업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평생교육지원, 사회서비스지원, 운영지원 및 기획 ·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서울시에는 2020년 12월 기준 모든 자치구에 1개 이상 총 51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해 있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은 등록장애인(중증장애인 우선이용)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지원, 낮시간 장애인돌봄을 통해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사회 · 경제활

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용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여가활동 지원, 교육·훈련지원, 지역사회적응활동, 특별활동 등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교육생지도 등을 실시한다. 서울에는 2020년 12월 기준 성북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 1개 이상의 주간보호시설이 운영중이며 총 128개소가 있다.

-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체육시설은 지역 내 시설 및 재가장애인(장애인 우선, 지역주민 이용가능)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재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체육시설은 운영지원사업, 시설관리사업, 재활체육사업, 생활체육사업(각종 체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여가사업(각종 여가지원), 지역연계체육사업, 사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서울시에는 2020년 12월 기준 7개(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마포구, 은평구 각 1개소, 송파구 2개소)의 장애인 체육시설이 운영중이다.

- 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센터는 의사소통에 지원이 필요한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청각·언어장애인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서대문구)와 각 자치구별 지역센터가 운영중이다.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수행 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콜과 바우처 택시가 있다. 장애인복지콜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안내 보조를 지원한다. 이용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이다. 또한 장애인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바우처 택시를 운영 관리하여 서울시 주민 중 장애인 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동작구에 1개소 운영중이다. (2020년 12월 기준).

- 점자도서관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로 강서구, 서대문구에 1개소씩 총 2개소가 운영중이다. (2020년 12월 기준)

- 도서 및 출판시설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로 서울시의 경우 관악구에 1개소가 운영중이다. (2020년 12월 기준)

-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수련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송파구에 1개소(운전연습교육원)가 운영중이다. (2020년 12월 기준)

서울시 지역재활시설의 자치구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Ⅱ-18〉 서울시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자치구별 현황(2020년 12월 기준)

지역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 시설	수어통역센터	이동지원센터	점자도서관	도서및출판시설	수련시설
전국	258	797	28	199	164	19	1	1
서울	51	128	7	27	1	2	1	1
강남구	6	9	·	1				
강동구	4	5	·	1				
강북구	1	6	·	1				
강서구	3	9	1	1		1		
관악구	2	5	1	1			1	
광진구	1	4	·	1				
구로구	2	5	·	1				

지역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 시설	수어통역센터	이동지원센터	점자도서관	도서 및출판 시설	수련시설
금천구	1	4	.	1				
노원구	6	15	1	1				
도봉구	1	6	.	1				
동대문	2	1	.	1				
동작구	3	4	.	1	1			
마포구	1	3	1	1				
서대문	2	3	.	2		1		
서초구	2	8	.	1				
성동구	1	2	.	1				
성북구	2	.	.	1				
송파구	3	10	2	1				1
양천구	1	6	.	1				
영등포	1	5	.	1				
용산구	2	3	.	1				
은평구	1	6	1	1				
종로구	1	2	.	1				
중 구	1	4	.	1				
중랑구	1	1	.	1				

출처: 보건복지부(2021.7)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자료에서 발췌하여 구성함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있다.

-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장애인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평가한 결과 교통, 건축 환경 접근성이나 적응의 문제로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선정한다. 근로인원 중 장애인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60% 이상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2020년 12월 기준 12개의 근로사업장이 있다.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 각 1개소, 구로구 2개소)

-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노동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근로장애인으로 선정한다. 근로인원 중 7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며, 80% 이상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2020년 12월 기준 116개의 보호작업장이 운영 중이며 모든 자치구에서 1개소 이상 위치해 있다. 강동구, 강서구, 송파구에 각 11개소가 운영 중으로 전체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위치해 있다.

-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훈련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어야 한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2020년 12월 기준 강동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송파구에 각 1개소씩 운영 중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자치구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Ⅱ-19〉 전국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2020년 12월 기준)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전국	67	619	34
서울	13	116	5
강남구	·	7	
강동구	·	11	1
강북구	1	3	
강서구	1	11	
관악구	1	4	
광진구	1	3	
구로구	2	5	
금천구	·	6	1
노원구	1	7	1
도봉구	1	2	
동대문	·	3	1
동작구	·	3	
마포구	·	4	
서대문	1	2	
서초구	1	4	
성동구	·	4	
성북구	·	2	
송파구	1	11	1
양천구	·	4	
영등포	·	3	
용산구	·	1	
은평구	·	7	
종로구	1	2	
중 구	·	1	
중랑구	·	5	

출처: 보건복지부(2021.7)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자료에서 발췌하여 구성함

④ 그 외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서울시에는 강동구 1개소, 관악구 2개소, 마포구 1개소, 성동구 1개소, 은평구 1개소 총 6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0년 12월 기준)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생산품 및 서비스·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판매활동, 유통대행, 산산품과 서비스·용역 관련 상담·관리, 홍보, 판로 개척 및 마케팅을 지원한다. 서울시에는 2020년 12월 기준 양천구에 1개소가 위치해 있다.

-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인 쉼터는 가정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부터 심리상담과 지역사회 복귀를 전문지원하는 시설이다. 전문 종사자 8인이 주 7일 24시간 체제로 근무하고 장애유형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순 보호가 아닌 자원연계를 통한 피해 재발 방지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입소자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인권침해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에서 입소 필요성,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해 쉼터의 명칭, 위치, 연락처는 비공개되어 있다. 서울시에는 2021년 7월 기준 2개의 피해장애인 쉼터가 운영 중이다.

⑤ 기타

- 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장애인자립생활(IL)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 대상 포괄적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장애인, 재가장애인 등 자립생활 희망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2021년 11월 기준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IL)센터는 총 56개소로 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 1개소 이상 위치해 있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주택은 탈시설 장애인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지역 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공간으로서, 최대한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 법 및 정책 (3) 장애인 자립 및 탈시설 관련 정책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2월 3일 기준, 서울시 내 자립생활주택은 가형 29개소, 다형 33개소가 운영 중이다. 가형은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에 각 1개소 이상 위치해 있다.

다형의 경우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에 1개소 이상 운영 중이다.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 심리적 부담 등 역기능을 해소하여 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역센터와 자치구에 위치한 기초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상담지원, 역량강화 지원, 돌봄 지원, 휴식 지원, 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한다. 2021년 12월 기준 광역센터 1개소(영등포구)와 모든 자치구에 1개소씩 기초센터가 위치해 있다.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중증발달장애인의 배움의 기회와 지역사회 생활지원, 장애인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평생교육 이용시설이다. 만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 · 심리교육, 문해교육, 사회성 향상

교육, 직업준비교육, 의사소통 증진 교육, 기타 치료 및 취미 여가교육 등을 실시한다. 2021년 6월 기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연령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권리구제, 공공후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21년 7월기준 중구에 1개소가 운영 중이다.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보조기기센터는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하여 보조기기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이다.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동남, 동북, 서남, 서북 4개의 장애인보조기기센터가 25개 자치구를 나누어 담당 운영중이다.

-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 청각, 지적, 자폐, 뇌병변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목표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수단 개발 · 보급,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 권리증진 사업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는 2020년 9월 전국 최초 개소했다. 센터는 영등포구에 위치한다.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중증 뇌병변장애인

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건강 등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뇌병변 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 및 가족 등의 돌봄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용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뇌병변 장애인으로 중증인 경우 우선 선발한다. 자치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입학대상자를 심사하고 선정한다. 2021년 7월 기준 마포구에 1개소가 운영 중이다.

- 장애인지원주택

장애인지원주택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 법 및 정책 (3) 장애인 자립 및 탈시설 관련 정책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총 131개 지원주택이 운영 중이며, 강동구 31호, 구로구에 16호, 노원구 12호, 동대문구 9호, 성북구 12호, 양천구 21호, 은평구 30호가 공급되었다.

〈표 Ⅱ-20〉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애인복지시설(기타)(2021년 7월 기준)

	장애인 자립생활 (IL)센터 (2021.11)[1]	장애인자립생활 주택 (2021.12)[2]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2021.12)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	장애인 지원주택 (2021.1)4)
		가형	다형				
서울	56	29	33	26	22	4	131
강남구	2			1	1		
강동구	3	3	4	1	1	1	31
강북구	2	1	4	1	1		
강서구	4	3		1	1	1	
관악구	3	1	1	1	1		
광진구	3	1	1	1	1		
구로구	3	3	1	1	1		16
금천구	1		4	1	1		
노원구	1	1	1	1	1	1	12
도봉구		1	3	1	1		
동대문	2		2	1	1		9
동작구	2		1	1	1		

	장애인 자립생활 (IL)센터 (2021.11)[1]	장애인자립생활 주택 (2021.12)[2]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2021.12)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	장애인 지원주택 (2021.1)4)
		가형	다형				
마포구	2			1	1	1	
서대문	1			1	1		
서초구	1	1		1			
성동구	2	2	1	1	1		
성북구	4	1	2	1	1		12
송파구	2	1	2	1	1		
양천구	2	2	2	1	1		21
영등포	3	1	1	2	1		
용산구	4			1			
은평구	3	4	3	1	1		30
종로구	2	2		1	1		
중 구	1			1			
중랑구	3	1		1	1		

* 2021년 7월 기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개소(중구),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1개소(영등포구),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1개소(마포구)(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출처: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2021.11) 2021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
2)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 지역자립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idl)
3)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dfsc.or.kr/)
4)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2021.04) 2021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계획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3)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선행연구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탈시설 및 자립생활과 관련된 서울시 장애인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연구와 서울시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로 구분된다. 두 분류별 연구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서울시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현황, 환경, 특징 조사

① 20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서울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2023년부터 시행될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2023-2027)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실태조사는 2011년 1차조사 이후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의 재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코로나19를 포함한 자립생활 실태와 욕구 파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중증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건강, 일상생활, 자립생활,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주거, 복지서비스, 소득, 임신/출산/양육,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 코로나19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관련 조사 결과, 중증장애인 응답자 중 약 9%가 시설입소 경험이 있으며, 단체생활이 싫고 개인생활을 하고 싶어서(15%),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14.3%) 탈시설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 퇴소 결정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일상생활을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23.3%) 생활에 필요한 돈이 없어서(21.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탈시설한 중증장애인 응답자들은 시설에서의 생활보다 현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미래의 자립생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시설 퇴소를 위한 서울시 지원에 대한 욕구로 주거지원과 자립정착금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소득지원과 건강 및 의료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시 전체 장애인 인구는 2017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중증장애인 수는 소폭 감소하여 전체 장애인구의 38%를 차지하며,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중증장애인의 고령화, 1인 가구가

증가경향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상황에서 긴급돌봄 및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다양화와 감염병 세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고령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주거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를 제안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과 다양한 유형의 문화·여가활동을 지원을 확대 또한 강조되었다. 뿐만아니라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모형 개발·확대와 중증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포함한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소득보장을 위한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확대, 중증장애인 가정·가사·양육지원 확대, 고령장애인 서비스 강화 등을 제안했다.

②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2020)

강정배 외(2020)가 수행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2020)는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 추진으로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에 자립한 장애인의 삶을 알아보기 위해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탈시설 종단연구의 3차 조사이다. 연구에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과 탈시설 분석, 탈시설 장애인 조사표 개발 및 조사, 분석이 수행되었다.

2020년 기준 자립생활주택 이용자는 2020년 신규 대상자 23명을 포함해 총 261명이다(입주대기자 6명, 입주자 126명, 퇴거자 129명). 그중 본 연구에서 실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인원은 159명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자립생활주택 이용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약 70%가 남성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20-30대가 약 절반정도를 차지해 청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0.3%로 가장 높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자립생활주택 이용자는 주로 선천적 원인(73%)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지적장애가 약 60%, 뇌병변장애 21%로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98.7%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사회관계는 1차 조사인 2019년보다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를 경계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나 관계확대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자금제공 및 집주변 편의시설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게 확인되었다. 장애인 지원주택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절반 이하이며 응답자 중 자립생활주택 이용자와 퇴거자의 인식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주택알선지원에 대한 욕구 또한 높게 나타나 지원주택에 대한 활발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립생활주택 이용자들의 다수가 운동을 하지 않고 영양관리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운동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개선, 개인별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응답자가 다수로 나타나 건강검진에 대한 주기적 정보제공 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식사 및 가사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퇴거자의 경우 조금 다르게 건강관리, 개인 위생관리, 이동에 대한 지원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장애가 신체적 장애인 경우 주거공간 안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세면, 개인위생관리, 환복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정신적 장애의 경우 금전관리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을 위해 주거지원과 소득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건강악화와 장래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 퇴거자 대상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혼자 여가시간을 보내며 주로 TV시청, 라디오 듣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높게 확인되었지만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향후 적극적인 평생교육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자의 40%정도가 주 1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일하는 응답자의 고용의 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생활비 중 식료품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퇴거자의 경우 거주비용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재정과 관련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논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0%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주거, 재정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14%는 지역사회 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인강원 주변 장애인 복지환경 기초자료 조사

조한진 외(2021)가 수행한 인강원 주변 장애인 복지환경조사는 인강원의 주변 복지환경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인강원의 운영현황, 인근지역의 장애인 복지 시설 현황 파악 및 수요조사, 법인과 종사자, 거주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시설변환 욕구도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

여 인강원이 어떤 기관으로 변환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본 연구였다.

국내에 시설 변환의 완전한 선례가 없기에 현재의 시설중심의 장애인 복지 환경을 변환하는 첫 사례로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유연하고 모범적이며 과도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달체계의 변환과 장애인 개인의 권리보장은 분리되어 이해해야 한다는 점, 시설변환은 탈시설 개념의 확장 추세에 따라서 시설을 완전하게 벗어난다는 개념이 아닌,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새롭게 확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주시설 변환사업의 추진원칙을 10가지로 정하였다. 1) 장애정도 유형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한다. 2) 기존 시설은 최단기간 내에 폐지한다. 3) 시설화 요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통제권을 보장한다. 4)지역사회기반 서비스의 다양한 형태를 신규로 개발하여 운영한다 5) 해당 법인의 자원은 시설변환 및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6) 해당 법인의 신규 시설 설치 및 신규 입소를 금지한다. 7) 변환기간중에도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보장한다. 8) 시설 변환 이후 기관은 지역 전체 장애인 지원을 위해 기능한다. 9) 해당 법인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시행하고 고용 전환을 보장한다. 10) 서울시는 시설변환과정에 필요한 과도기적인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

의정부에 인접한 도봉구에 위치한 인강원은 2020년 기준 73명의 거주인이 있었다. 생활동은 24년된 건물 4개층으로, 자립동은 28년된 건물 2개층, 주간보호 건물은 22년된 건물로 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건물 2개동도 14, 15년된 2층 건물이었다. 생활동과 자립동을 중심으로 시설변환 모델이 연구되었으며, 이 과정에 수반되는 고용승계방안 마련 및 변환된 시설의 역할에 대한 조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구재단의 비리로 인한 채무해결과정에 서울시의 과감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함도 논의되었다.

변환된 시설의 역할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 이용시설이 지원하지 못하는 주거지원, 응급 위기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기관중심적이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강조하는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대응을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해당연구에서는 인강원이 변환 이후에 '지원주택을 운영하는 기관' 및 '건강, 의료지원, 긴급 위기 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생활지원센터'로 기능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1운영기관당 30호로 제한하

는 서울시의 지원주택 운영기관 관리기준에 따라서 47호의 주택을 운영하려면 2개의 지원주택 운영기관으로의 변환이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원장, 국장, 생활재활교사, 사회재활교사, 상담평가원, 사무원 등이 지원주택 운영기관의 센터장, 슈퍼바이저, 주거 코디네이터로 고용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긴급위기지원을 하는 사회생활지원센터는 재활서비스나 보건소 등에 접근하기 어렵고 의료적 서비스 욕구가 높은 장애인이 단기나 장기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현재의 재활치료사, 간병인, 영양사, 안전원, 운전원이 각각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게 재배치 하며, 센터장, 행정인력, 긴급지원팀은 신규채용하는 것을 제언하였다.

(2)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 분석, 평가

①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주거모형 연구

김현승 외(2019)는 탈시설을 원하는 시설 장애인 개인단위로 접근하는 기존 탈시설 방식과 다르게 시설단위로 접근하여 기존 시설의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에 초점을 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제2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탈시설화 인식 전수조사, 시설 운영법인 및 시설장 포커스그룹인터뷰, 가족 심층인터뷰, 사례연구, 정책토론회 등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시설변환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거주시설 변환에 대한 개념, 법적근거, 기본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시설변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력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종사자 고용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에게 공급할 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주택 공급 도입을 고려해야 하며, 시설변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 추진지원단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시설변환이 실효성 있는 탈시설 정책 중 하나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시설변환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하며,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선도적 사례와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②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민소영 외(2021)의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는 2016년부터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현재 450호의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해당 연구는 지원주택 입주자 관점의 지원주택 성과 및 과제를 탐색할 뿐만 아니라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주택 운영현황, 지원주택 사업 공급자 관점의 지원주택 성과와 과제 탐색, 지원주택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지원주택의 성과로서 입주자들의 삶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주거 안정성을 포함해서 입주자 개인의 역량, 건강의 향상과 가족관계 개선, 경제생활 유지, 삶의 만족감 증가, 자기결정권 등 권리회복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탈시설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위한 지원주택의 성과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지원주택 공급 확대와 효율적 운영 · 관리를 위해 지원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주택 공급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지원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원주택 입주자 및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절차에 지자체의 책임성 확대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주택 운영 및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조했다.

③ 서울시 탈시설 정책 분석 및 제안

박현영(2018)은 2018 서울시 탈시설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제1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새롭게 발표된 제2차 추진계획을 고찰 · 제언했다. 해당 발제에 따르면, 1차 탈시설 추진계획은 전국 최초의 탈시설 정책이었으며 전국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확산시키는데 견인역할을 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철학과 원칙이 부재한 탈시설 개념과 거주시설 중심의 정책, 체험홈 이용 장애인까지 포함한 탈시설 목표인원 설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새롭게 발표된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1차 계획에서 발견되었던 문제점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소극적인 목표 탈시설 지원인원 설정과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화 하는 시설중심의 정책, 부족한 지역사회 정착지원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탈시설 정책을 위한 제언으로 탈시설을 위해 기존 거주시설 폐쇄 및 투자를 제한하고 구조를 변환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향후 거주시설 폐지를 전제로 한 기관변환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탈시설 예산이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과 같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탈시설 관련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수립과 법률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4) 소결

서울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탈시설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해온 지자체이다. 우선 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관련 서울시의 자치법규 및 조례로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탈시설 이행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제2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2018~2022)과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이행하고 있으며, 각 계획속에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탈시설의 가치 철학에 대한 요구는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이 거세던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탈시설을 주장하는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초기에는 사업화되기도 했다. 따라서 서울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거주시설의 네트워크 사업이 운영되었고, 거주시설내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강화, 거주시설 내 인권교육의 강화, 체험홈 사업 등이 시행되었다. 그중 체험홈 사업의 초창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탈시설 노력이 사업화된 결실이기도 했으며, 거주시설이 직접 주도적으로 체험홈을 운영하는 등 자립지원과 탈시설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후에는 프리웰과 충현복지관이 각각 주도하는 지원주택(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됨) 모델이 사업화 되었다. 개인명의로 계약할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에 지원주택은 주거의 안정성과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기에 지역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2021년 현재 서울에는 소위 체험홈으로 불리던 자립생활주택 64개소와 지원주택 12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실질적인 서울시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정책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과 시설변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된다.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으로는 장

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장애인 자립정착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추가급여 등이 있다. 장애인 자립지원은 집, 일자리, 복지서비스, 정착금 등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지원하는 내용과 이를 주관한 전달체계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요 핵심이다. 한편, 시설변환 정책은 장애인 입장이 아닌, 시설공간의 재활용 입장에 초점을 둔다. 제2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2018~2022)의 핵심과제로서 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남겨지는 시설공간의 활용과 기존 거주시설 인력의 재배치와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거주시설장애인들이 지원주택 등으로 이주하여 자립생활을 하고, 기존의 시설은 폐지 후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말 현재 서을시에서는 1개소가 시설들 중에서는 최초로 변환 과정 중에 있다. 이 전과정은 서울복지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인강원 주변 복지환경 기초자료 조사'에 의거하여 시설은 복지관으로 리모델링될 예정이며, 지원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거지원공간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2. 부산

1) 법 및 정책

(1) 부산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관련 자치법규 현황 및 조례 분석

부산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법규 및 조례로는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조례,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외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례들이 있으나 탈시설의 대상은 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이들의 상당수가 지적 및 자폐를 포함한 발달장애임을 감안하여 볼 때 대표적이 4가지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 조례(2020.01.01. 시행)

본 조례는 기존의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제명함과 동시에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 크게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장애인의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인을 “장애인”으로 모두 개정하였으며 탈시설, 자립생활 등의 정의를 제2조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제12조에서,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13조에서 각각 명시하고 있다.

조례의 제명과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주지할 사항으로는 위 조례는 전국 처음으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구체적으로 지자체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로 ‘포용적 복지, 지역사회중심의 탈시설 복지’라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실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제1장 총칙

본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를 밝히고 있는데 무엇보다 용어 정의에서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 주택'은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로 첫발을 디딤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사회적 지원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다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1.〉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4. "자립생활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임시주거공간을 말한다.
5. "자립생활 주택"이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탈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또는 이용 신청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장 장애인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 등

제8조에서 제11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써 시장은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과 주거생활지원, 그리고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러운 점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에 있어 언급한 내용들은 필수적인 지원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야 한다'라는 강제성 조항이 아닌 '지원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성격을 띄고 있어 지자체의 책임성 있는 모습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제8조

- 제4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기존의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지원 기관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만 언급되었던 것을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이에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설치 ·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 제13조의 2(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탈시설 준비·전환·정착·유지 등 장애인의 탈시설에 필요한 지원 총괄
> 2.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 3. 장애인 탈시설 관련 상담·교육, 단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 4. 장애인 탈시설 자립 욕구 전수조사
> 5.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
> 6.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 7.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9.05.29. 시행)**

본 조례는 기존의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로 제명함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한 장애인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등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제1조).

부산의 이러한 제명 및 개정 노력은 기존 조례를 개선 및 보완하는 등의 조문 정비과정을 통해 부산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두드러지는 개정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당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시의 책무를 강화하였고(제3조),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을 보다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을 확대하여 규정하였다(제6조, 제7조).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여 규정하였고(제17조의 2),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제18조의 2), 장애

이 인권영향평가와 장애인인권헌장에 대한 내용을 신설(제18조의 3, 제18조의 4), 장애인 인권보장의 교육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제19조)하였다.

제3조 제1항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는 차별받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는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시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5. 29.〉

7. 장애인 인권보장과 관련한 여건 변화와 전망
8.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9.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5. 29.〉

1. 장애유형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시책
2. 장애인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3. 쉼터 등 임시보호를 위한 시책
4. 장애인 인권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5.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시책
6.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등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9.〉

제17조(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9. 5. 29.〉

② 시장은 센터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5. 29.〉

제18조의3(장애인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등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장애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5. 29.]

제18조의4(장애인 인권헌장)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29.]

③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2019.01.01. 시행)

본 조례는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이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였고(제3조)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제4조)하였다. 시장이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제8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당사자와 부모단체, 교육청 등의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였다(제10조).

이를 근거로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그 규모는 매우 작으며 탈시설과 정책과 맞물려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요원한 상황이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등) ① 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시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체험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장애인, 학부모 단체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본 조례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 부재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부족으로 제대로 된 평생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제2조 정의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범위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직업능력 향상교육, 자립생활교육 등이 명시되어 있어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반 교육을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주요 골자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제4조) 하였으며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을 정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제5조)하였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제6조)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역시 장애인의 건강한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지원의 원활한 운영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교육시설 설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명기로 밝히고 있는 한계점이 노출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장애인평생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시설 등 기반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 강화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리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⑤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지자체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관련 주요 계획 및 사업

부산광역시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지원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 예로 국내 최초의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과 이를 위한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 수립, 그 중추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사업 등은 이러한 탈시설 무드를 한층 재촉하는 행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①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2019)

- 추진배경 및 근거

20대 국정전략 중,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없는 자립생활 정책 추진'으로 장애인의 탈시설 등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과 국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기조가 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자기결정권 보장, 삶의 질과 인권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

어 부산광역시는 이에 대한 충실한 대응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애인들의 '일상적이며 보편적인 삶(ordinary life)'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부산광역시는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존에 재정되었던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제명함과 동시에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 이는 향후 부산광역시가 거주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근거가 되는 동시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 이어지는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도 수립하였다.

- 본 계획의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4년(5년간)까지이며 대상은 거주시설 장애인 1,300명 및 재가 중증장애인 700여명이며 그 목표는 거주시설 장애인 300명을 탈시설 자립 지원으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6,442백만원(전액 시비)로 책정되었다.

- 주요내용

  본 계획은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을 통한 장애인을 보편적 삶의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3단계 1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 목표 및 전략은 〈그림 〉과 같다.

1 1단계('20~'21년) 탈시설 자립기반 구축(4개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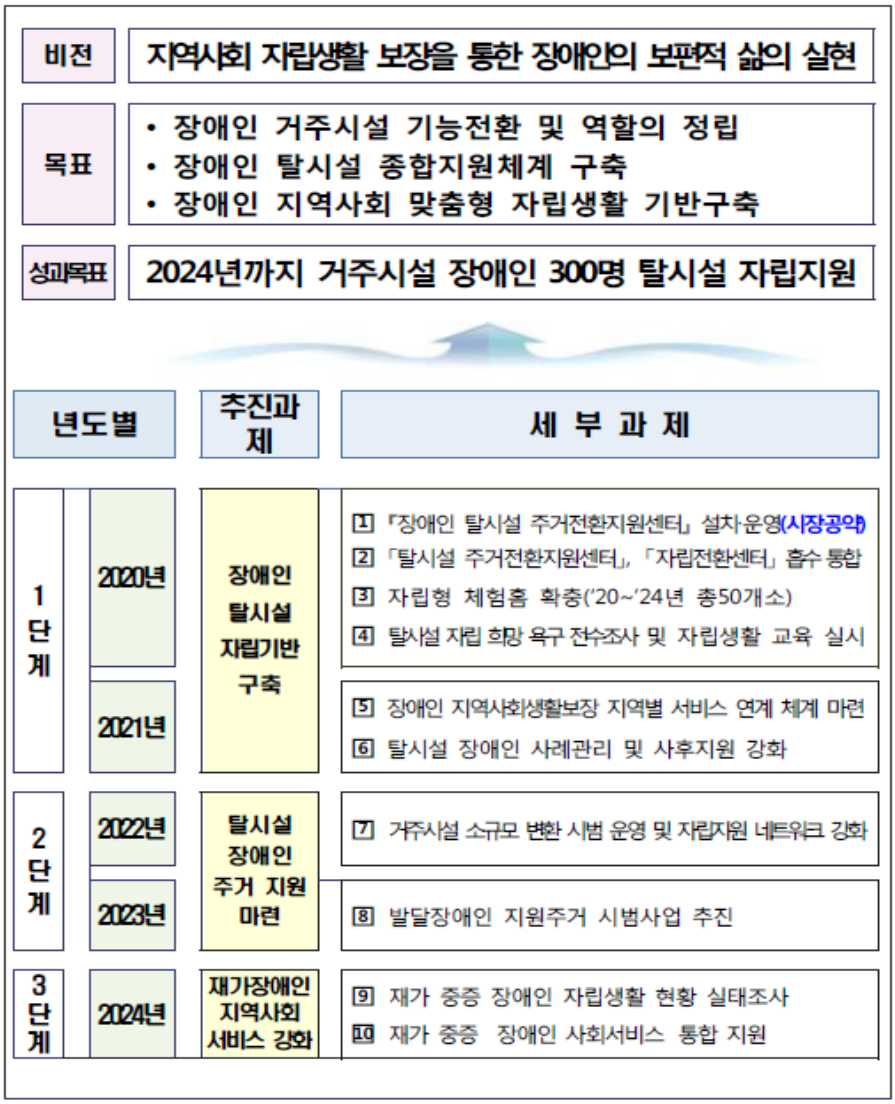
○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1개소) ⇒ 탈시설 컨트롤 타워 기능
○ 자립형 체험홈 확충(연도별 10개소, 총50개소) ⇒ 지역사회 자립프로그램 실시
○ 탈시설 자립 희망 욕구 전수 조사(시설장애인 1,000여명) ⇒ 자립 욕구 전수 조사

2 2단계('22~'23년)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마련(4개과제)

○ 장애인지역생활보장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성
○ 발달장애인 지원주거 사업 추진 ⇒ 장애특성 · 정도 고려 , 주거모형 개발 추진

3 3단계('24년~) 재가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2개과제)

○ 중증 고령 재가장애인 시설입소 예방 ⇒ 주거 · 돌봄 · 의료 등 통합 서비스 지원



[그림 Ⅱ-33] 부산광역시 탈시설 자립 지원 5개년 계획

- **관련 법률**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1.〉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4. “자립생활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임시주거공간을 말한다.
5. “자립생활 주택”이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탈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또는 이용 신청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의2(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탈시설 준비·전환·정착·유지 등 장애인의 탈시설에 필요한 지원 총괄
2.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장애인 탈시설 관련 상담·교육, 단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4. 장애인 탈시설 자립 욕구 전수조사
5.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
6.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설치 및 운영

- 추진 배경 및 근거

부산광역시는 2019년 수립한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 5개년 기본 계획」에서

2024년까지 거주시설 장애인 300명을 탈시설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단계는 20년~21년까지 탈시설 자립기반 구축으로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의 설치, 자립형 체험홈 확충, 탈시설 자립 희망 욕구 전수조사 실시 등 총 7개 과제이며 제2단계는 22년~23년,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마련으로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발달장애인 지원주거 사업 추진 외 4개 과제이다. 제3단계는 24년 이후로 재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중증고령장애인의 재가시설 입소예방 및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의2(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설치 · 운영)를 근거로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은 2020년 설치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개요

가. 근　　거 :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의2(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설치·운영)
나. 사업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정착 도모
다. 설치현황
(1)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7 상계빌딩 12층(연산5동)
(2) 시　　설 : 전용면적 170.9㎡(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3) 인　　력 : 14명(단장 1, 사업 3, 주거매니저 10)
라. 사업내용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준비·전환·정착·유지 등 지원 총괄
마. 지원예산 : 594백만원(시비)

2. 운영 현황

가. 사업대상 : 거주시설 장애인 및 재가중증장애인 2,000명
나. 주요실적
(1) 탈시설 장애인 상담 및 입주자 개별 지원 등 1,144건
(2) 자립주택 확충 및 탈시설 장애인 : 6개소 18명
(3) 종사자 및 주거매니저 역량강화 교육 연4회 실시
(4)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회, 유관기관 회의 6회 등

- 향후 기대 효과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은 2020년 설치되어 그 운영의 역사는 매우 짧으나 장애인들의 지역사회통합 및 지역 주도형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에 있어 핵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장애인 중심 지원체계 구축,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으로 안정적 생활 유지를 도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욕구와 장애 정도에 따른 종합적 서비스를 설계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 연계하고, 당사자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충분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하고자 설치 및 운영된다.

(3)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 추진배경

부산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로 '2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돌봄 문제의 보편화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였다. 이에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의 부산형 버전을 선보였다.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시설이 아닌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자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오록 하는 케어시스템 구축과 시설 및 병원 중심의 비율적 돌봄체계의 개선이 주 골자라 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ㅇ 사업기간 : 2019.09 ~ 2022.12
- ㅇ 사 업 비 : 9,714백만원(국비 4,857, 시비 3,632, 구비 1,225)
- ㅇ 추진기관 : 부산진구, 북구
- ㅇ 사업내용 : 4대 핵심인프라 구축 추진
  - **(주거지원)** 케어안심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개보수) 사업으로 지역정착 지원
  - **(건강의료)** 노인만성질환자 전담관리, 치매예방서비스 제공 지역연계를 통한 환자평가, 퇴원계획수립, 경로당 운동·건강 예방사업
  - **(요양돌봄)** 식사배달, 이동지원서비스, 퇴원환자 회복·재활서비스
  - **(서비스연계)** 구군,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사업 추진 강화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19년(1차년)	'20(2차년)	'21(3차년)	비고
합계		97.14	14.21	42.70	40.23	
예산 구분	국비	48.57	7.10	21.35	20.12	
	시비	36.32	5.69	17.08	13.55	
	구비	12.25	1.42	4.27	6.56	

- 2021년 추진실적

○ '21. 1~12월 : 보건복지부 내시액 확정통보 및 교부 2개구(부산진구, 북구) 3,103,920천원 교부

○ 추진실적

구분	부산진구	북 구
통합돌봄창구 운영	○ 돌봄창구 설치(28개소) - 동 20, 보건소 1, 복지관6, 민간보건의료시설 1 ○ 케어매니저 37명 - 사회복지20, 간호9, 민간 6, 기간제 2	○ 돌봄창구 설치(27개소) - 동 13, 보건소 1, 복지관10, 의료기관 2, 건강보험공단 1 ○ 케어매니저 31명 - 사회복지15, 간호1, 민간 13, 기간제 2
케어안심주택	○ 케어안심주택 69호 - 노인돌봄주택(장기) 41호 - 공유주택 21호 - 단기거주 7호	○ 케어안심주택 8호 - 노인돌봄주택(장기) 3호 - 단기거주 5호
연계사업	○ 6개 사업 - 고령자맞춤형 안심주택(국토부, 77억원) - 식사영양시범사업(복지부, 4.3억원) -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복지부, 1.7억원) - 안창마을커뮤니티센터(국토부, 31억원) - 호천마을온마을돌봄센터(국토부, 58억원) - 도란도란하우스(행안부,28억원)	○ 2개 사업 -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복지부,3.6억원) - 일상생활지원 바우처(복지부, 2억원)
정책대상	965명(종결341, 진행624)	919명(종결519, 진행400)

2) 장애인 인구 및 지역사회 수요 · 공급자원 현황

(1) 지역사회 수요 현황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수요 현황으로서 부산광역시 구군별 장애인 인구는 〈표 〉와 같다.

〈표 Ⅱ-21〉 부산광역시 구군별 장애인 인구 현황

시군구별	2020								
	합계			심한장애			심하지않은장애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176,293	103,880	72,413	67,332	40,677	26,655	108,961	63,203	45,758
중구	2,641	1,503	1,138	901	557	344	1,740	946	794
서구	6,590	3,848	2,742	2,550	1,569	981	4,040	2,279	1,761
동구	6,155	3,491	2,664	2,217	1,379	838	3,938	2,112	1,826
영도구	9,092	5,156	3,936	3,652	2,143	1,509	5,440	3,013	2,427
부산진구	18,567	10,968	7,599	6,717	4,126	2,591	11,850	6,842	5,008
동래구	11,695	6,971	4,724	4,391	2,707	1,684	7,304	4,264	3,040
남구	13,152	7,865	5,287	5,051	3,069	1,982	8,101	4,796	3,305
북구	16,016	9,585	6,431	6,327	3,850	2,477	9,689	5,735	3,954
해운대구	17,780	10,232	7,548	6,933	4,105	2,828	10,847	6,127	4,720
사하구	17,893	10,571	7,322	6,971	4,094	2,877	10,922	6,477	4,445
금정구	11,770	6,913	4,857	4,501	2,697	1,804	7,269	4,216	3,053
강서구	5,089	3,130	1,959	1,857	1,155	702	3,232	1,975	1,257
연제구	9,789	5,730	4,059	3,558	2,129	1,429	6,231	3,601	2,630
수영구	8,203	4,721	3,482	3,102	1,831	1,271	5,101	2,890	2,211
사상구	13,456	8,256	5,200	5,303	3,278	2,025	8,153	4,978	3,175
기장군	8,405	4,940	3,465	3,301	1,988	1,313	5,104	2,952	2,152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장애인현황, https://kosis.kr/

(2)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관련 공급자원 현황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화와 거주시설 생활인들의 탈시설이후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공급되는 지역자원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을 퇴소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적을 두었던 거주시설의 사후관리와 지원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안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공급자원으로 거주시설 현황을 살펴 볼 것이며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무엇보다 장애인자립지원센터들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① 지역사회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시 자료와 협의회 자료가 다름, 추후확인요망)

부산의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은 2021년 현재 총 18곳가 있으며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에 폭넓게 분포되어있다.

〈표 Ⅱ-22〉 부산광역시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기관명	지역	주소
영광재활원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91번길11
인덕원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877번길122
천성아동재활원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산봉로 95
성우원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톳고개로48
사회복지법인 천마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로 7번길55-10
부산라이트하우스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73
평화의집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양달로 65
신애재활원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40
새들처럼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17번길10-1
성프란치스코의 집	남구	부산 남구 용소로14번길 41 (대연동)
선아의집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9 선아원
바오로아람터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43번길 37
인혜원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394번가길 29
베데스다원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1319(대저동)
아이들의집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운봉길 135

자료출처: https://www.busan.go.kr/depart/weldisabled0301

② 지역사회 장애인재활시설 현황

시각장애인을 특수 욕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이 1곳 있으며 뇌병병장애를 위한 뇌병변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특수 욕구를 위해 운영되는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이 남구에 운영되고 있다.

〈표 Ⅱ-23〉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 현황

시설명	소재지	위탁 운영법인
부산장애인 종합복지관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15(연산동)	(재)부산복지개발원
부산시각 장애인복지관	북구 시랑로132번길 38 (구포동)	(사)부산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서구 장애인복지관	서구 보수대로 154번길36(동대신동)	(사)서구장애인협회
동구 장애인복지관	동구 망양로 748 (수정동)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오늘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함지로 79번길 6 (동삼동)	(학교법인) 고려학원
부산진구노인 장애인복지관	전포대로 300번길 6 (전포동)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충렬대로 386 (안락동)	(사)동래구 장애인협회
남구 장애인복지관	조각공원로 11번길 38 (대연동)	(사)남구 장애인협회
나사함발달 장애인복지관	남구 못골번영로 70 (대연동)	사회복지법인 나사함복지재단
뇌병변 장애인복지관	북구 학사로 246 (금곡동)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북구 장애인복지관	금곡대로 616번길 145 (금곡동)	(사)북구 장애인협회
해운대구 장애인복지관	선수촌로207번길 81 (반여동)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사하구 장애인복지관	사하로 68번길 65 (구평동)	(사)사하구 장애인협회
금정구 장애인복지관	서부로 77 (서동)	(사)금정구 장애인협회

시설명	소재지	위탁 운영법인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장대골로 75-14 (광안4동)	사회복지법인 청전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모라로 192번길 21 (모라동)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기장군 장애인복지관	정관면 병산로 42-15	사회복지법인 한성복지재단

③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의 삶의 영위하기 위해서 장애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측컨대 시설입소를 할 정도의 장애라면 일상생활의 독립적인 생활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런 경우 퇴소 후 낮에 주로 전문적 보호와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실시되는 주간보호시설 이용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에는 〈표 〉와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총 65곳 운영중이다.

〈표 Ⅱ-24〉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명	소재지
중구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중구 망양로 309
서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서구 망양로 193번길 104
서구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서구 보수대로154번길 36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동구 안창로 57
큰빛장애인주간보호센터	동구 초량중로 27
동백복지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6번길 13-5
부산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20번길 4
행복한장애인주간보호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748
동림장애인주간보호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509-1, 5층
어울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76
해냄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정길 138
상리장애인주간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63-16
임마누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490번길 55, 한창주택 106호
영도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6

시설명	소재지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454번길 16
나래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117-12
개금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0
부산데프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52번길 39, 5층
이레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19번길 32-8
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107번길 151
다솜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167번길 64 2층
사직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63번길 20-7 사직종합사회복지관 3층
늘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86
아띠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127번길 97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70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내 3층
솔라피데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160-20
남구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조각공원로 11번길 38
꿈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96번 나길 17-1
시각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함박봉로 140번길 102
부산뇌병변복지관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 246
만덕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38
북구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616번길 145
반송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1번길 15
반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226번길 13-73
운봉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200
장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27번길 19
장산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138-2, 201호
대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181-2, 3층
사하구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 68번길 65
행복나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 53, 2층
해온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139번길 49
가온누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 35-4
꿈마루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 7층
연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13-1 1층
이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9

시설명	소재지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 77
루하마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실로 23
호산나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611-3
해솔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10번길 12, 대명프라자 504호
희망학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 73번길 15
가톨릭농아인복지회주간보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29번길 59
참누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련로 43번길 54
지니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269번길 11
두드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63번길 60, 1층
수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218-4
해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로 28번길 39, 102호
사상구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192번길 21
체리동산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66번길 107
들꽃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사상로 342번길 40-6
반딧불이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135
예원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84-8
기장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병산로 42-15
교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451번길 46-13

③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현황

지역사회 내에있는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소수의 장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형태로서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독립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여가활동, 학습훈련 등 필요한 부분을 훈련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규모장애인복지시설인 공동생활 가정은 탈시설후 주간보호센터와 함께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현재 부산의 공동생활가정은 총 43곳이 운영중이다.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유형으로 지적장애와 발달장애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는 ------에서 밝힌 바와 같은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표 Ⅱ-2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현황

번호	시설명	지역	운영형태	성별	장애유형	현원
1	가톨릭사회복지회나눔터	금정구	거주형	남	지적	2
2	기장홈	전체				
3	기장홈	기장군	거주형	남	발달	3
4	꾸미네사랑방	사상구	거주형	남	발달	4
5	꾸미네집	사상구	거주형	남	발달	4
6	나사함공동생활가정	남구	교육형	혼성	지적	4
7	나사함나눔공동가정	남구	교육형	혼성	발달장애	4
8	나사함사랑공동가정	수영구	교육형	남	발달	3
9	늘채움공동생활가정	기장군	거주형	혼성	지적장애	4
10	다울장애인공동생활가정	북구	자립형	남	지적	4
11	라온제나공동생활가정	연제구	거주형	혼성	지적장애	4
12	루비홈	동구	거주형	여	지적장애	2
13	무지개홈	사하구	거주형	여	지적장애	4
14	민들레집	사하구	교육형	여	지적	4
15	밀알공동생활가정	남구	교육형	남	지적발달지체장애	3
16	밀알의집공동생활가정	사상구	교육형	혼성	지적발달장애	3
17	베데스다의집	해운대구	거주형	여	지적	5
18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도담		기타	여	모든유형	2
19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부설 다솜의 집	북구	거주형	혼성	시각	3
20	사랑나눔터공동생활가정	수영구	거주형	남	지적	3
21	진주홈 공동생활가정	사상구	거주형	남	지적.자폐성	4
22	참사랑장애인공동생활가정	수영구	교육형	남	지적	4
23	천사들의집	기장군	거주형	남	지적장애	2
24	체리공동생활가정2호	사상구	거주형	남	지적장애	4
25	체리동산공동생활가정1호	사상구	거주형	남	지적장애	4
26	체리동산공동생활가정3호	사상구	거주형	남	지적장애	4
27	편안한집	수영구	거주형	남	시각.지적	4
28	푸른집	사하구	거주형	혼성	지체지적	4
29	한빛장애인공동생활가정	수영구	거주형	남	지적장애	4
30	호산나제1그룹홈	사하구	거주형	혼성	지적장애	4

번호	시설명	지역	운영형태	성별	장애유형	현원
31	호산나제2그룹홈	사하구	거주형	남	지적발달	4
32	사랑의울타리장애인공동생활가정	해운대구	거주형	남	지적.지체	4
33	사랑의집	사하구	거주형	여	지적장애	4
34	사랑홈	금정구	거주형	여	지적발달	3
35	선우테크	연제구	기타	남		1
36	솔라피데의집	남구	교육형	혼성	지적장애	4
37	아순타의 집	부산진구	자립형	남	지적.발달장애	4
38	애덕의집	동구	거주형	여	시각장애	4
39	어울림홈	부산진구	자립형	혼성	지적	3
40	우리집공동생활가정	사하구	거주형	남	지적발달장애	4
41	주보배홈	사하구	거주형	남	지적	3

④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ndependent Living Center, IL센터)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무엇보다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이라는 장애인 탈시설화의 핵심적 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자원으로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부산광역시 내 모든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현재 총 18개소가 운영중이다.

〈표 Ⅱ-26〉 부산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현황

연번	센터명	센터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전화 및 팩스)
1	부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북구 화명신도시로 117, 801호 (화명동)	송성민	051)338-2287 (fax361-2247)
2	사랑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IS타워빌딩 505호 (재송동)	장진순	051)525-2678 (fax526-2608)
3	함세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남구 수영로 243, 5층 (대연동)	이흥호	051)627-0311 (fax611-0809)
4	해운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해운대구 세실로 64, 상가139호 (좌동)	김정미	051)704-7707 (fax704-7708)

연번	센터명	센터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전화 및 팩스)
5	사하두바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하구 하신번영로 135, 407호 (신평동)	정수철	051)294-1282 (fax980-0505)
6	사상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524, 901호(모라동)	노경수	051)312-5559 (fax313-5551)
7	금정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금정구 중앙대로 1675, 2층 (부곡동)	김호상	051)582-3334 (fax582-3234)
8	서구한빛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서구 구덕로 310, 301호 (동대신동2가, 골든캐슬)	김은정	051)253-7707 (fax253-7710)
9	부산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드타워 210호(부전동)	김정권	051)900-6670 (fax803-6678)
10	영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영도구 절영로 560 생명길교회 6층(동삼동)	박병주	051)403-9280 (fax403-9281)
11	삶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동평로405번길 97, 3층(양정동)	김철휘	051)818-3435 (fax866-0892)
12	동래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동래구 충렬대로 314 한양APT상가1층(낙민동)	김철	051)558-0717 (fax558-0737)
13	버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연제구 명륜로 2번길 7, 101-302(거제동, 삼익퓨처타워)	이소정	051)507-9601 (fax507-9603)
14	수영구 행복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수영구 무학로 51번길 11 (광안동 1층)	김동국	070-4699-2894 (fax070-4015-3124)
15	기장장애인자립 생활센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482, 3층	김성대	051)724-0332 (fax724-0325)
16	가람장애인자립 생활센터	강서구대저로255번길29(대저1동)	최연진	051)971-5933 (fax831-5933)
17	중구나눔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부산광역시중구중앙대로80	이기환	051)465-5510
18	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동구 고관로 164, 505호(일신빌딩)	김정철	051)462-9977 (fax462-9966)

⑤ 장애인 자립지원 기관별 현황 비교

부산의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 기관들 중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대학을 비교하면 〈표 〉와 같다. 각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와 설치목적 및 사업내용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의 다른 특징들을 담고 있다. 부산의 특징적인 부분은 거주시설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이 시설 혹은 가족들과 분리되어 지역사회에 자립적인 생활을 설계함에 있어 가장 첫 단계가 주거인데 이를 위해 자립생활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들이 운영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장애인 동료상담을 활용한 장애인자립생활대학은 향후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전문가 배출에 용이한 역할도 기대된다.

〈표 Ⅱ-27〉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지원 기관 비교

구 분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장애인자립생활대학
근거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3조의2(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설치·운영)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6조(장애인 동료간 상담)
최초설치	2020.11.6.	2004년	2012년	2013년
설치목적 및 내용	거주시설 장애인이 집단생활이 아닌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준비·전환·정착·유지를 위한 탈시설 지원 총괄	재가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4대기본사업 원칙 운영	재가·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안정적 자립을 위하여 일정기간(2~3년) 동안 주택 제공과 일상생활 훈련 지원	장애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동료상담가 민간자격증 3급 과정 운영 등 맞춤형 교육 지원
지원대상	거주시설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 2,000여명	재가 장애인	재가 및 거주시설 장애인 2,000여명	재가 장애인
운영방법	위탁	○구·군, 추천 ○市, 선정	○구·군, 추천 ○市, 선정	위탁
운영주체	(재)부산복지개발원	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사)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요사업	○자립주택 확충 ○탈시설 지원 및 입주 ○주거매니저 교육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일상생활 훈련	○11개 교육과정 ○장애인복지정책론, 심리상담의 이해,

구 분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장애인자립생활대학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의회 운영 등)	○ 탈시설 자립지원	○ 한글 및 학습지도 ○ 지역사회시설 이용	인간관계론 등 ○ 22명 수업중
주택유형	LH기존주택전세임대	-	LH기존주택전세임대	-
2021년 지원예산	272백만원 (시비100%)	2,507백만원 (국비40%,시비60%)	126백만원 (시비 100%)	43백만원 (시비 100%)

⑥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및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비교

장애인들이 가족과 분리되어 자립생활을 계획하거나 혹은 거주시설의 장애인이 퇴소하여 지역사회 내의 자립을 도모함에 있어 자립생활 적응훈련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은 가장 필수적 요소이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의 첫 단추로서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과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 관해 부산시는 〈표 〉와 같은 상황으로 지원하고 있다.

두 시설의 지원근거는 부산광역시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조례이며 목적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적응 훈련으로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이라는 점은 같지만 역할 및 지원내용 등은 다소 차이가 있다.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은 현재 7곳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들을 통해 운영되며 영도, 동래,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 사상등 자치구에 분포되어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은 부산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에 의해 운영되며 6곳이 설치되어 있다.

〈표 Ⅱ-28〉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과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구 분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근거	부산광역시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조례	
사업목적	자립생활 적응 훈련으로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용어정의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임시주거공간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역 할	자립희망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자립기회 제공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장애인의 퇴소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원스톱 지원

구 분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대 상	거주시설 장애인 및 재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원내용	• 주택 거주 지원(2~3년) • 일상생활 적응훈련 지원, 일자리 지원 등 •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연계	같음
운영주체	자치구 7개소 (영도,동래,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사상)	부산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연제구 연산동 소재)
지원규모	체험홈 7개소	자립생활주택 6개소 (2021년 총20개소)
2021 예산	126백만원(시비)	594백만원(시비)
	개소당 운영비 연간18백만원	• 인건비 : 201백만원 • 사업비 및 운영비 : 393백만원

3) 해당 지역 선행연구

부산에서는 최근 장애인 탈시설 관련 대표적인 연구가 3편 진행되었다. 가장 최근이라 할 수 있으며 2021년 12월 부산광역시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에서 조사를 마친 '부산 장애인 탈시설 욕구 조사'는 아직 결과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지적장애와 자폐장애의 출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거주시설장애유형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산 발달장애 자립지원 연구'가 2020년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함께 누릴 기회보장을 위한 ICT 기반 생태계 구축 연구'가 이루어져 부산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시사하고 있다.

(1) 부산 장애인 탈시설 욕구 조사(2021)

■ 조사의 취지 및 배경

부산에서는 지난 15년간 150명 이상이 거주시설에서 자립 퇴소하여 지역사회 삶을 시작하였으나 막상 이들의 삶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가 부족하여 당사자의 경험과 요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탈시설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지역 탈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전환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효율적인 탈시설 및 자립 전환 과정을 모색하여 부산시의 정책을 추진하고 부산광역시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의 사업 방향을 과학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1. 조사 개요
   1) 조사 일정: 2021년 11월 29일(월) ~ 12월 12일(일), 2주간 진행
   2) 조사 방법: 조사 면담원과의 1:1 면담 진행
      (면담 대상자 – 면담원 일정 조율하여 진행)
   3) 조사 내용: 면담 대상자 기초 자료, 자립 준비 과정, 자립 실행 과정, 자립 전환 주택(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서의 생활, 자립생활 현황, 인식과 민족도 조사, 기능 및 활동

2. 조사 대상자
   ○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모니터링 장애인 120명
   ○ 거주시설을 통하여 자립 전환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30명
   (※ 협조 요청: 천마재활원, 가온들찬빛, 동원재활원, 라온누리 등)

■ 조사 결과 및 제언

- 진행 중

(2)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2020)

■ 연구 취지 및 배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관련 법률 제정(2017)과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변화하는 사회 여건을 반영한 부산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초안이 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발달장애인 장애유형 중 유일하게 장애출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부산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2019년 기준 13,762명(지적장애인 11,847명, 자폐성장애인 1,915명)으로, 2007년(8,790명) 대비 56.6% 증가, 매년 발달장애출현율[2] 3~4%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부산시 내부자료, 2020).

발달장애는 장애의 특성상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만성적인 서비스부족과 분절된 시스템으로 가족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성인기 이후 교육단절과 서비스 절벽, 주요시설은 평균 14.5개월, 공동생활가정은 2.3년 대기를 보이고 있다.

1. 조사 개요
   1) 조사 일정:
   2) 조사 방법: 1:1 대면면접조사(CAPI)
   3) 조사 내용: 생활전반, 건강, 독립생활, 결혼, 취업, 권익, 서비스 미래가능성 등

2. 조사 대상
   ○ 부산시 거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200명
      - 성별, 장애유형별, 연령별 표본 임의할당
   ○ 발달장애인 당사자 74명
      -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나사함복지관, 동명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추천

■ 연구 결과

부모-당사자용 결과 비교

㉠ 생활전반

- 당사자가 부모에 비해 본인의 일상생활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당사자(100%)가 부모(88%)에 비해 여가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
- 원하는 여가 활동 : 부모와 당사자 모두 문화 · 예술 · 스포츠 관람 활동. TV · 컴퓨터 · 인터넷 활동은 부모(22%) 보다 당사자(37.8%)가 더 원함

㉡ 건강

-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 부모(37.5%) 〉 당사자(27%). 스스로 운동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함
- 부모와 당사자 모두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

2) 인구 천 명당 장애인 수

㉣ 독립생활

- 독립 의향 : 없음 부모(71.5%) 〉 당사자(64.9%)
- 독립 예정 연령 평균 : 부모 만30세, 당사자 만34세
- 다소 늦게 그러나 독립할 의향은 당사자가 더 높음

㉤ 취업

- 구직 의향 : 당사자(53.8%) 〉 부모(30.8%)
-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 부모와 당사자 모두 장애정도가 심해서 취업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부모는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마음이 상처를 염려한다는 답변이 높은 반면 당사자는 여러 번의 실패로 인한 실망과 건강에 대한 우려로 취업을 원치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권익

- 발달장애인 서비스 이용 시 부모는 보호자가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81%)이 매우 높으나 당사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고 응답한 비율(48.6%)이 가장 높음
- 부당 처우 경험 : 부모와 당사자 모두 보험 계약 · 보상 거부를 가장 많이 경험했고 부모는 입학 · 입소 · 이용등록 거절도 높은 비율을 보임
- 권익증진 : 부모와 당사자 모두 대국민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부모는 법률적 지원 확대, 당사자는 권익옹호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고 응답

㉦ 사회복지 서비스

-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지율 낮지만 부모(25.5%)보다 당사자(43.2%)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음. 향후 이용의향도 부모(65.5%)보다 당사자(75.7%)가 높음

㉧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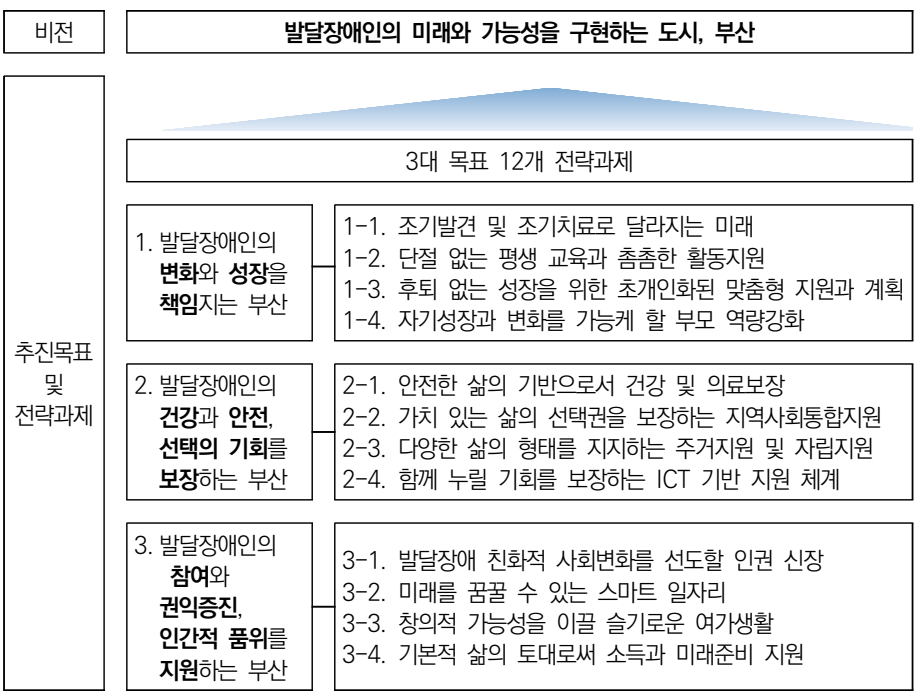
- 걱정거리로 부모와 당사자 모두 보호자 사후와 생계 자체, 건강관리가 높게 나타남. 한편, 부모는 발달장애인의 생계에 대한 걱정이 더 클 뿐만 아니라 신변

보호에 대한 걱정도 크며, 당사자는 재산/금전관리, 주거에 대한 걱정이 부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노후 돌봄시설 입소권유 의향 : 당사자와 부모 모두 '없음'이(당사자 66.2%, 부모58.5%) 가장 높음(예정 연령 당사자 56.2세, 부모 45.29세)

■ 연구의 제언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그림 〉와 같은 부산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안)을 도출하였다. 비전으로는 '발달장애인의 미래와 가능성을 구현하는 도시, 부산'으로 3대 목표와 12개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Ⅱ-45] 부산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안)

(3) 함께 누릴 기회보장을 위한 ICT 기반 생태계 구축 연구(2021)

■ 연구 취지 및 배경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사회를 표방하고 있으나, 오늘날 발달장애인은 전형적인 소외계층이며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은 물론 (평생)교육, 고용, 교통편 이용과 외출, 문화 향유, 경제활동참여, 참정권과 건강권에 이르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생애 전반에서 차별과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손상된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신체장애인과 달리, 발달장애인은 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도태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상대적으로 중증에 속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사회적, 정책적 배려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기술문명의 편리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ICT를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2020년 부산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의 후속 연구로, 추진전략 중 하나인 '함께 누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ICT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조사개요】
○ 기　　간 : 2021년 3월 ~ 10월 ▹8개월
○ 연구내용
- ICT 기술 현황 및 관련 기술 보유 기업 현황 분석과 벤치마킹
- 자립 및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생애 전환기 및 위기상황 조사와 지원방안
  - 의료/교육/고용 및 자립생활/기타 사회생활(경조사 참여 등) 및 여가활동 분야 등분야
- 부산지역에 기반한 발달장애인 '복지-교육-고용-ICT 기술 기업 생태계' 구축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함께 누릴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괜찮은 미래형 일자리 마련 및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달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마련

○ 연구방법
- 기초현황 파악 : 문헌 연구 및 자료 수집, 관계자 인터뷰
  • 발달장애인 고용 IT 업체 현황 및 기술 보유·개발 현황 등
  • 베리어프리 실감형 VR 직무실습 콘텐츠 개발 등 SW 중심 현황
- 생애전환기 및 위기상황에 관한 욕구 및 서비스 이용실태 :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인터뷰
- 관련 서비스 공급현황과 현장 이슈 : 전문가(경험자, 담당자 등) 인터뷰
- 타시도 사례 벤치마킹 : 견학방문

■ 연구 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ICT 기술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된 삶, 보편적 삶,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삶이 보장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차원, 복지시설차원, 지역사회차원, 연구개발차원, 정책차원으로 분류하여 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와 같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한 ICT 기술 개발 방향으로 첫째, 철저하게 개인별 특성과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해야 하며 둘째, 힘들여 배우거나 익히지 않아도 쉽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아동, 다른 취약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UD(Universal Design)와 BF(Barrier-Free)를 적용해 개발하는 것이며 셋째, 기존 기술을 장애인용으로 Version-Up하고 기술의 보급과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길찾기 프로그램 등 일상에서 이용되는 기술들을 발달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고, 부산디자인진흥원 등 공적 기업 지원 체계를 활용하며 사회성과채권(Social Impact Bond) 방식 등을 활용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개발된 ICT 기술을 발달장애인 보장구로 등록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해야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표 Ⅱ-29〉 ICT 지원 전후 비교

	지원 전(AS-IS)	지원 후(TO-BE)
개인차원	- 학령기 이후 교육서비스 중단과 코로나 등으로 집에만 있으면서 퇴행 - 일상생활 전반에서 타인의 도움 필요해 주돌봄자 부담 과중 - 병원 기피 등으로 건강관리(운동) 미흡, 성인병과 치과질환 등 악화 - 제한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그로 인한 제한된 사회참여 - ICT 정보 부족과 산재(散在) - 실종 등 안전관리에 어려움	- 집에서 평생학습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퇴행 방지 - 일상생활 전반에 IoT 등 지원 가능, 주돌봄자 부담 경감으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유지 - 집에서도 전문가 가이드로 건강증진, 원격진료 및 치료 접근성 강화 - AI 언어학습과 개인용 AAC지원으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범위 확대, 활발한 사회참여 가능 - 최신정보의 집적으로 실생활에 편의증진 - 실종 예방 및 안전 확보
복지시설 차원	- 지역사회 자립 및 거주시설 내 1인 개인 생활 곤란 - 인력부족으로 개별화된 서비스 곤란, 그로 인한 중증장애인 소외 - 외출 곤란 - 모니터링 등 종사자 업무부담 과중	- IoT 등으로 지역사회 자립 및 시설 내 1인 생활 가능 - ICT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초개별화된 서비스 가능, 개별화된 중증장애인 케어 가능 - 혼자서도 외출 가능 - 종사자 업무효율 증진
지역사회 차원	- 키오스크 등 복잡한 기기 이용 불가 - 쉬운 정보 부족으로 시설 이용 및 이동권 제한 - 문화·체육·여가·운동시설 이용 곤란 - 학교, 병원, 관공서 등 필수공간 접근 및 적응 어려움	-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 쉬운 정보 제공으로 시설 이용 및 이동의 자유 확대 - 문화·체육·여가·운동시설 활발하게 이용 - 학교, 병원, 관공서 등 필수공간에 대한 UD 및 BF 환경 조성
연구개발 차원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부족 - 제도적 지원 부족 - 데이터 구축 못함	- 원활한 정보 입수로 기술 개발 용이 - 테스트베드 등 제도적 지원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 빅데이터 구축 개시
정책차원	- 기술 개발과 이용, 양쪽 모두 높은 비용 부담 - (키오스크 등) 있어도 이용 못함	- 개인용 AAC 등을 발달장애인 보장구로 채택, 수요자 경제적 부담 경감, 개발비용의 정책적 지원 - 누구나 쉽게 키오스크, 스마트폰 이용

4) 소결

부산광역시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여건과 토대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소결을 맺게 되었다.

첫째, 부산광역시 최근 10년간 장애인 인권보장, 발달장애인 지원, 탈시설 및 자립생활 보장,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등 다각적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적이며 보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모습들을 찾을 수 있었다. 민선 7기에서는 이러한 핵심 정책들을 공약화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지역사회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새롭게 제정하거나 기존의 조례를 재정비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둘째, 부산광역시는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에 선정되어 부산진구와 북구가 진행중이며 이는 장애인 탈시설화로 지역사회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도 향후 연계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구와 이들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지역사회 공급자원을 살펴 보았을 때 자치구별 거주시설 및 장애인복지관은 확충되어 있었으며 소규모 지역사회 보호시설이라 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역시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운영되고 탈시설 자립지원에 역할을 하게 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 역시 자치구별 1개소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자원이 존재한다고 해서 적절한 지원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확답할 수 없듯이 향후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이들의 자원들이 서로 연계하여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각자 잘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탈시설 관련 진행된 연구들을 분석하였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더욱 소외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일상적인 삶, 기회보장을 위한 연구에서부터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들의 삶을 통합적으로 조사한 연구까지 부산의 깊은 관심을 읽을 수 있다.

3. 충청남도

충청남도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탈시설과 관련한 환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의 탈시설 · 자립생활과 관련한 법규, 정책 등을 파악하고, 등록 장애인현황, 거주시설 현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 및 정책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탈시설 · 자립생활과 관련한 법규와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탈시설·자립생활 관련 법규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의 충청남도의 장애인 관련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과 함께 장애인 직업과 관련된 조례가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표준사업장 지원,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등의 조례가 있으며, 장애인 가족지원, 안전취약계층지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평생교육,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의 조례가 있다. 그리고 탈시설 · 자립생활과 관련한 조례로는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아직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관련 조례는 없다

①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2007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2020년 4월 1일에 전부 개정을 하였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다. 이 조례 제2장에는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4장에는 지역사회전환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에는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담고 있으며, 제5조에는 자립생활 지원신청에 관한 내용, 제6조에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제7조에는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퇴소 및 전환지원 욕구
2. 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②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도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의 세부항목과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장애인 및 보호자는 도지사에게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자립생활 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급여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9. 그 밖에 장애인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을 할 경우, 재가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도지사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 제4장 지역사회전환지원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장에는 제11조 지역사회와의 관계, 제12조 자립생활교육, 제13조 시설퇴소자 지원, 제14조 자립생활체험홈, 제15조 자립생활주택운영을 담아 장애인의 지역사회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제11조(지역사회와의 관계)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도지사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애인과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지원할 수 있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제14조(자립생활체험홈 운영) 도지사는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립생활주택 운영) 도지사는 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준비하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7년 09월 20일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2020년 4월 1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제8조 지원사업, 제17조, 제18조 평생교육지원, 제19조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 설치, 제22조 협력체계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주시설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해서는

-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담고 있다.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0.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 방지·학대금지 등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
11.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12.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절차를 거쳐 발달장애인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을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9조(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하는 충청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3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시·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시·군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시·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 지원센터는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시·군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군 지원센터는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 지원센터 및 시·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충청남도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3년 07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2014년, 2015년, 2020년 03월 10일에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 실태조사, 제8조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의 설치·운영, 제11조 인권보장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주시설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해서는

-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도의 실정에 적합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관련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서 장애인 및 그 관련자(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참여의 보장
2. 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서 당사자의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의 충분한 고려
3. 도민(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도의 계획 및 정책 전반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의 기회 제공
② 장애인 등을 비롯하여 모든 도민, 도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각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관련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해야 한다

(2) 아산시 탈시설·자립생활 관련 법규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의 충청남도 아산시의 장애인 관련 조례는 「아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께 장애인 소득과 관련된 조례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의 조례가 있으며, 「아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와 함께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 휠체어 수리지원 등 접근권과 관련한 조례가 있다. 또한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와 함께 장애인 임산부 공무원 편의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등 가족지원조례 및 문화예술활동, 장애인복지관 설치, 장애인복지위원회, 평생교육, 주거약자 주택 개량지원 등 장애인 관련 조례가 있다. 그리고 탈시설 · 자립생활과 관련한 조례로는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아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충청남도와 마찬가지로 아직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관련 조례는 없다.

①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2008년 05월 09일에 제정되었으며 2019년 11월, 2020년 09월에 일부 개정을 하였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 제2장에는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3장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에는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관련 시설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립생활 계획수립, 지원신청,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아산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신청) ① 아산시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법적 후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장애인의 동의서를 받아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사경비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재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조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1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센터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등록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활동지원사의 활동시간에 준하는 활동비를 시장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한다.
④ 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아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1년 12월 15일에 제정되었으며 2012년, 2015년, 2016년, 2021년에 일부 혹은 전부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제5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장에는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아산시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시책 방향
2. 국가 및 충청남도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과 연계방안

3.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제7조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 단체 활동 지원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4.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고용·직업훈련 지원 및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7.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8.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아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아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2012년 07월 16일에 제정되었으며 2015년, 2016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제도와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제4조에는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제5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시장의 책무에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방지와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는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아산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정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 기본계획 수립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정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 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충청남도 탈시설·자립생활 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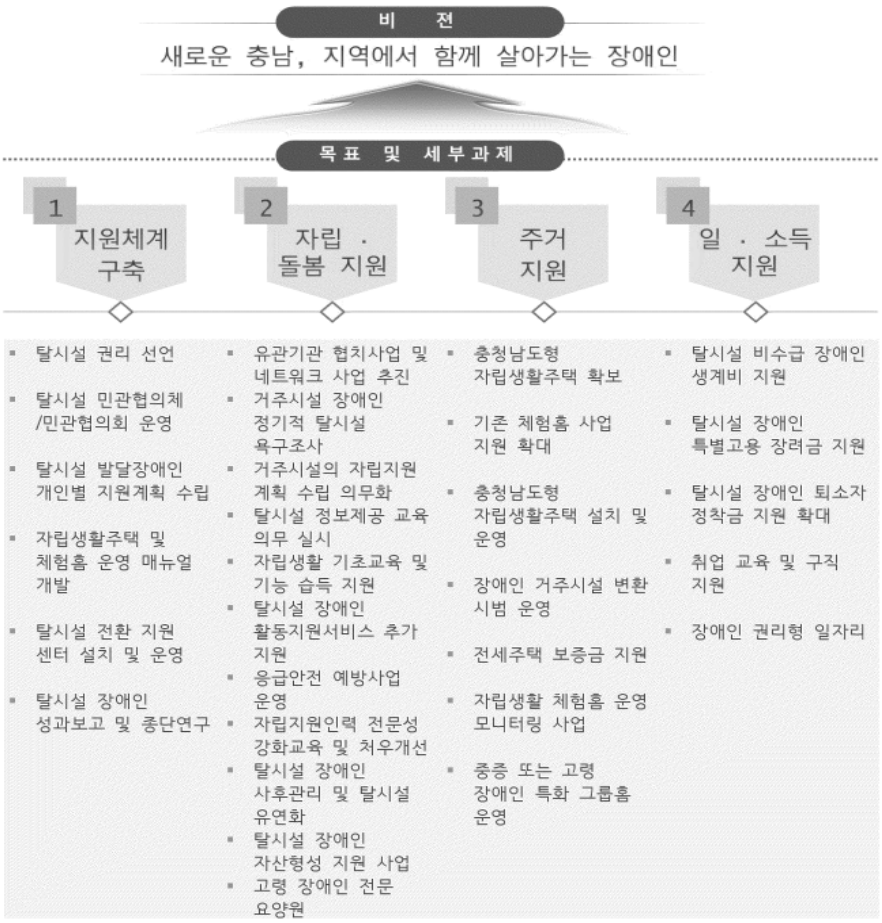
충청남도의 장애인 탈시설 · 자립생활 관련 정책은 제3차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18~2022)과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20~2024) 그리고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연구(2022~2026)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연구(2022~2026)

중앙정부의 탈시설 커뮤니티케어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및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탈시설화 계획 수립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아직 공식적인 충청남도 탈시설 5개년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이 연구를 기본으로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 자립생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내 · 외 사례의 문헌연구, 충청남도 지역사회 현황분석, 설문조사, FGI, AHP를 통해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비전 및 목표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충남,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이라는 비전으로 지원체계구축, 자립 · 돌봄 지원, 주거 지원, 일 · 소득지원의 4가지 목표와 2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지원체계구축에는 탈시설 권리 선언 등 6개 세부과제, 자립 · 돌봄 지원에는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 조사 등 11개 세부과제, 주거 지원에는 충청남도형 자립생활주택 확보 등 7개 세부과제, 일 · 소득지원에는 취업 교육 및 구직 지원 등 5개 세부과제가 있다.



-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1단계는 2022~2023년까지, 2단계는 2024~2025년까지, 3단계는 2026년까지로 되어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세부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단계	구분	세부과제	담당 부서
1단계	지원체계 구축	1-1 탈시설 권리 선언	장애인복지과
		1-2 탈시설 민관협의체/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보건정책과
		1-3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과
		1-4 탈시설 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장애인복지과
	자립 및 돌봄 지원	1-5 관계기관 협치 사업 및 네트워크 사업추진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보건정책과
		1-6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장애인복지과
		1-7 거주시설 자립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	장애인복지과
		1-8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장애인복지과
		1-9 자립생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장애인복지과
	주거지원	1-10 충청남도 형 자립생활 주택 확보(도비 100%)	장애인복지과
		1-11 기존 체험홈 사업지원 확대	장애인복지과
2단계	지원체계 구축	2-1 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 운영 매뉴얼 개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과
	자립 및 돌봄 지원	2-2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장애인복지과
		2-3 응급안전 예방사업 운영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단계	구분	세부과제	담당 부서
		2-4 탈시설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인복지과
	주거지원	2-5 충청남도 자립생활주택 설치 및 운영(도비 100%)	장애인복지과
		2-6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장애인복지과
	일·소득 지원	2-7 탈시설 비급여 장애인 생계비 지원	사회복지과
		2-8 탈시설 장애인 특별고용 장려금 지원	장애인복지과
3단계	지원체계 구축	3-1 탈시설 장애인 성과보고 및 종단연구	장애인복지과
	자립 및 돌봄지원	3-2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교육 및 처우개선	사회복지과
		3-3 탈시설 장애인 사후관리 및 탈시설 유연화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과
		3-4 고령 장애인 전문요양원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주거지원	3-5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사회복지과
		3-6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모니터링 사업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과
		3-7 중증 또는 고령장애인 특화 그룹홈운영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일·소득 지원	3-8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확대	사회복지과
		3-9 취업 교육 및 구직 지원	장애인복지과
		3-10 장애인 권리형 일자리	장애인복지과

② 제3차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충청남도는 2017년 12월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및 경제적 빈곤퇴치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 확보와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실현을 위한 충남 형 장애인복지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차 5개년 계획의 성과분석, 장애인 관련 현황 및 복지여건 진단,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 정책 비전, 분야별 세부계획 그리고 계획의 집행과 연차별 예산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분야별 세부계획에는 생활편의 기반조성,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직업재활 및 자립 지원, 장애인권리 강화를 담고 있다. 이 5개년 계획 중에 탈시설 · 자립생활 관련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지원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차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과 정책 비전은 다음과 같다.

◇ **생활편의 기반조성 ⇨ 이동지원, 정보접근지원, 편의지원 등**
◇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 건강권 지원, 인프라 구축 등**
◇ **직업재활 및 자립지원 ⇨ 생활수준 향상, 일자리 지원 등**
◇ **장애인 권리 보장 ⇨ 장애인 인권보호, 발달장애인 지원 등**

비 전	**충남형 장애인 사회참여 복지환경 구현**
정 책 목 적	① 이동,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36개 과제) ②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시설 인프라 구축(32개 과제) ③ 생활수준 향상 및 일자리 지원체계 마련(21개 과제) ④ 장애인 인권향상 및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15개 과제)
정 책 과 제	**4개 분야 104개 과제 11,078억원** (국비 5,702 도비 1,833 시·군비 3,543)

분야별 세부계획은 생활편의 기반조성(36),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32), 직업재활 및 자립지원(21), 장애인권리 강화(15)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 세부계획 중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 자립생활과 관련된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구당 1,200만 원~5,000만 원 범위 내에 지원할 계획이다.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이 계획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함으로 개별여건에 따라 월 48~391 시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2022년 까지 11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지원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알선 지원으로 장애인의 주거 안정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공급 안내, 접수, 선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 14시간 이내 575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반노동 시장으로 전이를 이한 실무능력습득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 5일 20시간 공공기관에 일반형 일자리를 128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직무지원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에 배치하여 직무능력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5일 25시간 22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운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등이 있다. 다만 탈시설과 관련된 직접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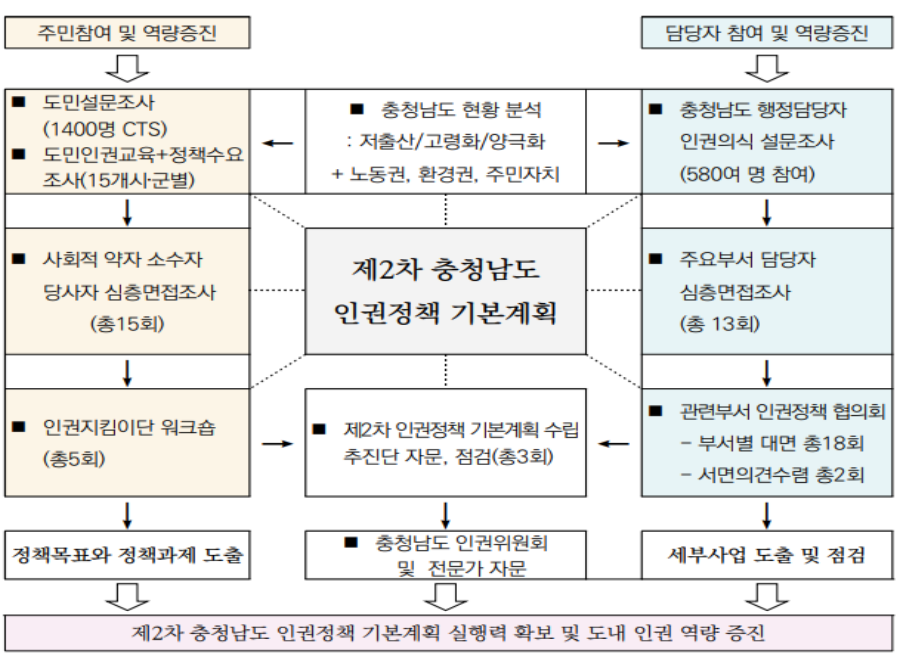
③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충청남도는 2019년 12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제6조에 의해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 분야별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등을 위하여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범위는 제1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 상황 분석 및 평가, 인권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축 등이다. 분야별로 아동·청소년, 노인 정책, 여성 정책, 장애인 정책 등이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장애인 정책 전개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인간다운 삶 보장, 이동권 보장, 권리구제제도, 주간 돌봄 지원, 편의 증진,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 중에서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자립생활에 대한 당사자 욕구조사, 지역사회 속 삶 보장 제반 인프라 구축' 거주시설기관 기능전환 콘텐츠 마련'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의 확충과 활동지원 확대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전략은 다음과 같다.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전략】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구제제도 강화, 장애인 주간 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편의 증진, 장애인의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 보장이다. 이 가운데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 자립 생활 관련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립생활에 대한 당사자 욕구조사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생활에 대한 정보를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고 효과 및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기 위하여 2024년까지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욕구조사를 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속 삶 보장 제반 인프라 구축

충남은 다른 광역지자체와 달리 아직까지 탈시설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5년 안에 전략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2020년 상반기 탈시설 자립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는 체험 홈과 자립생활주택 지원 정책에 집중하여 자립훈련과 주택에 대한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표는 연도별 추진 사항이다.

연도	주요추진사항
2020	•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 지원
2021	•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 지원
2022	•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 지원
2023	•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지원
2024	•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 지원 등의 인프라 외의 지역사회에서의 평등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 개시 (예시. 서울시 탈시설 협치 연구 사업 등 각 단위와 모여 프로세스와 지향 논의, 공감대 확산)

- 거주시설기관 기능전환 콘텐츠 마련

탈시설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시설기관을 대상으로 시설기관의 기능전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시설기관이 탈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 장애인 거주자의 탈시설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을 최소화할

www.koo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시설기관이 함께 시설기관 기능전환의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현실적인 대한을 모색하고 시설종사자의 직업전환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생활에 대한 당사자 욕구조사, 지역사회 속 삶 보장 제반 인프라 구축, 시설기관 기능전환 콘텐츠 마련에 소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세부 사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8-1-1】 자립생활에 대한 당사자 욕구조사 실시	전체예산	30		-		-		-		-	
	예산구성		%		%		%		%		%
	도비	30	100								
【8-1-2】 지역사회 속 삶 보장 제반인프라 구축	전체예산	300		300		300		300		300	
	예산구성		%		%		%		%		%
	도비	150	50	150	50	150	50	150	50	150	50
	사군비	150	50	150	50	150	50	150	50	150	50
【8-1-3】 시설기관 기능전환 컨텐츠 마련	-	-	-	-	-	-	-	-	-	-	-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충과 활동지원 확대

성인발달장애인이 주간에 활동할 공간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애인과 가족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확충과 활동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세부 사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8-4-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과 활동지원 확대	전체예산	1,375		1,375		1,475		5,250		5,512	
	예산구성		%		%		%		%		%
	국비										
	도비	275	20	275	20	291	20	1,050	20	1,102	20
	사군비	1,100	80	1,100	80	1,166	80	4,200	80	4,410	80

이외에도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저상버스 운영실태조사, 권리구제 인프라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 점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 아산시 탈시설·자립생활 관련 정책

아산시의 장애인 탈시설 · 자립생활 관련 정책을 찾아보기 위하여 2020 아산시 인권의식 실태조사보고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그리고 2021년 아산시 본예산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산시의 장애인 탈시설 · 자립생활 관련 정책은 매우 부족했으나 다음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아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시행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추진전략 1영역은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 확대', 추진전략 2영역은 '포용적 복지를 위한 취약 · 위기 계층 돌봄 · 안전망 구축', 추진전략 3영역으로 '주민참여 확대 및 홍보강화', 추진전략 4영역은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장애인 분야는 추진전략 2영역에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과 추진전략 3영역에 찾아가는 장애인 맞춤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다.

또한, 아산시 사회보장 관련 전체 사업 목록에서 장애인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주간 보호센터운영,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등의 사업내용이 보인다. 다만 탈시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② 2021년 아산시 본예산

아산시 장애인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2021년 본예산에서 찾아보았다. 2021년 아산시 본예산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들은 중증장애인연금, 월세 거주 장애인주거비용 지원, 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주간 보호센터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등이 있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 장애인 인구 및 지역사회 수요 · 공급자원 현황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등록 장애인현황 및 탈시설 · 자립생활관련 기관 등 공급자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등록 장애인현황

1. 충청남도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명, %)

장애유형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남		여		합계	
합계	49,523	100	85,307	100	77,102	100	57,728	100	134,830	100
지체	12,314	24.87	49,982	58.59	36,003	46.70	26,293	45.55	62,296	46.20
시각	2,118	4.28	10,056	11.79	7,244	9.40	4,930	8.54	12,174	9.03
청각	5,140	10.38	17,792	20.86	11,849	15.37	11,083	19.20	22,932	17.01
언어	511	1.03	566	0.66	753	0.98	324	0.56	1,077	0.80
지적	12,486	25.21	0	0.00	7,380	9.57	5,106	8.84	12,486	9.26
뇌병변	6,421	12.97	4,468	5.24	6,124	7.94	4,765	8.25	10,889	8.08
자폐성	1,175	2.37	0	0.00	984	1.28	191	0.33	1,175	0.87
정신	5,355	10.81	7	0.01	2,788	3.62	2,574	4.46	5,362	3.98
신장	3,040	6.14	902	1.06	2,331	3.02	1,611	2.79	3,942	2.92
심장	153	0.31	47	0.06	117	0.15	83	0.14	200	0.15
호흡기	542	1.09	12	0.01	435	0.56	119	0.21	554	0.41
간	40	0.08	509	0.60	386	0.50	163	0.28	549	0.41
안면	69	0.14	61	0.07	79	0.10	51	0.09	130	0.10
장루·요루	74	0.15	710	0.83	468	0.61	316	0.55	784	0.58
뇌전증	85	0.17	195	0.23	161	0.21	119	0.21	280	0.21

※ 출처: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재구성. (2021년 11월 기준)

2. 충청남도 시군별 장애정도별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명, %)

장애정도	시군구	남		여		합계	
심한 장애	합계	29,328	100	20,195	100	49,523	100
	천안 동남구	2,880	9.82	2,045	10.13	4,925	9.94
	천안 서북구	3,387	11.55	2,314	11.46	5,701	11.51
	공주시	2,132	7.27	1,428	7.07	3,560	7.19
	보령시	2,111	7.20	1,302	6.45	3,413	6.89
	아산시	3,612	12.32	2,407	11.92	6,019	12.15
	서산시	2,084	7.11	1,473	7.29	3,557	7.18
	논산시	2,460	8.39	1,772	8.77	4,232	8.55
	계룡시	344	1.17	254	1.26	598	1.21
	당진시	2,031	6.93	1,470	7.28	3,501	7.07
	금산군	990	3.38	639	3.16	1,629	3.29
	부여군	1,542	5.26	1,043	5.16	2,585	5.22
	서천군	1,092	3.72	817	4.05	1,909	3.85
	청양군	607	2.07	451	2.23	1,058	2.14
	홍성군	1,592	5.43	1,054	5.22	2,646	5.34
	예산군	1,407	4.80	1,034	5.12	2,441	4.93
	태안군	1,057	3.60	692	3.43	1,749	3.53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47,774	100	37,533	100	85,307	100
	천안 동남구	4,735	9.91	3,168	8.44	7,903	9.26
	천안 서북구	5,300	11.09	3,405	9.07	8,705	10.20
	공주시	2,837	5.94	2,345	6.25	5,182	6.07
	보령시	2,947	6.17	2,422	6.45	5,369	6.29
	아산시	5,838	12.22	4,147	11.05	9,985	11.70
	서산시	3,748	7.85	3,013	8.03	6,761	7.93
	논산시	3,410	7.14	2,877	7.67	6,287	7.37
	계룡시	582	1.22	483	1.29	1,065	1.25
	당진시	4,129	8.64	2,854	7.60	6,983	8.19
	금산군	1,610	3.37	1,533	4.08	3,143	3.68
	부여군	2,347	4.91	2,115	5.64	4,462	5.23
	서천군	1,895	3.97	1,810	4.82	3,705	4.34

장애정도	시군구	남		여		합계	
	청양군	1,173	2.46	1,094	2.91	2,267	2.66
	홍성군	2,619	5.48	2,235	5.95	4,854	5.69
	예산군	2,681	5.61	2,410	6.42	5,091	5.97
	태안군	1,923	4.03	1,622	4.32	3,545	4.16

※ 출처: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재구성. (2021년 11월 기준)

(2) 아산시 등록장애인현황

3. 아산시 등록 장애인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명, %)

장애유형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남		여		합계	
합계	6,019	100	9,985	100	9,450	100	6,554	100	16,004	100
지체	1,350	22.43	5,818	58.27	4,296	45.46	2,872	43.82	7,168	44.79
시각	242	4.02	1,362	13.64	985	10.42	619	9.44	1,604	10.02
청각	638	10.60	1,787	17.90	1,285	13.60	1,140	17.39	2,425	15.15
언어	74	1.23	101	1.01	130	1.38	45	0.69	175	1.09
지적	1,585	26.33	0	0	967	10.23	618	9.43	1,585	9.90
뇌병변	760	12.63	594	5.95	768	8.13	586	8.94	1,354	8.46
자폐성	178	2.96	0	0	146	1.54	32	0.49	178	1.11
정신	624	10.37	1	0.01	322	3.41	303	4.62	625	3.91
신장	448	7.44	130	1.30	335	3.54	243	3.71	578	3.61
심장	22	0.37	7	0.07	18	0.19	11	0.17	29	0.18
호흡기	70	1.16	2	0.02	60	0.63	12	0.18	72	0.45
간	5	0.08	58	0.58	45	0.48	18	0.27	63	0.39
안면	5	0.08	12	0.12	12	0.13	5	0.08	17	0.11
장루·요루	9	0.15	87	0.87	61	0.65	35	0.53	96	0.60
뇌전증	9	0.15	26	0.26	20	0.21	15	0.23	35	0.22

※ 출처: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재구성. (2021년 11월 기준)

(3) 충청남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표 Ⅱ-30〉 충청남도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시설 수, 입소자 수, 종사자 수 현황(2020년 12월 기준)

(단위: 개, 명)

유형	지역	시설수	입소자		종사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지적장애인시설	충청남도	17	1,029	909	629	55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충청남도	17	710	686	497	469
단기거주시설	충청남도	7	96	76	54	40
공동생활가정	충청남도	15	78	60	25	22

※ 출처: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보건복지부(2021. 7) 자료 재구성.

〈표 Ⅱ-31〉 충청남도 시군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2020년 12월 기준)

(단위: 개)

지역	지적장애인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단기 거주시설	공동 생활가정
충청남도	17	17	7	15
천안시	4	2	2	2
공주시	2	3	1	2
보령시	2	1		1
아산시	4	1		1
서산시	1	1	2	1
논산시		5		
계룡시			1	
당진시	1			4
금산군	1		1	2
부여군	1			
서천군	1	1		1
청양군				
홍성군		1		1
예산군		1		
태안군		1		

※ 출처: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보건복지부(2021. 7) 자료 재구성.

(4) 아산시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표 Ⅱ-32〉 아산시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시설 수, 입소자 수, 종사자 수 현황(2020년 12월 기준)

(단위: 개, 명)

유형	지역	시설수	입소자		종사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지적장애인시설	충청남도	17	1,029	909	629	554
	아산시	4	154	133	77	7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충청남도	17	710	686	497	469
	아산시	1	30	29	27	25
단기거주시설	충청남도	7	96	76	54	40
	아산시	0	0	0	0	0
공동생활가정	충청남도	15	78	60	25	22
	아산시	1	4	4	1	1

※ 출처: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보건복지부(2021. 7) 자료 재구성.

〈표 Ⅱ-33〉 아산시 장애인 거주시설

시군구	유형	시설명	입소자		종사자		설치신고일	법인명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아산	지적	메종드로제	80	64	40	37	1996.09.20	
아산	중증	성모즐거운집	30	29	27	25	2008.07.10	
아산	지적	온유한집	25	25	14	14	2013.02.04	
아산	지적	사랑의 집 에덴	29	24	12	12	2005.12.02	
아산	지적	아가페	20	20	11	11	2013.12.05	
아산	공동생활가정	사랑터	4	4	1	1	2009.06.02	
아산	정신	파랑새둥지	133				1987.09.17	
아산	정신	보금자리	35				2003.10.07	
아산	정신	가온누리	15				2012.07.23	

※ 출처: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보건복지부(2021. 7) 자료 재구성.

(5) 충청남도 탈시설·자립생활 관련 공급자원 현황

① 충청남도 시군별 장애인 이용기관

〈표 Ⅱ-34〉 충청남도 시군별 장애인 이용기관 현황(2020년 12월 기준)

(단위: 개)

지역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 지원센터	점자도서관
충청남도	16	16	15	15	1
천안시	3	8	2	2	1
공주시	2	1	1	1	
보령시	1	1	1	1	
아산시	1	3	1	1	
서산시	1		1	1	
논산시	1	1	1	1	
계룡시		1			
당진시	1	1	1	1	
금산군			1	1	
부여군	1		1	1	
서천군	1		1	1	
청양군	1		1	1	
홍성군	1		1	1	
예산군	1		1	1	
태안군	1		1	1	

※ 출처: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보건복지부(2021. 7) 자료 재구성.

② 충청남도 시군별 직업재활 시설

〈표 Ⅱ-35〉 충청남도 시군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현황(2020년 12월 기준)

(단위: 개, 명)

유형	시설수	입소자		종사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21	190	162	524	69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	-	0	8

※ 출처: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보건복지부(2021. 7) 자료 재구성.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표 Ⅱ-36〉 충청남도 시군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2020년 12월 기준)

(단위: 개)

지역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충청남도	21	1
천안시	3	
공주시	2	1
보령시	2	
아산시	2	
서산시	3	
논산시		
계룡시	1	
당진시	2	
금산군	1	
부여군		
서천군	1	
청양군	1	
홍성군	1	
예산군	1	
태안군	1	

※ 출처: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보건복지부(2021. 7) 자료 재구성.

③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④ 충청남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청남도는 자립생활센터가 총 8개소가 있으며, 천안에 2개소가 있고, 15개 시군 중 8개의 시군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아직 없다. 특히 천안 아산 등 북부지역과 홍성 보령 예산 등 서부지역에 대부분의 자립생활센터가 있는 반면, 금산, 부여, 공주, 계룡 등 남부지역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연번	시군	시설/기관명	단체장	주소
1	논산	놀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주헌	논산시 부적면
2	당진	당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김평호	당진시청2로
3	보령	보령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규승	보령시 터미널길 7
4	서산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김경수	충청남도 서산시 율지7로
5	아산	아산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남철	아산시 온천대로 1496
6	천안	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선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	천안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인자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7,
8	홍성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연경	홍성 홍성읍 법원로 47번 길

(출처 : 장애인개발원. 2021.12.06.)

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충청남도는 도립장애인복지관 3개소와 시군 장애인복지관 12개소가 있다. 공주와 보령의 경우와 천안의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우가 도립장애인복지관이며 천안은 장애인복지관 2개소와 시각장애인복지관 1개소 등 총 3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다. 계룡시와 금산군은 장애인복지관이 아직 없다.

연번	시군	시설/기관명	단체장	주소
1	공주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백낙흥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747
2	논산	논산시사람꽃복지관	김남흥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1546번길 38
3	당진	당진시장애인복지관	정춘진	당진시 시청1로 38 (수청동)
4	보령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김찬수	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 404
5	부여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박종화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816
6	서산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이기남	서산시 호수공원13로 9 (예천동)
7	서천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김완기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302번길
8	아산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이창호	아산시 곡교천로27번길 12
9	예산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임덕규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
10	천안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박재흥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13
11	천안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영철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 2길 51
12	천안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추승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359
13	청양	충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청양분관	김찬수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38

연번	시군	시설/기관명	단체장	주소
14	태안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이종만	태안군 태안읍 군청6길 30
15	홍성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복천규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33번길 17

(출처 : 장애인개발원. 2021.12.06.)

③ 충청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연번	시/군	시설명	법인명	개소일	전담 인력	이용자수			
						정원	현원	누적이용인원	자립 인원
1	천안시	천안죽전원	(사)삼화복지재단	10.10월	-	4	4	8	-
2	천안시	천안죽전원	(사)삼화복지재단	17.04월	-	4	4	4	-
3	천안시	등대의집	(사)예맥재단	16.03월	-	3	3	16	1
4	천안시	등대의집	(사)예맥재단	12.01월	-	3	3	32	2
5	공주시	명주원	(사)명주원	12.11월	-	4	4	8	-
6	공주시	동곡요양원	(사)명주원	18.03월	2	4	4	148	5
7	공주시	소망공동체	(사)소망공동체	11.11월	1	4	4	12	-
8	공주시	우리복지원	(사)삼휘복지재단	17.10월	-	4	4	40	-
9	공주시	누리재활원	(사)삼휘복지재단	11.05월	-	4	4	40	-
10	보령시	충남정심원	(사)보령학사	10.11월 11.03월	2	6	6	40	-
11	아산시	메종드로제	(사)석촌재단	12.01월	-	4	4	28	1
12	아산시	메종드로제	(사)석촌재단	12.01월	1	2	2	21	2
13	서산시	서림요양원	(사)서림복지원	17.01월	-	4	4	4	-
14	서산시	서림케어드림	(사)서림복지원	13.01월	1	4	4	4	-
15	금산군	다솜	(사)다사랑	17.01월	-	4	4	4	-
계					7	58	58	433	11

④ 발달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관련 기관

연번	시설/기관명	설립연도	주소
1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201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2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 14로
3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08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17
4	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201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5	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202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

(6) 아산시 탈시설·자립생활 관련 공급자원 현황

① 아산지 장애인 이용기관 현황

〈표 Ⅱ-37〉 아산시 장애인 이용기관 현황(2020년 12월 기준)

(단위: 개)

지역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 지원센터	점자도서관
충청남도	16	16	15	15	1
아산시	1	3	1	1	

※ 출처: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보건복지부(2021. 7) 자료 재구성.

〈표 Ⅱ-38〉 아산시 장애인 이용기관 현황(2020년 12월 기준)

지역	개수	법인명	시설명	설치신고일	정원
장애인복지관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장애인복지관	1999-10-21	
주간보호시설	3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2003-03-02	20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	아산시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	2016-07-18	12
		(사)좋은복지	㈜좋은복지주간보호센터	2017-08-22	12
수어통역센터	1	사)한국농아인협회	아산시수어통역센타	2005-03-02	
생활이동지원 센터	1	충남시각장애인 연합회	아산시생활이동지원센터	2005-06-02	
점자도서관	0				

※ 출처: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보건복지부(2021. 7) 자료 재구성.

② 아산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표 Ⅱ-39〉 아산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2020년 12월 기준)

지역	개수	시설명	종사자		근로장애인		시설설치일	법인명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2	꿈꾸는 나무	8	8		29	2008-06-25	사단법인 충청남도 장애인부모회
		성모신나는일터	10	9		43	2005-01-25	사회복지법인 석촌재단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	-	-	-	-	-	-

※ 출처: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보건복지부(2021. 7) 자료 재구성.

③ 아산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3) 해당 지역 선행연구

충청남도의 탈시설 · 자립생활의 화두는 2018년 09월 19일 제306회 충청남도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황영란 의원의 5분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2018년 11월 15일 '탈시설 · 자립생활 정책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와 2019년 12월 28일 '장애인의 지역사회전환(탈시설)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2020년 05년 28일에는 '탈시설 정책 민 · 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어 2020년 09월 17일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하였다.

(1)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선행연구

충청남도의 탈시설 관련 연구로는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연구',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방안',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충청남도 장애 노인 돌봄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충청남도 장애인 접근권 증진방안연구' 등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연구(2020)

최근 장애인복지 정책은 자립생활의 실현, 통합사회, 지역사회 참여 등의 목표로 전환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의 탈시설 커뮤니티케어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과「충청남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및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탈시설화 계획 수립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 되었다. 따라서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외 사례의 문헌연구, 충청남도 지역사회 현황분석, 설문조사, FGI, AHP를 통해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1단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탈시설 권리 선언 등 지원체계구축과 자립 및 돌봄 지원, 주거 지원을 제시하였고, 제2단계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 운영 매뉴얼 개발 등 지원체계구축, 자립 및 돌봄지원, 주거지원, 일·소득 지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2026년에 탈시설 성과보고 및 종단연구를 비롯한 장애인 권리형 일자리까지 제시를 하였다.

②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 방안 연구(2016)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도출하고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를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구분하며 다원적인 욕구를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은 국내·외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연구,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생애주기별 심리적인 어려움과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사례조사, 제도적 변화에 따른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인권과 권익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욕구를 조사하였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충남 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확대, 발달장애인 가족 자조집단 및 동료상담가 양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발달장애인 독립생활 중간과정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③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9)

충청남도는 2019년 12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 기본조례」 제6조에 의해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 분야별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등을 위하여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범위는 제1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 상황 분석 및 평가, 인권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축 등이다. 분야별로 아동 · 청소년, 노인 정책, 여성 정책, 장애인 정책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 장애인 관련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장애인 정책 전개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인간다운 삶 보장, 이동권 보장, 권리구제제도, 주간돌봄 지원, 편의 증진,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 중에서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 자립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자립생활에 대한 당사자 욕구조사, 지역사회 속 삶 보장 제반 인프라 구축‘ 거주시설기관 기능전환 콘텐츠 마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충과 활동지원 확대 등이 있다.

④ 충청남도 장애 노인 돌봄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2018)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은 2005년에는 32.5%였으나 2017년에는 46.6%로 14% 이상 증가하였고 1인 가구의 비율도 15.4% 증가하였다. 장애 노인은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장애 노인에 대한 대응은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공통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고령화된 장애인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의 노화 과정에 발생하는 장애도 관심의 대상이며 장애 노인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정서적 영역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 연구는 증가하는 충청남도 장애 노인의 규모, 특성 및 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분석하고 장애 노인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연구는 선행연구 등을 통한 문헌연구, 통계, 장애인실태조사 등의 자료 분석,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장애 노인 지원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조례제정, 장애 노인 및 노인 대상 돌봄의 통합서비스 제공, 장애 노인 대상 이용 및 거주시설 공급, 가족 돌 봄 원 지지체계 강화, 장애 노인 전문인력육성,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⑤ 충청남도 장애인 접근권 증진방안연구(2017)

이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편의시설과 이동권에 대한 개선 없이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자립 생활을 확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장애인이 겪는 접근권에서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기존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사항, 신규편의시설 수요, 편의시설 관리 및 모니터링 등에 관한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대중교통수단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웹 접근성, 스마트폰 활용도, 정보 접근 도구 활동화 방안 발굴 등을 제시하였다.

(2) 아산시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선행연구

아산시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 자립생활 선행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상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부족한 가운데 '2020 아산시 인권의식 실태조사보고서'와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연구가 있었다. '2020 아산시 인권의식 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장애인에 대한 아산시의 인권이 보호 ·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또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추진전략 2영역에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과 추진전략 3영역에 찾아가는 장애인 맞춤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었다. 이 외에 아산지의 경우 특별한 선행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4) 소결

충청남도의 경우 탈시설 · 자립생활 관련 법규, 정책 등이 매우 미흡하다.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등은 제정되어 있으나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한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및 타 시도의 탈시설 관련 조례들을 충청남도도 이른 시일 안에 제정할 필요가 있다.

아산시의 경우는 충청남도와 유사하게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와 차별금지 및 인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권에 관한 조례 그리고 자립생활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역시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관련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충청남도의 탈시설 · 자립생활 관련 정책도 이제 시작단계이다.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연구를 2021년에 끝냈다. 그리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5개년 계획 수립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1단계는 2022년부터 3단계 2026년까지 총 4가지의 목표와 27개의 세부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담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탈시설 · 자립생활 정책은 거의 볼 수 없다. 자립생활센터의 활동과 활동지원제도,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의 정책 외에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이 빠른 시일안에 수립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15개의 장애인복지관과 8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5개의 자립생활체험홈이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권익옹호기관, 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서로 탈시설정책과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지는 못하다.

아산의 경우는 관련 기반들이 더 열악하며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은 충청남도 그리고 이웃 시군과 함께 지역 기반들을 파악하고 저변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4. 전북

1) 법 및 정책

(1) 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관련 자치법규 및 조례분석

2021년 12월 현재,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장애인 관련 조례 27개 중 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례를 추출하면, 광역지자체 조례로서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전라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기초지자체 조례로서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를 들 수 있다.

①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2015. 12. 11 제정·시행)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제3조). 이 법이 규정한 “자립생활 지원”은 활동지원 급여 제공 및 추가지원, 자립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상담,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 동료상담 침 권익옹호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제5조).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규정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업무를 이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자립생활 등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
2.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3.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4.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6. 탈 시설 자립생활 지원
7.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
8.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육성
9. 장애인간 동료상담, 역량강화사업, 권익옹호사업
10. 장애인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의 지원
11.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54조[3]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7.12.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2.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12.19〉
[제목개정 2017.12.19]

이 조례는 특히 시설퇴소 중증장애인에게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일정 기간 동안의 거주지,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6조(탈시설 자립생활지원) 도지사는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②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5. 10. 12 일부개정·시행)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의 제6조는 도지사가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설정, 인권보장 실천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제11조), 전라북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차별에 대한 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제12조). 다만,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의 주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 조례는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고,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대한 조항을 특별히 담고 있지는 않다.

> 제6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 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① 도는 장애인에 대한 차

별사례 및 인권유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도 및 시·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2016. 6. 17 제정·시행)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보호,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제1조). 도지사는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 기능향상과 가족 양육부담의 경감 조치, 권리 옹호에 필요한 조치, 복지시책 홍보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도민의 바른 이해를 위한 정책 마련 등의 책무를 가지고 있다(제3조). 또한,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제7조), 권리보장지원(제6조),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제8조)를 수행하도록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33조에 따라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제10조).

이 조례에서 특별히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조례라고 볼 수 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며,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 전라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15. 7. 3 제정·시행)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36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전라북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도지사는 3년마다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마련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제3조).

평생교육 지원조례는 특별히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평생교육이 탈시설 장애인의 주요한 낮활동이 될 것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센터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라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 2. 24 제정·시행)

이 조례는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1년 2월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시장이 4년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또한, 기초지자체 수준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였다(제5조, 6조).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성별·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지자체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주요 계획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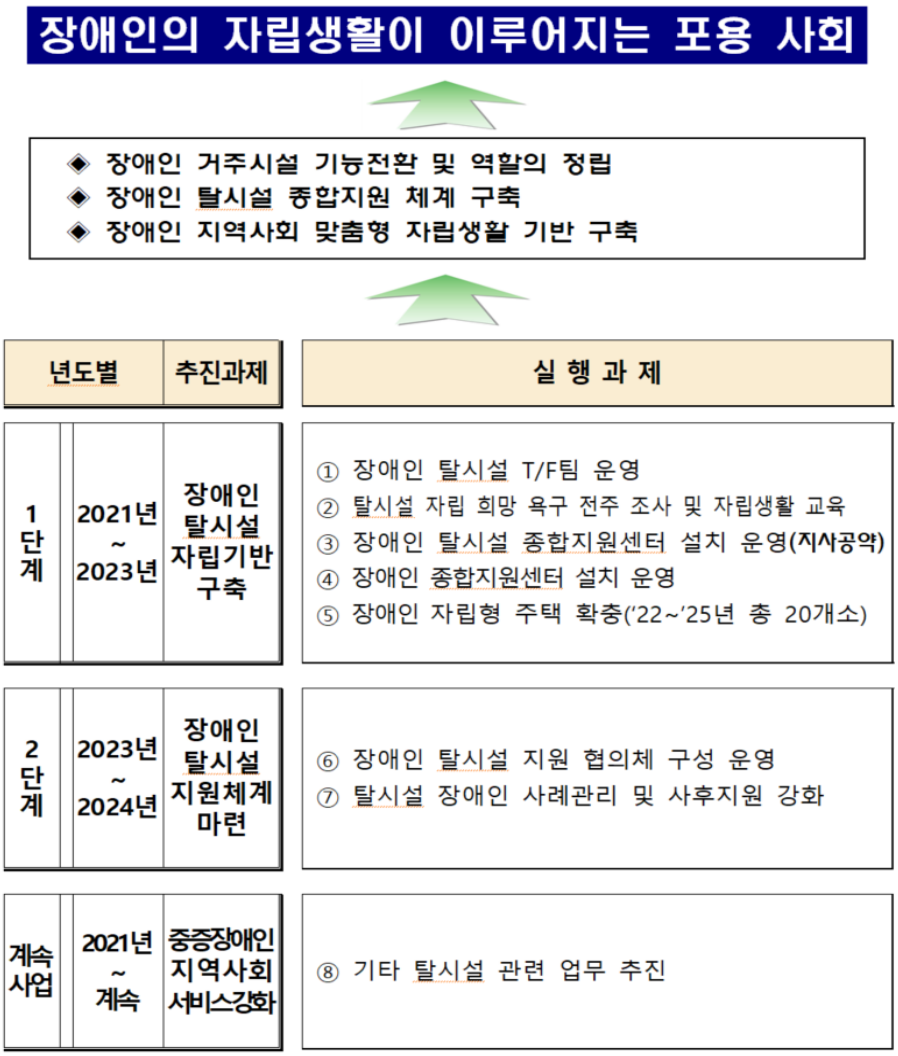
① 전북 장애인 탈시설 지원 5개년 계획

전라북도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계획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배경으로 하여, 「장애인복지법」과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법률 근거로 마련되었다.

이 계획에서 ‘탈시설’의 정의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2020년 12월에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탈시설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거주시설 소규모화를 포함하는 “탈시설화”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한편, 전라북도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책 추진 강화를 민선7기 지사 공약사업으로 채택하고, 2010년부터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 2015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고, “Ⅷ.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 약속하였던 장애인 탈시설종합지원센터 설치를 2022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은 1단계(2021년~23년) 실행과제로서, 탈시설 T/F 팀 운영, 탈시설 자립 희망 욕구 전수 조사 및 자립생활 교육, 탈시설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장애인 자립형 주택을 22~25년까지 총 20개소 확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2단계(2023년~24년) 실행과제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및 사후지원 강화를 계획하였다. 이와 함께 2021년 이후 계속 사업으로 기타 탈시설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지역사회 맞춤형 자립생활 기반 구축”, “장애인 탈시설 종합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전환 및 역할의 정립”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였다. 5년간 투입될 예산은 5,459억 원으로, 7개 신규사업에 약 110억, 10개 계속사업에 약 5,349억이 배정되어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69]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정책목표 및 전략

출처 :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5개년계획(안) 장애인복지과 2021. 11. 25 회의자료

각 실행과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장애인 탈시설 T/F팀 운영 : 2021년 5월부터 계속 사업이다. 관련공무원, 장애인 단체, 전문가 등 5~8명으로 구성하고, 탈시설 5개년 계획의 마련, 자립희망

욕구조사 계획 수립,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수립,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장애인 자립형 주택 운영방안 수립,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안) 마련, 탈시설 관련 신규 시책 제안 등을 주요 활용 내용으로 한다.

- 탈시설 자립희망 욕구 전수조사 및 자립생활 교육 : 자립희망 욕구 전수조사는 2021년 하반기에 아동과 영유아 시설 3개소를 제외한 69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1500여명 전수에 대해 거주시설을 방문하여 개인별 상담조사를 실시한다. 자립생활 교육은 69개 거주시설의 장애인 전수와 종사자에 대해 방문 및 집단교육의 방식으로 지역사회 정보 제공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한다.
- 장애인 탈시설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022년 상반기에 센터 설치를 완료하여, 이후 탈시설 자립지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운영주체는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단체 등에 공모하여 위탁한다.[4] 센터장 1명, 재가지원팀2명, 주거지원팀 2명 등 2팀 5명의 조직을 두고,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과 맞춤형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장애인 자립형 주택 운영 및 주거 매니저 지원, 자립형 주택 입주자 발굴 및 대기자 관리,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023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한다. 시설폐쇄된 (구) 자립복지재단 부지를 활용하여 탈시설 자립지원센터, 체험홈, 재활치료 센터 등을 운영한다.
- 장애인 자립형 주택 확충: 탈시설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해 자립형 주택 및 주거매니저를 지원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험홈 38개소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1개소를 중간 집으로 활용하고, 2025년까지 20개소(매년 5개소)의 자립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1개소 당 주택 매입비 2억과 편의시설 설치비 2천만원 등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 또한 주거매니저, 활동지원서비스 등 통합돌봄 지원을 포함한다.
- 장애인 탈시설 지원 협의체 구성 운영: 장애인탈시설종합지원센터 내에 거주시설의 장, 자립생활센터의 장, 장애인 가족, 자립형 주택 입주자 및 전담 인력, 주택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탈시설 자립지원

4)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은 공공형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에 전주시에 개원하였다. 올해 9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는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웰페어뉴스, 2021. 12. 19일자).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및 사후지원 강화: 2021~25년간 탈시설 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자립형 주택 퇴거 및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를 도모한다.

○ 기타 탈시설 관련 업무:

-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을 1인당 1천만원씩 64명에 대해 지급한다.
- 정부 주도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더하여 도비 30%, 시군비 70%를 활용한 활동지원 추가지원을 법정급여 1등급(380점 이상)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람 485명에 대해 제공하는데, 이 지원 대상 안에 탈시설 장애인을 포함하여 지원한다.
- 정부 주도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더하여, 도비30%, 시군비 70%를 활용한 454명에 대한 추가지원을 월 최대 32시간까지 제공한다. 다만, 이 지원 대상에는 취업, 직업재활지원, 거주시설 입소, 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이용 발달장애인은 제외한다.
- 그 외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이 지속사업으로 진행된다.

②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2019-2023)

이 계획은 전라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장애인 인권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확보할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전라북도 장애인 및 복지정책 현황, 관련법령 및 계획 분석, 장애인 실태조사 분석, 인권실태조사 지표 정리 및 개발,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제시, 핵심 사업 및 연차별 시행계획 도출 등을 그 용역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용역의 결과 도출된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핵심 비전과 정책과제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궁극적인 비전을 “장애인의 인권을 담고, 존엄과 행복을 실현하는 전라북도”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목표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다중적인 차별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등 3개를 설정하였다.

탈시설 자립생활 추진은 장애인 기본권 보장의 하위 정책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그림 Ⅱ-72] 전라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비전

출처: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2019-2023) 198쪽.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i.or.kr

〈표 Ⅱ-40〉 정책과제별 세부계획 (1)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계획	주관부서	협조부서
장애인 기본권 보장	이동권 보장 확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지속 확대	교통물류도로과	
		특별교통수단 운행규정 개선	교통물류도로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교통물류도로과	
	취업 및 근로환경 개선	장애인 취업역량 강화	노인장애인복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일자리발굴 및 안정적인 소득보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장 내 장애인 근로환경 및 차별실태 파악	노인장애인복지과 총무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지원 인프라 확대	노인장애인복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편의증진 및 문화여가권 보장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향유프로그램 개발 운영	문화예술과 체육정책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베리어프리) 만들기 추진	노인장애인복지과	
		전라북도 관광·편의 정보제공 확대	관광총괄과	
	건강권 보장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병원 확대	보건의료과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건강안전과	
		재활치료시설 확충	노인장애인복지과	
	교육권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확대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학습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 확대	노인장애인복지과	
		취업연계 직업기술교육 활성화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정책관
	정보접근성 강화	전북도 내 주요 홈페이지 웹접근성 확대	정보화총괄과	
		정보통신분야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정보화총괄과	
	탈시설 자립생활 추진	장애인 탈시설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 전담조직 신설/개편	기획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생계지원 확대	노인장애인복지과	
		자립체험홈 설치 및 주거서비스 운영	노인장애인복지과	
		자가(주거) 리모델링 지원	주택건축과	
		시설거주자를 위한 단계적 환경개선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훈련 및 자기옹호 역량강화	노인장애인복지과	

출처: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2019-2023) 199쪽.

〈표 Ⅱ-40〉 정책과제별 세부계획(2)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계획	주관부서	협조부서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실효적 상담·조사·권리구제 체계 확립	장애인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한 감시단 모니터링 강화	인권센터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체계 다양화	인권센터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조성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유형정리 및 정보 관리	인권센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네트워크 강화	인권센터	
	도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 확대	장애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	인권센터	
		재가장애인 인권교육 확대·기존 인식개선 교육지속	인권센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인권센터	
	장애인관련 법률 체계 구축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상황 점검	인권센터	노인장애인복지과
		UN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상황 모니터링	인권센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전라북도 및 시군 장애인 자치법규 개선	인권센터	노인장애인복지과 법무행정과
다중적 차별장애인 권리 강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체계 마련	노인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노인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피해예방 지원	여성청소년과	
		여성장애인 피해자 보호	여성청소년과	
	아동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아동장애인 조기발견 체계 마련	여성청소년과	
		아동장애인 피해예방 지원	여성청소년과	
		아동장애인 피해자 보호	여성청소년과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강화	정신장애인 사회인식 개선 홍보	보건의료과	
		정신장애인 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과	

출처: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2019-2023) 200쪽.

세부과제 표에서 보듯이, “탈시설 자립생활 추진” 과제에 대한 7개의 하위 세부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겠다. 세부계획은 장애인 탈시설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 전담조직 시설/개편,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생계지원 확대, 자립체험홈 설치 및 주거서비스 운영. 자가 리모델링 지원, 시설거주자를 위한 단계적 환경개선, 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 훈련 침 자기옹호 역량강화 등 7개이다.

③ 2019년 전북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2019. 2. 전라북도 노인장애인과)

이 계획은 2016년 개정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에서 3년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다.

2015년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추진기반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주요 성과로서 4개의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였다. 2015년 전주를 시작으로 2016년 군산, 2017년 익산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위탁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에는 군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신규 건립하였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을 15~17년 3년간 8개소 확대하였다. 여기에는 장애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가 포함된다.

2019년 사업 추진방향은 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확대운영,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활동보조인 장애인 평생교육 이해교육 실시,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장애인평생교육 사회적 인식개선 등 5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과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신규건립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예산 사업이거나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

④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2022)

□ 4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의 장애인 관련 계획

4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행복, 공감, 포용, 공동체 등 4개의 핵심 가치

를 설정하고, 핵심추진 전략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방과후 돌봄인프라 확충과 청년복지 강화, 자립역량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인돌봄안전망 구축 및 장애인 자립역량강화, 지역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복지재정 효율화 등을 설정하였다. 장애인 관련 사업은 이들 핵심추진전략 중"노인돌봄 안전망 구축 및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안에 4개의 신규 중점추진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탈시설 자립지원 기반 구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지정 운영" 등이다. 결국 장애인복지의 핵심은 탈시설 자립지원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장애인 관련 사업을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이 7.1%로 상대적으로 높고, 탈시설 자립욕구를 가진 장애인이 약 35%에 이르며, 49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약 1600명이 생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림 Ⅱ-75] 제4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방향

출처: 제4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종보고서. 265쪽.

□ 4기(2019~2022) 군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장애인 관련 계획

2018년 10월에 발간된 4기 군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르면, 이 계획은 6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장애인 관련 계획은 추진전략 3 "다함께 돌보는 이웃사랑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운영과 장애인 자립생활 가정 운영이다.

〈표 Ⅱ-41〉 4기 군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전략 명	중점추진사업	기타 관련 사업
추진전략 1 사회가 품어주는 아이사랑 공동체	1. 다함께 돌봄사업 2. 군산형 아이돌봄사업 3. 공공보육시설 확대 4. 부모교육 확대	5. 영유아 상해보험 확대 지원 6. 육아가정 부모 월요일 출근시간 조정
추진전략 2 기펴고 사는 청소년 공동체	1.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2.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3. 청소년 위생용품 무상지원 확대
추진전략 3 다함께 돌보는 이웃사랑 공동체	1. 치매노인 마을 네트워 구축 2. 장애인 활동보조인 확대 3.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4. 장애인 자립생활 가정	5. 노인복지보건연계강화 6. 노인일자리지원센터 7. 장애인 원스톱 행정시스템 구축 8.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확대 9. 군산형 긴급지원사업 추진 10. 보호자 없는 병동 확대
추진전략 4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공동체	1. 어린이 숲체험원 조성 2. 청소년 문화의집 확충 3.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 내실화	4.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 5. 청소년·청년 문화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복지포인트(카드) 지급
추진전략 5 모두가 잘사는 상생 공동체	1.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가칭)설립	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유통시스템 구축
추진전략 6 참여가 일상이 되는 어울림 공동체	1. 지역바자회 시스템 구축 2. 시민과 지역대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3. 길모퉁이 복지안내 고보조명 설치

출처: 제4기 군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54쪽.

이들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추진 이유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사업 3-2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확대

추진배경
사업 대상자 4,197명 중 300여명만 활동지원서비스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상자 발굴이 필요함. 대상자 발굴을 통해 활동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함.
사업내용
이를 위해 읍면동 홍보 독려, 활동지원 교육기관 홍보 협조, 활동지원기관 신규기관 발굴 및 지정 요청 시 공모 선정 등을 세부 사업 계획함.
국비 이외에 지방비(도비, 시비)를 2019년~2022년까지 해마다 11억~12억 정도 투입함.

출처: 4기 군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118~119쪽.

○ 세부사업 3-3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추진배경
군산시에서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추진,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의 입소자 자연감소 발생 시 신규입소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원을 30인 이하로 지속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음.
집단적인 장애인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내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의 생활을 지향하여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들이 낮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간 돌봄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군산시에는 1개의 장애인복지관과 3개의 주간보호시설이 있음.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서부권에 있음. 따라서 동북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립 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0년에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하고 운영하기로 세부계획을 수립함.
사업내용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의 자립생활체험홈을 2020년에 건립함.

출처: 4기 군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120~121쪽.

○ 세부사업 3-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운영

추진배경
집단적인 장애인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내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의 생활을 지향

하여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중증장애인이 약간의 도움으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필요.
사업 내용은 민간 공모를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사업 수탁자 선정하고 운영을 지원하며, 여기에 지역사회로 복귀해 자립을 희망하는 1-3급 장애인 중 만 19세 이상인자로서 거주시설 퇴소 예정자나 체험홈 퇴소예정자가 살 수 있도록 함.

사업내용

민간공모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사업 수탁자 선정, 운영지원.

출처: 4기 군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123~124쪽.

군산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장애인복지 관련 계획을 살펴보면,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세부 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는 않다. 즉,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건립과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시설인지, 이를 통해 어떤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다.

(3) 장애인 자립 및 탈시설 관련 정책 현황

-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 장애인 자립 미 탈시설 관련 정책 현황(예산 포함)
- 현황 및 대응방안

○ 군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경제적 지원(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장애아동수당 지원,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연금 지급)을 비롯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단체 운영활성화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사업 내실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지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지원, 장애인 체육관 건립 등임.

2) 장애인 인구 및 지역사회 수요 · 공급자원 현황

(1) 지역사회 수요 현황

전라북도는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전라북도의 장애인구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도내 시군별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군산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은 6.7%로, 전라북도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대체로 전주, 군산, 익산 등 전라북도 내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장애인 비율이 낮을 것을 볼 수 있다. 전라북도 시군별 장애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Ⅱ-42〉 시군별 장애인인구 현황

(2021년 9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전 체 인 구			장 애 인 인 구			장애인 인구 비율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1,791,110	891,073	900,037	132,105	71,819	60,286	7.4%
전주	658,235	323,927	334,308	34,071	18,979	15,092	5.2%
군산	265,770	134,537	131,233	17,846	10,191	7,655	6.7%
익산	279,207	139,079	140,128	20,609	11,497	9,112	7.4%
정읍	106,951	53,127	53,824	10,042	5,257	4,785	9.4%
남원	79,673	39,071	40,602	7,716	4,145	3,571	9.7%
김제	81,177	40,302	40,875	9,312	4,801	4,511	11.5%
완주	91,146	46,839	44,307	8,028	4,382	3,646	8.8%
진안	24,985	12,639	12,346	2,798	1,433	1,365	11.2%
무주	23,764	11,826	11,938	2,482	1,303	1,179	10.4%
장수	21,755	10,852	10,903	2,358	1,189	1,169	10.8%
임실	26,755	13,682	13,073	3,171	1,635	1,536	11.9%
순창	27,033	13,232	13,801	2,910	1,462	1,448	10.8%
고창	53,606	26,602	27,004	5,628	2,833	2,795	10.5%
부안	51,053	25,358	25,695	5,134	2,712	2,422	10.1%

(2)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관련 공급자원 현황

2021년 9월 현재, 전라북도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99개소이다. 이는 장애인거주시설 73개, 지역사회재활시설 97개, 직업재활시설 28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개를 포함하는 것이다.

〈표 Ⅱ-43〉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시설

(2021. 9월 기준, 단위 : 개, 명)

구 분	시설종류		개소수	종사자 수		생활인(이용인)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시설유형	합 계		199	2,118	1,978	915,423	914,899
장애인 거주시설	소 계		73	1,244	1,148	1,896	1,600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법인	44	1,159	1,071	1,708	1,434
		개인	4	44	36	68	6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2	24	24	90	7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	14	14	25	21
	학대피해장애인쉼터		1	3	3	5	3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소 계		97	674	668	912,787	912,673
	장애인복지관		13	305	303	747,82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4	117	117	주간 558 야간 96	주간 458 야간 82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5	66	68	48,033	
	장애인수어통역센터		15	69	67	25,670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2	8	4	36,264	
	장애인 체육관		5	26	26	54,345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0				
	장애인수련시설		0				
	장애인재활치료시설		13	83	83	19,283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소 계		28	195	157	740	626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3	12	12	60	42
	장애인보호작업장		23	158	123	600	523
	장애인근로사업장		2	25	22	80	6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소 계		1	5	5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	5	5		

※ 이 표는 미지원시설을 포함한 것임.

이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각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전라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을 지원 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73개의 거주시설 중 지자체 지원을 받는 시설은 68개이고, 미지원 시설은 5개이다. 미지원 시설은 개인운영 거주시설 1개와 공동생활가정 4개인데, 개인운영 거주시설은 곧 운영 중단 예정이다.

〈표 Ⅱ-44〉 전라북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지원여부별

(2021. 9월 현재)

시군	시설유형	시 설 수				종사자		생활인원	
		계	법인	개인	비영리 단체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5개 유형	73	65	8	0	1,244	1,148	1,896	1,600
지원	소 계	68	65	3	0	1,239	1,143	1,869	1,580
	거주시설 (법인)	44	44	0	0	1,159	1,071	1,708	1,434
	거주시설 (개인)	3	0	3	0	44	36	68	63
	공동생활가정	18	18	0	0	19	19	68	62
	단기거주시설	2	2	0	0	14	14	25	21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1	1	0	0	3	3	5	3
미지원	소 계	5	0	5	0	5	5	22	17
	거주시설 (개인)	1	0	1	0	0	0	0	0
	공동생활가정	4	0	4	0	5	5	22	17
	단기거주시설	0	0	0	0	0	0	0	0

□ 장애인 거주시설

〈표 Ⅱ-45〉 법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2021. 9월 현재)

시군	사회복지 법인명	시 설 명 (장애유형)	설 치 신고일	종사자		생활인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44개소		1,159	1,071	1,708	1,434
전주 (4)	동암	동암재활원 (지체-성인)	90.09.03	21	18	70	35
	송광	금선백련마을 (중증장애)	16.06.17	28	26	30	30
	소화자매원 (광주소재)	소화진달네집 (지적장애 女)	06.04.28	30	28	40	33
	평안한 복지	평안의집 (지적장애)	08.12.01	15	15	20	20
군산 (3)	구 세 군 복지재단	구 세 군 군산목양원 (지적,자폐성)	00.01.27	28	28	60	33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	나포길벗공동체 (지적장애)	09.11.12	26	26	30	30
	나눔세상	더숨99지원센터 (지적장애)	05.04.06	24	21	30	26
익산 (12)	창 혜 복지재단	창 혜 원 (지적장애)	67.05.06 (07.12.7)	84	76	134	125
		홍 주 원 (중증)	97.01.10	32	28	40	34
		청 록 원 (중증)	06.11.21	35	32	45	37
	전 북 보 성 원	전북보성원 (시각,중증)	65.01.23	35	25	50	44
		덕 암 (중증)	09.03.26	31	25	50	42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	작은자매의집 (지적,자폐성)	94.05.24	35	34	40	37
	사 랑 복지재단	사 랑 원 (지적-아동)	07.11.16	30	27	30	29

시군	사회복지 법인명	시 설 명 (장애유형)	설 치 신고일	종사자		생활인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읍 (5)	중 도 원	동그라미 (지적장애)	98.02.07	37	34	42	42
		맑 은 집 (장애-영유아)	07.03.09	28	27	35	30
		밝 은 집 (중증실비)	07.03.09	31	28	35	32
		훈훈한집 (지적·성인)	07.03.09	32	30	40	35
	예담 복지	예담 (지적장애)	07.07.20 (19.8.14)	15	14	20	20
	자 애 복지재단	자 애 원 (지적,자폐성)	00.04.17	49	38	84	60
		자애두승원 (중증장애)	05.06.17	50	31	53	44
	만복원	만 복 원 (지적장애)	01.09.28	26	22	60	29
	평 화	정읍천사마을 (지적장애)	03.10.14	24	27	36	30
	정읍 나눔의집	나 눔 빌 (지적,자폐성)	06.04.12	14	16	25	25
남원 (2)	한기장 복지재단	평화의집 (중증실비)	07.05.07	27	18	40	23
	풍악 복지재단	편한세상 (중증장애)	10.03.22	30	29	40	39
김제	유한 복지재단	요한의집 (지적장애)	11.10.20	11	11	15	15
완주 (8)	국제원	국제재활원 (지체,뇌병변)	52.02.01	29	33	50	45
		새 힘 원 (중증장애)	90.10.05	28	29	40	37
	어깨동무 복지재단	함께사는집 (중증장애)	03.10.07	23	25	30	28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무지개가족 (중증장애)	05.01.04	22	24	30	29

시군	사회복지 법인명	시 설 명 (장애유형)	설 치 신고일	종사자		생활인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은혜동산	은혜의동산 (지체,뇌병변)	06.06.01 (14.01.03)	12	16	26	25
	베데스다의집	베데스다의집 (지적,자폐성)	06.07.12	8	13	15	15
	머릿돌 다애	다애공동체 (지적장애)	07.03.15	10	9	18	18
	한기장 복지재단	예수재활원 (지적,자폐성)	06.12.29	16	19	29	29
진안	낮은자리	흰마실 (지적장애)	08.04.22	22	22	30	28
무주	하은 복지재단	하은의집 (지적장애)	07.12.31	24	13	35	27
장수	없음						
임실	크리스찬 복지재단	로뎀하우스 (지적장애)	06.01.24	21	21	30	30
순창 (3)	어깨동무 복지재단	함께사는마을 (지적장애)	08.07.09	27	27	40	30
	원산원	주향의집 (지적장애)	10.12.16.	11	10	14	11
	경인정원	로뎀나무 (지적장애)	10.03.15.	14	14	29	21
고창	아름다운 마을	아름다운마을 (지적장애)	04.12.04	34	34	50	44
고창	고창 우리누리	느티나무 (지적장애)	15.11.20	13	12	18	17
부안	한울안	둥근마음보금자리 (중증장애)	16.12.30	17	16	30	21

※ 시설 입소률 : 입소정원 1,708명, 입소현원 1,434(84%) 2020년 83.4% / 2019년 85.1% / 2018년 87.3% / 2017년 85.8%

〈표 Ⅱ-46〉 개인운영 거주시설

(2021. 9월 현재)

시군	운영자	시 설 명 (장애유형)	설 치 신고일	종사자		생활인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지원시설		4 개소		44	36	68	63
정읍(1)	개인	화평의집 (지적,자폐성)	06.12.26	17	11	25	21
김제 (2)	개인	지구촌마을 (지적장애)	06.10.09	14	13	23	22
	개인	샤론의 집 (지적장애)	08.07.31	13	12	20	20

□ 공동생활가정

〈표 Ⅱ-47〉 공동생활가정

(2021. 9월 현재)

시군	시 설 명	설치일	종사자(명)		생활인(명)		운영주체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 계	22개소	-	24	24	90	79	복)사회복지법인 사)사단법인 재)재단법인
지원 시설	18개소	-	19	19	68	62	
전주 (4)	손수레 공동생활가정	08.11.18	1	1	4	4	사)전북장애인손수레 자립생활협회
	함께하는 벗	19.03.14	1	1	4	4	사)전북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전주시지부
	희망해 1호	16.01.07	1	1	4	4	사)바른복지사무소
	희망해 2회	17.09.25	1	1	4	4	사)바른복지사무소
군산 (6)	해오름 1호	06.11.23	1	1	4	4	복)해오름복지재단
	해오름 2호	08.04.16	1	1	4	3	복)해오름복지재단
	해나지오	18.01.30	1	1	4	4	복)해오름복지재단
	해바라기	10.07.01	1	1	4	3	복)해오름복지재단
	나현네집	11.04.04	1	1	4	3	복)전주카톨릭 사회복지회

시군	시 설 명	설치일	종사자(명)		생활인(명)		운영주체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1더숨	21.08.31	1	1	4	3	복)나눔세상
익산 (3)	동그라미 은혜의집	01.03.01	1	1	4	4	복)중도원
	동그라미 희망의집	05.12.12	1	1	4	3	복)중도원
	한우리 공동생활가정	04.03.01	0	0	0	0	복)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정읍	자애해피홈	15.01.01	2	2	4	4	자애복지재단
남원	남원복지관부설 공동생활가정	99.02.01	1	1	4	4	복)한기장복지재단
진안	은혜의집	18.01.29	1	1	4	4	복)반월복지재단
완주	기쁨의동산	21.08.31	2	2	4	3	은혜동산
고창	아름다운마을 공동생활가정	17.02.24	1	1	4	4	아름다운마을

□ 단기거주시설

〈표 Ⅱ-48〉 단기거주시설

(2021. 9월 현재)

시군명	시설명	신고일자	종사자	정원	현원	운영주체
전주	한마음단기보호센터	02.3.27	7	10	10	전북장애인부모회
익산	새소망단기보호센터	05.2.16	7	15	11	사랑의손길 새소망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 장애인복지관

(2021. 9월 기준, 단위 : 명, ㎡)

시설명 (운영주체)	종사자			이용인수 (연인원)	신고 일자	연면적 (부지/건물)
	정원	현원	기타			
계	305	303	50	747,821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사복)동암]	43	42	6 (바우처)	109,656	87.8.28.	20,301 / 6,656

시설명 (운영주체)	종사자			이용인수 (연인원)	신고 일자	연면적 (부지/건물)
	정원	현원	기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사복)중도원]	23	23	5 (도서관1, 목욕탕2 활동보조1 바우처1)	54,812	03.2.27	1,437 / 1,968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사복)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29	29	5 사무원1 조리원1 사회복지사1 활동지원2	86,337	99.4.1	2,495 / 2,509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복)중도원]	29	29	4 여성교육지원 2 사회서비스 2	84,061	04.2.24	2,682 / 3,053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 직영('15.7.1)]	22	22	0	37,130	01.2.7	2,278 / 1,929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복)한기장복지재단]	27	27	0	108,602	98.2.18	2,522 / 2,158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복)김제제일복지재단]	22	22	15 (주간활동4, 활보전담2, 바우처3, 야학전담1, 청년일자리1, 직업재활센터4)	68,999	07.03.13	6,296 / 2,183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사)나누는 사람들]	19	19	6 (군비 3 바우처 3)	38,033	07.4.5	1,594 / 1,253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사복)반월복지재단]	17	17	5 치료사4 정보화강사1	15,487	10.2.19	11,022 / 1,350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사복)삼동회]	20	20	0	35,303	05.12.9	3,754 / 3,063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사)나누는사람들]	18	18	1	21,134	13.10.28	1,311 / 653
고창군장애인복지관 [사)한두레]	18	17	4 (노인맞춤3, 전담인력 1)	37,556	17.08.01	3,428 / 926

시설명 (운영주체)	종사자			이용인수 (연인원)	신고 일자	연면적 (부지/건물)
	정원	현원	기타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사복)한기장복지재단]	18	18	8 (고용직5 바우처치료3)	50,711	06.5.25	35,960 / 1,609

□ 장애인 주·야간 보호시설

(2021. 9월/ 단위 : 명)

시군	시 설 명 (운영주체)	종사자		이용인		신고일 (주간/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계	주간 32개소, 야간 10개소	110	27	458	82	
전주시 (13)	전북장애인부모회부설주간보호센터 (사. 전북장애인부모회)	3	2	12	4	주 1998.3.27 야 2010.10.6
	전북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3	0	12	0	2001.6.13
	전주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 (사복. 중도원)	4	0	14	0	2005.12.30
	전주베다니주간보호센타 (사복 . 전주베다니)	3	0	15	0	2005.12.13
	꿈마을주간보호센터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전주지부)	4	0	17	0	2006.4.7
	해찬나래주간보호센터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	4	3	18	9	주 2009.3.31. 야 2009.3.31
	정다운주간보호센터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	4	6	18	20	주 10.09.14 야1 11.01.01 야2 13.12.12
	손수레주간보호센터 (사.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3	3	12	7	주 2013.12.31 야 2013.12.31
	희망드림주간보호센터 (사.희망드림)	3	0	10	0	2014.1.24
	새롬주간보호센터 (사. 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3	0	10	0	2015.09.01
	희망해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 바른복지사무소)	3	0	10	0	2018.02.28
	해냄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 해냄복지회)	3	0	12	0	2018.05.25

시군	시 설 명 (운영주체)	종사자		이용인		신고일 (주간/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더나눔주간보호센터 (사. 더나눔)	3	0	12	0	2018.07.30
군산시 (4)	군산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사복.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3	0	10	0	2003.03.01
	구세군군산목양원주간보호시설 (사복. 구세군복지재단)	4	0	14	0	주 2004.03.22
	군산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시지회)	3	0	10	0	2008.11.17
	희망나눔주간보호센터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군산지부)	3	2	12	5	주 2009.01.05 야 2010.10.01
익산시 (4)	새소망주간보호시설 (사. 사랑의손길새소망)	4	0	19	0	2005.02.06
	한마음주간보호센터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익산지부)	5	3	25	12	주 2005.03.21 야 2011.01.01
	푸른솔주간보호시설 (전북장애인부모회 익산시지회)	4	0	18	0	2011.12.30
	해바라기주간보호센터 (사. 장애인사랑하는모임)	3	0	10	0	2017.09.29
정읍시 (3)	정읍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 (정읍시 직영)	4	0	18	0	2003.02.24
	울림주간보호센터 (사)전북장애인부모회 정읍시지회)	3	0	15	0	2016.12.13
	푸른나래주간보호센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정읍시지회)	3	0	13	0	2017.06.23
남원시 (3)	남원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 (사복. 한기장복지재단)	3	0	13	0	1998.2.18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우리집 (사복. 햇빛)	4	2	20	6	주 2006.06.01 야 2010.10.01
	우리집 (사복. 햇빛)	4	0	20	0	2016.08.09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사복)김제제일복지재단	4	3	13	9	주 2010.10.04 야 2011.02.01
완주군	완주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사) 나누는 사람들	3	0	12	0	2010.12.30.

시군	시 설 명 (운영주체)	종사자		이용인		신고일 (주간/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진안군	진안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사. 반월복지재단)	3	3	15	10	주 2010.10.20 야 2013.01.01
장수군	장수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복.자광복지재단)	4	0	18	0	2013.10.28
부안군	부안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사복. 한기장복지재단)	3	0	11	0	2012.10.30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2021. 9월)

시군	시 설 명 (시설유형)	시 설 허가일	생산품	종사 인원	이용장애인 현황				운영 주체
					정원	계	근로	훈련	
계	24개소 (도1, 시군23)	(훈련3, 보호19, 근로2)		138	680	585	423	162	
도립	전북장애인 보호작업장	90.01.03	행정봉투, 쓰레기봉투	8	30	29	29	0	동암
전주 (4)	덕진장애인직업적 응훈련시설	19.11.27	-	4	20	19	0	19	전북장애인 재활협회
	동암자활 자립장	01.04.01	두부, 임가공	5	30	19	19	0	동암
	위드(WITH)	06.09.25	복사용지, 쇼핑백,임가공	6	30	28	28	0	전북장애인재 활협회
	더불어삶	17.04.10	화장지	5	30	22	16	6	참복지
군산 (2)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	05.12.13	한지 양말류	8	40	39	14	25	해오름 복지재단
	모드니직업 적응훈련센터	21.03.08	-	4	20	11	0	11	전주카톨릭 사회복지회
익산 (4)	해피드림	00.02.10	제과제빵, 판촉물인쇄	7	42	37	16	21	창혜 복지재단
	동그라미 플러스	00.03.29	육포,서각,임 가공	7	45	40	19	21	중도원
	보성원 자활자립장	03.03.29	안마 및 지압서비스	3	20	16	16	0	전북보성원

시군	시 설 명 (시설유형)	시 설 허가일	생산품	종사 인원	이용장애인 현황				운영 주체
					정원	계	근로	훈련	
	익산시장애인보호 작업장	13.02.27	세탁업 (BF클린)	7	40	38	18	20	삼동회
정읍 (2)	자애자립장	03.02.20	새송이버섯, 비누	6	30	30	30	0	자애 복지재단
	만복보호 작업장	10.10.19	참기름,들기름 전자부품가공	4	18	18	10	8	만복원
김제	김제시장애인보호 작업장	11.04.12	물티슈	7	30	30	30	0	제일복지재단
완주 (4)	행복한집	06.12.29	식품류 (누룽지) 등	4	20	18	18	0	어깨동무 복지재단
	희망발전소 1호점	08.04.24	현수막, 방역	4	20	14	14	0	나누는 사람들
	희망발전소 2호점	12.04.25	조미김	4	20	15	15	0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완주떡메마을 (근로사업장)	09.12.31	전통 (웰빙)떡	11	50	31	31	0	송광
진안	굿데이	15.11.03	홍삼초코파이 홍삼액	5	30	30	21	9	반월복지재단
무주	반디누리 작업장	09.08.14	콩나물, 두부	5	20	18	18	0	삼동회
장수	장수군장애인보호 작업장	13.07.01	옹기, 구운소금	5	25	21	21	0	장수사랑 복지재단
임실	임실군장애인보호 작업장	17.05.31	세탁업, 임가공	4	20	20	10	10	크리스찬 복지재단
고창	고창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21.07.07	-	4	20	12	0	12	한두레장애인 자립생활협회
부안	바다의향기 (근로사업장)	11.01.25	조미김, 자반김	11	30	30	30	0	부신정회

④ 기타 장애인 관련 기관 운영 현황

사 업 명	시군	기관명/운영주체	종사자	설립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IL)	전주(4)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	4	05.04.30
		(사)전북작은자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4	02.04.13
		라엘장애인복지센터	4	12.05.18
		새빛장애인 자립생활센터	4	08.01.14
	익산(1)	전북DPI장애인 자립생활센터	4	18.09.15
	고창(1)	고창군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4	08.07.01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전주	전북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4	04.03.02
	전주	전주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전주시지부	4	08.01.02
	남원	남원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4	10.12.22
장애인평생 교육센터	전주	전주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3	15. 5. 1
	군산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 산돌	3	16. 8.21
	군산	군산시(직영)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직영	18.6.22
	익산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복)사랑복지재단	3	17.11.1

⑤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운영현황 --> 이후 추가 예정

□ 주거(주택) 공급현황.

광역이 가지고 있는 주거 약자용 보유 주택과 주택개조, 주거비 지원 현황.

□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현황

서비스 제공시간 및 투입 예산(지자체 발행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자료에 시비 투입 현황 참조)

3) 해당 지역 선행연구 (탈시설, 자립생활관련 욕구조사 등)

□ 주거복지 관련

◆ 장애인 주거복지 뿐 아니라 전 도민 주거복지 관련 총 망라.

◆ 34쪽. 현재 전북 주거복지 관련 정책 현황 표 제시. 주택공급, 주택 개보수, 주거급여, 금융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수혜대상은 대체로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 주택 개보수 정책 중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는 농어촌 지역 등록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정책.

◆ 주택공급 정책 :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등을 포함.

- 영구임대주택 현황(39쪽) : 군산 2개 단지 포함(나운주공4단지, 산북근로자임대아파트).
- 국민임대주택 현황: 군산 한울아파트, 신도시아파트, 산북부항하나로 4차, 산북부항 하나로 3차, 군산창성주공아파트, 대상아파트(옥산), 신풍동 부항하나로, 동영임대아파트, 하나로 아파트, 삼학주공, 미룡 주공1단지, 산북부항하나로 1차, 2차, 대야 보라무지개아파트, 구암휴먼시아, 경암부항하나로 등. 20년 420세대(신역세권 A-2BL) 공급 예정.

각 주택유형별로 공급대상 등 세부 자료 제시함. 장애인이 입주 가능한 주택의 유형 등 추후 검토 필요.

◆ 전북 소재 주거복지센터는 2개소 운영 중임.

- 전북주거복지센터(사단법인): 07년 전주 주거복지센터로 시작. 주거복지센터 시범사업에 선정.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 구성하여 주거상담, 실태조사 등 연구 실시. 12년 도지사 허가를 받아 전북주거복지센터로 개칭.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 19년 4월부터 전주시가 민관자원연계를 통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전주시 주거복지관 직영으로 시범운영. 향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예정임.

◆ 전북 광역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과 운영방향 제시. 주거복지 취약계층의 다양화와 양적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노인, 장애인에서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 주거복지서비스 단절성 극복 및 사각지대 해소(현재 개별 부서 차원의 대응으로 인한 분절성), 읍면동 중심 복지서비스 공급 한계 극복을 위해 필요함. 광역 수준의 주거복지센터 설립 후 시군센터 설립 독려.

- 광역주거복지센터의 기능 : 주거복지 관련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정보 및 서비스 제공 거점, 주거복지 수요 및 사례의 관리, 복합적인 복지서비스 연계
- 법적 기반: 주거기본법.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
- 운영방식 : 직접운영, 공기업위탁, 민간위탁 방식이 가능함. 이 가운데, 전북의 경우 공기업(전북개발공사 또는 LH)에 위탁 운영할 것을 제안.

4) 소결

전북 등록장애인 비율이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높음. 전북 내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등 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음. 군산의 경우 인구의 6.6%가 등록장애인임.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에서 특징적인 것은 군산의 경우 IL센터가 없고, 평생교육기관과 장애인 그룹홈은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

탈시설 관련해서는 주거복지(특히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 문제) 관련 정보가 더 필요함. 주거지원서비스는 기존의 거주시설 인력 등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간주.

Ⅲ 해당 시설 운영 현황

1. 해맑음마음터

1) 거주시설 개요

해맑은 마음터는 1996년 김포에 준공되면서 정원 69명의 석암베데스아동요양원으로 개소하였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명칭을 해맑은 마음터로 변경하였고, 2009년 리모델링 후 2010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현 소재지)에 3층 건물로 자리하고 있다. 이용정원은 증축과정을 거치면서 2001년 76명, 2005년 93명으로 늘었다가, 시설소규모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2016년 77명, 2020년 61명으로 줄어들었고, 2021년 현재 51명이 이용하고 있다. 2013년에서 현재 종사자 수는 사회재활교사 35명, 조리사 3명을 포함하여 총 52명이다. 2010년 체험홈(신월)을 개소하여 운영해 왔고, 2012년 1개소(탑건), 2013년 1개소(호수)를 추가 개소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 까지는 지원주택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사업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온 기관이다. 현재 주거서비스 지원의 형태로 시설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본 컨설팅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지역 자립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기관이다.

(1) 법인 현황

해맑은 마음터를 운영하는 법인은 사회복지 법인 프리웰이다. 정관목적사업에 의거하여 본 시설을 운영해왔으며 과거에 폐지된 김포수산나의 집과 향유의 집을 운영한 경력이 있다. 토지와 대지에 관한 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 정관 목적사업
  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운영사업

나. 장애인 인권·복지·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교육·연구·홍보사업
다.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라. 지원주택 운영사업

〈표 Ⅲ-1〉 법인 자산현황(토지)

종류	규모(면적)	소재지	목적(시설명/용도)
대지	850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88-3	향유의집 폐지
대지	1,625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90	
임야	8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72-1	누림홈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대지	2,532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72-4	
대지	2,215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72-5	해맑은마음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임야	1,782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72-8	
대지	1,983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8-5	김포수산나의집 폐지
대지	17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8-6	
대지	529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87	향유의집 폐지

〈표 Ⅲ-2〉 법인 자산현황(건물)

구조	규모 (면적)	소재지	목적 (시설명/용도)
철근콘크리트	650.76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88-3외	향유의집 폐지
철근콘크리트	1,344.3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90외	
조적조 슬래브지붕	336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72-4외 A동	누림홈 (지적장애인거주 시설)
조적조 슬래브지붕	1,386.6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72-4 B동	
철근콘크리트	528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72-4 외(제1호)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	1,715.03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72-5외	해맑은 마음터 (중증장애인거주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및 슬래브지붕	1,698.92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8-5외	김포수산나의집 폐지
철근콘크리트조 및 슬래브지붕	64.21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5-9외	
경량철골구조	96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87	향유의집 폐지

- 프리웰 법인 운영 시설

현재 거주시설 2개소(누림홈, 해맑은 마음터)를 김포시 대곶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1개소(샘)를 서울 양천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주택 46개소를 서울 구로구, 동대문구 및 양천구에서 운영중이다.

프리웰법인은 해맑음마음터의 시설변환을 완료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운영 예정이다. 다만, 프리웰법인 이사회에서는, 현재 운영하는 사업기관들의 공공화를 추진하고 이후 법인의 해산 절차를 밟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시설명	유형	규모(면적)	소재지
누림홈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2,612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해맑은마음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3,997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샘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프리웰 지원주택	장애인 지원주택	주택46호	• 서울시 양천구 신월, 신정동(11호)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I (6호)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9호) • 서울시 양천구 목동(10호)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II (10호)

(2) 시설현황

해맑은 마음터는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이다. 다음과 같은 연혁을 통해 시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정원은 69명에서 시작하여 2005년 93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 61명이 되었으며, 현원 52명이 거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특별지원사업(2000년 1회, 2001년 2회),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2002년, 2004년, 2005년 각 1회)외 다양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2011년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에서 우수(~ 2016.04.11.)를 받아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2010년, 2012년, 2013년 각 1개소씩 체험홈을 개소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주택 시범사업 5개소를 운영하는 등 시설 이용장애인의 지

역사회 자립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자세한 시설 연혁은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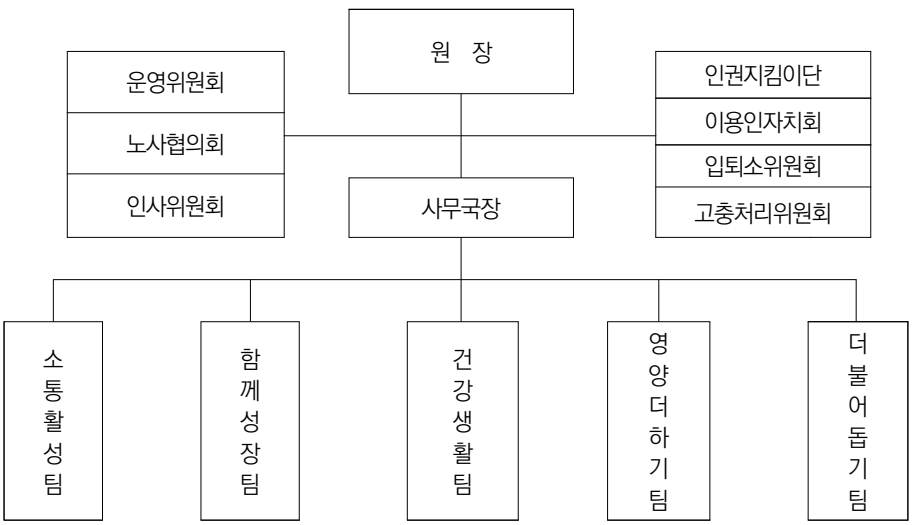
일자	내용
1996.07.24.	석암베데스아동요양원 준공
1996.11.08.	석암베데스다아동요양원 허가(양천구청) : 정원 69명
1996.11.20.	석암베데스다아동요양원 개업등록(김포세무서)
1997.10.10.	입소정원 71명 허가
2000.	보건복지부 특별지원사업(중증장애인보호 특별지원사업) 선정 - feeder seat
2001.07.03.	입소정원 76명 허가
2001.	보건복지부 특별지원사업(중증장애인보호 특별지원사업) 선정 - parallel bar
2001.07.18.	보건복지부 특별지원사업(재활과정)선정 - 경증장애아동 입양을 위한 생활훈련
2002.04.01.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프로그램 선정(신나는 미술활동)
2001.05.0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김포시보건소)
2002.05.	1층 놀이동산 설치
2003.12.01.	촉탁의 협약(유석진 대곶중앙외과의원 원장)
2004.03.01.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프로그램 선정(컴퓨터로 하나되는 세상)
2004.05.	원내 조경공사
2004.07.	한국마사회 지원사업 프로그램 선정(꾸러기 놀이 활동)
2005.03.01.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프로그램 선정(몸사랑이야기)
2005.12.	3층 증축완료(정원 93명으로 허가)
2006.03.	서울시인식개선사업 선정 (장애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도자기로 만나는 세상')
2008.10.01.	박경숙 원장 취임(~2011.11.07)
2009.06.25.	고창중학교 자매결연
2009.07.03.	아름다운가게 프로그램 선정(큰기쁨 그리고 나눔)
2009.08.14.	기능보강사업 - 시설리모델링 공사(임시이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8-4)
2009.09.09.	시설 소재지 변경(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8-4)
2009.09.16.	시설명칭변경(석암베데스다아동요양원→ 해맑은마음터)
2009.11.20.	어린이도서관 구조 변경 및 도서지원사업(P&G-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12.15.	김포우리병원 협력기관 협약
2010.02.23.	국민상조 업무 제휴 협약
2010.05.14.	체험홈1개소 신설(신월홈)

일자	내용
2010.07.22.	리모델링 공사 완료후 율생리 본원 입주
2010.07.26.	시설소재지 변경(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72-5)
2010.11.30.	한국마사회 스타렉스 차량 지원사업 선정(농어촌기부차량)
2011.01.05.	미래에셋박현주재단지원사업선정(제주도+마라도(한라산)일주대장정 '여유짱봉사단Mind up!')
2011.04.1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우수(~ 2016.04.11)
2011.06.17.	공동모금회 프로그램선정(SC제일은행 지정기탁 -몸짱!마음짱!프로그램)
2011.08.25.	기능보강사업 - 장애인리프트차량 구입(18인승 - 71고4550)
2011.11.15.	오인순 원장 취임(~2012.03.30)
2012.03.27.	김포한누리병원 협약
2012.04.13.	(재) 노사발전재단 소규모사업장 노사협력활성화 컨설팅 지원
2012.05.21.	송용성 원장 취임(~2015.07.31)
2012.10.01.	체험홈 1개소 신설(탑건홈)
2013.02.31.	중증장애아동 이동보장구 지원사업(런투유)(삼성카드-아이들과미래)
2013.06.15.	김포고등학교 자매결연
2013.07.25.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와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협약
2013.12.07.	체험홈 1개소 신설(호수홈)
2014.10.01.	조직개편(재활사업과 → 거주지원팀)
2015.07.01.	중중와상장애인 돌봄인력 지원(5명)
2015.08.01.	문병수 원장 취임(~2016.12.31)
2015.11.19.	경차 구입(후원-팬텍 여성노조위원회)
2016.03.09.	트럭(3891 차량) 매각
2016.03.14.	입소정원 변경(93명 → 77명)
2016.04.01.	조직개편(거주지원팀 → 거주지원 1, 2팀)
2016.05.01.	의료재활팀, 시설관리팀 팀장제도 시행
2016.11.01.	기획행정팀 팀장제도 시행
2016.11.10.	지원주택 5개소 개소
2017.01.01.	간병인 감원/운영목적 및 미션·비전 재정립/체험홈 명칭변경
2017.02.15.	최문준 원장 취임
2017.08.31.	김포우리병원 장례예식장 협약
2018.08.01.	조직개편(거주지원 1, 2팀→거주지원팀)

일자	내용
2019.11.12.	리프트카니발(7036) 구입
2019.11.26.	이경민 서울시장애인시설협회 드림스타트업 선정, “베트남에서 바리스타의 꿈 키우기”
2019.12.02.	지원주택 시범사업 5개소 종료
2019.12.02.	김석원외 7명 지원주택 입주(퇴소)
2020.06.15.	현대자동차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 특장차 레이선정
2020.06.25.	이용인 정원변경(77명→61명)
2020.09.24.	송애미외 3명 지원주택 입주(퇴소)
2020.10.01.	팀명 변경(소통활성팀, 함께성장팀, 건강생활팀, 영양더하기팀, 더불어돕기팀)

(3) 시설 조직

조직구성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소통활성팀, 함께성장팀, 건강생활팀, 영양더하기팀, 더불어돕기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Ⅲ-4] 거주시설 조직도

(4) 시설 규모

구분	규모(㎡)	소재지	운영내용
본원 1층	703.69	경기 김포	생활실 2개(남자), 원장실, 행정실, 사업실, 상담실, 영양사실, 식당, 주방, 시설관리실
본원 2층	598.86	경기 김포	생활실 2개(여자), 강당, 도서실, 서류실, 순회학급 3개, 작업치료실
본원 3층	271.67	경기 김포	생활실 1개(남자),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탑건체험홈	85	서울 양천구	방3개 (여자이용인), 거실, 주방, 욕실2개
고척체험홈	99.48	서울 구로구	방3개 (남자이용인), 거실, 주방, 욕실2개

(5) 시설 사진

외관





해맑은마음터 전경

내부





101호 생활실 (거실 겸 공동침실, 화장실, 샤워실, 주방, 개별침실3개)




102호 생활실 (거실 겸 공동침실, 화장실, 샤워실, 주방, 개별침실3개)




201호 생활실 (거실 겸 공동침실, 화장실, 샤워실, 주방, 개별침실3개)




202호 생활실 (거실 겸 공동침실, 화장실, 샤워실, 주방, 개별침실3개)




301호 생활실 (거실 겸 공동침실, 화장실, 샤워실, 주방, 개별침실3개)

2) 이용자 현황

해맑은 마음터 이용자 총 인원은 2020년 말 기준 51명이며 그룹홈 연계 1명, 자립생활주택 대상 13명, 자립지원금 대상 12명, 기초수급자 54명이다.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23.78세이고, 장애유형은 뇌병변-지적장애인이 3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44명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은 4명(보호작업장 3명, 일반근로 1명)이고, 14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을 표현하고 있다. 시설은 3년 후 폐지 및 법인 청산(자산정리) 후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재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주 (정원)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자립주택(대상)	자립지원금(대상)
51(51)	관할: 서울시(영천구) 실위치: 경기도(김포시)	연계(13)	연계(12)
그룹홈 (연계인원)	**이용자평균연령(세)**	**장애유형**	**기초수급 (명)**
연계(1)	23.78	지체(3), 뇌병변(10), 뇌병변-지적(33), 자폐성(1)	54
근로참여		**의사소통**	
4명(보호작업장 3, 일반근로 1)		소통불가(44), 한 두마디 대답(1), 때때로 어려우나 모든 질문에 답변가능(2), 같은 답 반복(5), AAC활용(3) 거의 모든 질문에 답변가능(5)	
자립표현		**3년후 전환 목표**	
14명		3년 후 시설 폐지 및 법인 청산(자산정리) 후 주거서비스기관으로 재설립	
위치		**편의시설**	

3) 종사자 현황

시설의 종사자는 총 52명으로 직종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종사자 유형 중 생활재활교사가 35명으로 가장 많고, 조리사 3명을 제외하고 모든 직종에 1명씩 배치되어 있다.

구분	합계	원장	사무국장	사무원	사회재활교사	생활재활교사	관리인	영양사	조리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상담평가요원	간호사	운전원	위생원
현원	52	1	1	1	1	35	1	1	3	1	1	1	1	1	1	1	1
정원	45	1	1	1	1	28	1	1	3	1	1	1	1	1	1	1	1

4) 시설 전환 계획

사업주체	주 요 역 할
2021.8 -12월	• 컨설팅단 구성 및 회의 • 이용자 개인별 상담 및 전환계획 수립, 53명에 대한 순차적 이전계획 수립 • 전환계획에 따른 주거, 사회서비스, 개인의 자산상황 점검 • 전환계획에 따른 직원의 업무배치 계획 수립 • 해당 과정에서 우려되는 법률, 노무, 회계, 주거이전의 문제점 점검
2022년 -2023.9월	• 거주인 8~12명 내외의 거주인 이전, 총 4~5차례로 나눠서 이동 • 이전계획은 주거지 확보상황에 따라 유동적 진행, 시기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신청, 개인자산 확인. • 이주 전 단계에서 신청해야 할 각종 사회서비스, 탈시설정착금 및 공공후견 등 신청 및 점검 • 이주시기가 특정되면, 구체적 이사계획 수립, 활동지원중개기관 협력 요청, 활동지원인력 확보 • 이주계획에 따른 직원 업무배치 조정, • 거주인의 순차적 이주에 따라 본원 내 공간재배치 및 비품 정리·자산처리 계획 수립
2023.10 -12월	• 모든 거주인의 이전 완료 • 시설폐지 신청서 제출 • 시설폐지준비에 따른 각종 업무 진행 • 거주인퇴소 절차 진행 • 직원의 고용계약을 주거서비스기관으로 재계약 • 폐지에 따른 비품 정리 및 자산처리 • 진행상황에 대한 경과정리 및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시설 기능 전환 계획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 주거서비스제공기관(2개소)으로 전환을 고려중이다.

- 시설 자산 운영 계획

해맑은마음터 본원의 토지와 건축물은 매각 후 장애인자립지원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방향으로 컨설팅단 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5) 3년간 실적

(1) 자립생활 지원 실적

해맑은 마음터는 2018년 하반기부터 19명의 거주인을 자립지원했는데, 2018년 하반기 개인독립한 박*호를 제외하고 18명은 지원주택을 제공받아 자립했다.

〈표 Ⅲ-3〉 거주인 자립 현황 (2018년-현재)

연번	자립 시기	성 명	생년	성별	장애	자립 주거형태
1	2018/하	박*호	1965	남	지적장애(1급)	개인독립
2	2019/하	김*원	1996	남	지적장애(1급)	지원주택
3	2019/하	김*아	1994	여	지적장애(2급)	지원주택
4	2019/하	박*경	1997	여	지적장애(1급)	지원주택
5	2019/하	안*우	2000	남	지적장애(3급)	지원주택
6	2019/하	안*원	1997	여	지적장애(3급)	지원주택
7	2019/하	유*화	1997	여	지적장애(2급)	지원주택
8	2019/하	이*형	1997	남	자폐성장애(1급)	지원주택
9	2019/하	이*호	1997	남	지적장애(2급)	지원주택
10	2020/하	임*진	1996	남	지적장애(1급)	지원주택
11	2020/하	장*혜	1998	여	지적장애(1급)	지원주택
12	2020/하	송*미	1997	여	지적장애(1급)	지원주택
13	2020/하	강*지	2000	여	지적장애(3급)	지원주택
14	2021/상	강*국	1997	남	지적장애(1급)	지원주택
15	2021/상	오*기	1992	남	지적장애(2급)	지원주택
16	2021/상	장*순	1959	여	뇌병변장애(1급)	지원주택
17	2021/상	이*애	19980	여	지적장애(1급)	지원주택

연번	자립 시기	성 명	생년	성별	장애	자립 주거형태
18	2021/상	허*희	1991	여	지적장애(1급)	지원주택
19	2021/상	성*유	2000	남	뇌병변장애(1급)	지원주택

(2) 지원프로그램

구분	사업명	시기	목표량 (횟수/인원)	내 용
사전 준비	자립욕구조사	1월	1회/51명	• 이용인 자립욕구 및 자립가능성 확인
		2월	1회/51명	• 이용인 자립욕구조사 전문기관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계획 단계	개별상담	1월 ~2월	1회/6명	• 개별상담을 통한 자립욕구 확인 • 자립방법, 지역사회거주형태 등 필요 지원에 대한 확인
	개별자립지원 계획수립	1월 ~2월	1회/6명	• 이용자 중심 자립지원계획 논의 및 수립 • 지역사회자원 및 서비스 연계
자립 교육	자립정보 제공, 교육	2월 ~11월	2회/51명	• 이용자 및 직원 대상 자립정보교육 실시 •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설명회 • 서울시복지재단 자립교육 연계
	자립생활 기술훈련	2월 ~11월	수시 /10명	• 의사소통지원, 가사활동, 금전관리, 지역사회 편의시설이용, 지역사회행사참여 등 자립생활 지원 교육
적응 지원	개별 서비스지원	2월 ~11월	수시 /51명	• 개별 자립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지원 실시 • 개별서비스지원을 통한 이용자 자립역량강화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업 참여	2월 ~11월	수시 /10명	• 복지관연계사업 참여 : 재활치료, 여가활동, 사회적응훈련 등 • IL센터연계사업 참여 : 자조모임, 자립체험, 동료상담, 자립역량강화 등
	활동지원서비스이용 및 자립체험	2월 ~11월	수시/2명	• 서울시복지재단 및 IL센터 연계 자립체험 실시 및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지원 • 시설 자체체험홈 활용 자립체험 실시
	직장생활지원	1월 ~12월	수시/1명	• 지역사회 소재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 • 대중교통 및 지역사회편의시설 이용 등 • 자립생활능력 강화
이용 종료	이용종료지원	3월 ~12월	12회/3명	• 이용종료절차 및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 지역사회주택(임대주택, 자립생활주택, 지원주

구분	사업명	시기	목표량 (횟수/인원)	내 용
				택 등) 입주 지원 • 지역사회 정착 지원 및 자원연계
사후 지원	사후지원	1월 ~12월	2회/4명	• 이용종료 이용자 사후지원 • 이용종료 이용자 자립의지 지속 유도 • 전화연락, 방문, 후원물품전달 등 지원 실시

6) 소결

본 장에서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해맑은마음터 시설에 관한 기초자료를 담았다. 해맑은 마음터는 1996년 석암베데스아동요양원으로 개소하였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고 있으며,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현 소재지)에 3층 건물로 자리하고 있다. 이용정원은 1996년 69명으로 개소하였으나, 2001년 76명, 2005년 93명으로 늘었다가, 시설소규모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2016년 77명, 2020년 61명으로 줄어들었고, 2021년 현재 51명이 이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체험홈을 운영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 까지는 지원주택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다. 자립지원을 적극적으로 일행해 온 기관이며, 3년후 법인 청산(자산 처분)하고 주거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시설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51명 이용자의 평균연령이 24세로서 타시설에 비해 젊은 편이며 탈시설 욕구가 높은 기관이기도 하다. 2021년말 현재 시설 전환계획의 개요가 수립되어있으며, 이용자 개인별 상담을 통한 전환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직원의 업무배치 및 이행과정 속에서 우려되는 법률, 노무, 회계, 주거이전의 문제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해맑은마음터는 2018년부터 18명의 장애인을 서울소재 지원주택으로 입주하도록 하였고, 1명은 개인독립으로 자립시킨 경험이 있는 시설이다. 즉, 시설 주도로 장애인의 탈시설 전과정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것이다.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지역자원 연계,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후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원주택을 운영한 노하우가 있기에 본 법인이 추진하는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관련한 절차적인 면에서 크게 어려움이 예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내에서 얼마나 자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새로운 사회내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살고 있는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시설측면에서 시설변환이 주요 과업으로 남아 있다. 시설법인 입장은 주거서비스 기관 2개소로 전환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해맑은 마음터는 김포에 소재한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이었기 때문에 김포에 위치한 거주시설 건물 자체의 변환을 고려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시설의 바람대로 자산 정리 및 법인 청산후에 서울에 소재지를 둔 주거서비스 지원기관으로 변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시설 소재지와 관할 지자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변환의 과정에서 이 특징이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가 김포에 거주하기를 원할 때에는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대체로 그동안 자립한 장애인들이 동대문구, 양천구, 구로구에 있는 지원주택에 입주한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51명의 장애인도 서울소재 지원주택에 순차적으로 입주하거나, 개인적인 자립계획에 따른 독립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 고려사항으로 현재 프리웰은 부채가 약 19억 8천만원(금융기관 장기차입 약 4억 포함)이 있다는 점과, 과거 향유의 집과 프리웰 법인 횡령으로 인해 발생활 채권으로 현재 추심절차를 밟는 중에 있는 금액이 약 6억 7천만원이라는 점이다. 채무와 시설변환의 과정중에 필요한 종사자들의 휴업급여(2021년 9월 전직원의 호봉 고려한 평균급여의 70%로 휴업급여 환산시 1인당 1년간 평균 3천3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함)를 고려하면 향후 시설 전환의 과정에서 법인재산 처분을 통한 자산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타시설 및 주거이전의 문제외에, 자산처분 및 부채정산, 휴업급여 지급 등을 종합 고려한 부동산, 회계, 노무와 관련된 법률적 자문이 이행과정 속에 꼭 필요하다.

Ⅳ 결론 및 제언

2021년 8월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의 내용에서 장기적으로 현재 거주시설의 기능변환을 위한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는 탈시설화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시도했던 서울시에서 지난 10년간 자립생활주택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개인단위'로 탈시설이 이루어진 것을 자체평가하면서 성공적인 탈시설화를 위해 개인단위 뿐만아니라 기존 거주시설의 운영구조를 '구조적 차원'의 탈시설화가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하여 이를 반영한 것이다.

거주시설 장애인이 시설 퇴소 후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여러 가지 복지제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필요하며 이들 기관과 제도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현재 서울, 전북, 충남, 부산 지역의 해당시설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시설의 탈시설화 및 이용인의 거주전환 등을 위해서는 지역분석 및 해당 지역의 복지환경 분석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법, 조례 등 정책과 관련 추진계획, 기본계획 등을 조사하였고, 복지자원의 수요적 측면으로는 지역별 장애인 인구 현황을 살펴보았고, 공급적인 현황으로는 지역사회의 복지인프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시설의 법인 및 시설 현황과 종사자와 이용자 현황, 시설의 기능변환 계획 등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 환경에 맞는 기능변환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4개 지역별 학계의 전문가들이 행정자료 및 문헌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차례 전체 연구진 회의를 통해 연구 방향과 분석 범위, 분석 방법 등을 논의하면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각각의 지역에서 진행되어 온 탈시설 관련 법과 제도, 정책 등과 현장 인프라 등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해당시설의 시설 현황, 이용자의 장애정도 및 시설이 위치한 지리적인 환경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거주시설의 변환은 지역적 환경, 시설의 환경, 이용자의 지원정도 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탈시설 정책이 진행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표준 매뉴얼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거주시설의 기능변환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복지환경 조사 및 시설 분석 방법 등의 방법론을 검증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박현영(2018) 서울시 탈시설 정책 분석 및 제안, 2018 서울시 탈시설 정책 제안 토론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강정배, 김현지, 김태용, 이혜수(2020)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2020), 한국장애인개발원

김현승, 김진우, 김미옥, 민혜영(2019)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주거모형 연구: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

민소영, 김민, 김경희, 신서우(2021)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보건복지부(2021.7)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2020.04.09.)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종 '22년까지 총 459호로 확대(보도자료)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2020.09.15.), 서울시, 장애인 '집단거주'에서 '내집 살림'으로…전국 첫 시범기관 10월 선정(보도자료)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2020.10.07.)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위한 지원주택 74호 공급…신축아파트 최초 포함(보도자료)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2021.11.04.) 서울시,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보도자료)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2017)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2021.4) 2021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계획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2021, 10)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2021.11) 2021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

서울시복지재단(2020) 2020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이용현황(데이터) 보고

서울시복지재단(2021)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매뉴얼 - 입주자 자립지원

서울정보소통광장(2020.05.25.)서울 22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서울주택도시공사(2019.05)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2021)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예산설명서(관리번호 D0000041837441)

서울특별시(2018)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이승희, 조재환(2020) 20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서울시복지재단

이호영(2017)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추진계획의 성과와 한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2권 제1호, p. 57-89.

조한진, 김영돈, 김필순, 전근배, 조문순(2021)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인강원 주변 장애인 복지환경 기초자료 조사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시 연

구용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1년 4월 기준)

서울복지포털 웹사이트(wis.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 지역자립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idl)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홈페이지
(http://www.scom.or.kr/content/business2)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dfsc.or.kr/)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환경 기초조사 연구

발 행 일 : 2021년 12월
발 행 인 : 최경숙
발 행 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9567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 누보

ISBN 978-89-6921-006-7(9330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